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12-01

2022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2022. 12.

책임연구원 :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홍 관 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형 태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 미 령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 배 다 숨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졸업)
 정 신 혜 (서울신학대학교 영어학과 학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1. 서론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였지만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일시보호조치(이하 ‘즉각분리’라고 함)’ 항목을 추가하였음.
- 현재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1차 판단 후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아동과 면담을 통해 분리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응급조치’나 ‘즉각분리’ 조치가 적절한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함.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된 아동의 경우 학대상황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음.
-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취해지는 분리보호이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편견과 주변의 거부감, 그리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함. 이에 아동분리조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 분리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본 연구는 분리조치 전 절차와 과정, 분리조치 이후,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 등 아동 인권 관점의 분리보호 과정을 마련하고 분리보호 결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학대로 인한 아동의 희생이 최소화되고 아동의 안전이 확보된 아동의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것임. 이 외에도 원가정 복귀 후 재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연구내용 및 범위

- ① 아동의 분리조치 및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에 관한 관련 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②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 현장으로부터 아동의 분리조치 과정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③ 국내 아동의 분리조치 과정 관련법 및 관련제도 분석, ④ 아동의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환경 분석, ⑤ 피해아동의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과 원가정 복귀 사례 분석, ⑥ 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관련 정책 자료 수집, 그리고 실태 파악 확인을 위한 양적·질적 조사를 실시하였음.

2.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법률

- 아동분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내 법률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음. 아동학대가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부개정 된 이후부터이며, 2020년 12월 일부개정을 통해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되었음.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아동학대 발생 시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됨. 이후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 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추어 2020년에 일부개정 되었음.

□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 **아동복지법** : 아동분리조치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신고접수, ② 현장출동·조사, ③ 임시보호조치, ④ 조사, ⑤ 보호조치 결정, ⑥ 보호조치 중의 점검 및 사례관리, ⑦ 보호조치의 변경, ⑧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조치, ⑨ 사후관리의 절차를 상정할 수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분리조치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가정법원이 할 수 있는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응급조치는 행정적 아동분리조치로,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사법적 아동분리조치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국내 법률 및 규정 분석의 몇 가지 의미

- **아동분리조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의미**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 전반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조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조차 절차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작성하는 ‘업무 매뉴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 ‘업무 매뉴얼’ 내에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자신에 대한 분리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아동분리조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별적 의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아동 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불충분함. 또한,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분리보호에 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는 규정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조치는 사실상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규정된 시간상의 제약을 회피하고 더 용이하게 기간상의 제약도 받지 않으면서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음. 이 외 규정에서도 자칫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자신의 1차적 양육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부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개별 사건을 즉각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기란 어렵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음.
- 아동복지법은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아동의 권리로 인정되는 ‘면접교섭’에 관해서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움.
-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장기간 보호조치되어 종료 후 가정에 복귀한 경우에 대하여 아동복지법과 그 하위 법령은 가정 방문 및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3.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 규정과 적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장 최우선 과제로 아동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주양육자의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된 아동의 경우 분리과정 및 학대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분리조치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아동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의 의의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외교부 홈페이지 조약문 번역 참조).

- UN CRC의 모든 조항이 궁극적으로 아동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아동권리협약의 여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생길 경우에는 아동최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해야 함.
- 제3조는 실체적인 권익(substantive right)을 규정한 것임. 이 조항은 아동의 여러 이익 가운데 선택해야 하거나 여러 주제들 간의 이익을 형량하고 선택해야 하는 경우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됨.
- 이는 ‘절차에 관한 규정’(rule of procedures)으로 모든 아동의 개별 케이스를 조사·결정하는 절차에서 이 법원칙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제시됨.

- 유엔아동권리협약 다른 조항과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 UN CRC의 제9조(분리조치 관련 조항)와 제10조(아동의 가정 재결합 관련 조항), 제18조(친권과 후견권 행사 관련 조항), 제21조(입양 관련 조항) 등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됨을 강조하고 있음.

- '아동최선의 이익'과 아동보호제도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항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r her, and, to this e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UN CRC는 최우선적으로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친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함(제7조).
- 그러나 아동최선의 이익 조항인 제3조의 2항은 당사국이 부모, 후견인과 관련하여 아동의 복지(well-being)에 필요한 보호(protection)와 배려(care)를 입법·행정적 조치를 통해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을 친부모로부터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분리하거나 친권을 종료하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동보호제도(Child Protection System)'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제9조).

□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례

- 미국

-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 :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부모 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 중독 치료, 가족보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이나 구금형을 부과함. 즉, 위탁아동에 대한 가족보존과 가정복귀를 내용으로 한 아동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ACWA)과 입양 및 안전가족법(ASFA)** : AACWA는 가족재결합을 우선순위에 두며 가족재결합이 불가능 할 경우에만 입양과 같은 대체 보호수단을 고려하였음. AACWA에 대한 비판으로 제정된 ASFA는 신속한 입양을 강조하며, 가족재결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의 친권을 신속하게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방법으로 가족재결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영국

- **1989년 아동법** : 피학대아동보호법제의 기틀이 되는 법임. 이 법의 규정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가족 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04년 아동법** :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지역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지역 당국에 있으며 지역 당국과 협력 할 의무는 관련 파트너에게 부여됨. 즉, 아동보호서비스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8년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지침** : 2018년 아동보호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음. ① 지방정부-경찰-보건기관의 세 기관 연합 체제 운영, ② ‘심각한 아동학대 진상조사(SCR)’를 ‘아동보호 사례 검토(SPRs)’로 명칭 변경, ③ 아동사망패널 관련 업무를 보건부(국민보건서비스)로 이관, ④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s)를 보호 파트너(지방정부, 경찰, 임상위탁그룹(CCG))로 대체.
-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Looked-after children: LAC)** : 가정외 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에 머물러 있더라도 아동보호기관의 서비스 대상인 경우와 사법체계의 관할 하에 있는 아동이면 LAC에 포함됨. 영국의 아동법 제17조에는 도움필요 아동을 대상으로 욕구사정(need assessment)을 실시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한 후 관련 보호서비스를 제공함.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각 국가별로 아동보호 시스템 작동 방식과 지원에 대한 법률 및 지침이 있음.

- 호주

- 통합적 가정폭력 예방 전략(IDFV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험 집단의 가정내 가족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다기관(multi-agency) 통합적 협업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음.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적인 법체계** : 아동보호서비스의 직접적 전달은 주 정부 및 자치지구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아동을 가족 보호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공중 보건 접근 방식(public health approach)을 시행하고 있음. 각 주와 자치지구에 따라 아동보호 및 가정폭력 관련 입법화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연방 법률의 공통적 핵심 원칙은 ① 아동최선의 이익 존중, ② 조기 개입, ③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아동보호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 정부들의 위원회(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에 의해 개발된 국가 프레임워크(2009-2020)은 아동 보호에 대해 국가적 의제를 제공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이 모든 정책과 입법화 과정의 중심에서 고려하는 공중 보건의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호주의 아동보호 정책 프레임워크는 아동의 “위기(risk)”와 “욕구(needs)”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부문 간의 통합적 접근(joined up a pproach)이 핵심 쟁점임.
-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정외 보호 아동** : 국가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아동의 보호시설 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며 배치 안정성과 가능한 경우 학부모와의 재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음. 아동보호 당국은 취약한 아동에게 사례 관리, 지원 서비스 안내, 신고 된 아동학대/방임 조사, 돌봄 제공 및 보호명령, 가정외 돌봄 배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조치로 인한 국외 사례**

- 가정외 보호를 받는 학대 피해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생존 및 성장과 발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조사 결과

□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아동, 부모/보호자, 실무자/전문가)**

- **연구 목적 및 방법** : 분리조치된 아동이 경험한 학대상황과 학대 이후 분리 조치되는 과정, 그리고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환경과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층면접 및 FGI(초점집단면접)를 진행하였음.

- 연구 절차

- **연구참여자** : 아동분리조치 관련 아동(4명), 부모/보호자(4명), 관련 실무자/전문가(12명)
- **질문지 구성** : 아동 및 부모/보호자는 ① 분리조치 결정 과정에 대한 경험, ② 분리 이후 과정 및 시설에서의 경험, ③ 원가정 복귀 관련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관련 실무자/전문가는 ① 분리조치 관련 문제점 및 한계(법률적, 실천적)와 개선책, ②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외 보호 관련 문제점 및 한계(법률적, 실천적)와 개선책, ③ 가정복귀 관련 문제점 및 한계(법률적, 실천적)와 개선책 등을 중심으로 한 질문지를 구성하였음.
- **진행 과정** : 심층면접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아동 및 부모/보호자 그룹은 1:1 비대면 면접으로, 관련 실무자/전문가 그룹은 2차례에 걸쳐 FGI(초전집단면접)으로 진행하였음.

- **자료분석** : 아동 및 부모/보호자 그룹은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체계수준(① 아동 개인, ② 아동의 가족, ③ 지역사회, ④ 국가 수준)과 시간 구분(① 분리 이전, ② 분리 당시, ③ 분리 이후)에 따라 분리조치 관련 경험을 분석하였음. 실무자/전문가 그룹은 아동의 가정외 분리와 보호, 원가정 복귀와 복귀 후 모니터링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FGI에서 도출된 자료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와 보호, 가정복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알 수 있었음. 분리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관련 담당자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에 편차가 발생한다든지, 아동의 특성과 욕구가 아닌 보호 인프라의 여건이나 시설의 형편에 맞춰 아동을 보호하는 등의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음.

□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시설방문

- **연구 목적 및 방법** : 아동보호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방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연구 절차

- **시설방문한 시설** : 서울(2개), 수도권(1개), 지방(1개) 총 4개 아동보호시설

- **구성 및 진행** :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시설방문을 하여 시설의 주변 환경 및 실내의 물리적 구조를 파악하고 시설의 관계자와 1:1 인터뷰를 통해 ① 아동양육시설 정보 및 현황, ②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③ 아동의 심리·정서적 환경 등에 관하여 파악하였음.

- **분석결과**

-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공동생활가정은 외향 상 아동보호시설이라는 표시가 나지 않으며 최소 1~2명의 아동이 한 방을 사용하고 있었고 종사자는 일반 가정 처럼 아동의 스케줄에 따라 아동 양육을 하고 있었음. 아동양육시설은 일반 주택과 뚜렷이 구별되는 큰 규모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시설 내 생활규칙이 있었음. 이 외에도 시설 관계자를 통해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삶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음.

□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 실태**

- **연구 목적 및 방법** :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분리조치 과정 및 이후의 아동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연구 절차**

- **연구참여자** : 아동학대로 분리조치된 아동(136명), 부모/보호자(110명), 관련 실무자(253명) 총 499명
- **설문지 구성 및 진행** : Zijlstra(2012), Ten Brummelaar, M.D.C. 외(2014), Ten Brummelaar, M.D.C. 외(2018)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 아동용 설문 문항은 ① 분리조치 절차 시 정보 제공, 동의, ② 분리조치 기관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또래 관계 등 전반적 발달상황과 정서적 안정감 ③ 원가정과 접촉 및 원가정 복귀 지원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음.
 - 부모/보호자용은 ① 분리조사 과정, 분리조치, 분리조치 기간, ② 분리보호조치 담당 실무자에 대한 인식, ③ 원가정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음.
 - 실무자/전문가용은 ① 분리조치 절차, 분리조치의 한계 및 문제점, ② 분리조치 아동, 보호자의 생활환경, 분리조치 아동의 교육환경 정서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상태 점검 수준, ③ 분리조치 절차의 타 기관/타 관련자와의 의사소통

과 조정, 분리조치 절차의 아동 인권 보호 수준 평가, ④ 분리조치 시 개선방안 문항 등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음.

- 분석결과

- 분리조치 과정의 아동의 참여 경험에 대해 ‘부모와 헤어지는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41.8%이고, ‘이곳에 오기 전에 자신에게 지내게 될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0%로 나타남. 즉, 분리보호 조사 과정에서 아동 자신과 관련된 회의의 참석이 부족하고 아동 자신이 지낼 곳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주관식 응답)에 대해 ‘받고 있는 보살핌’이 달라질 수 있다면 아동들은 개인방, 개인 공간이 있거나 자유롭게 핸드폰을 하거나, 개인 노트북 등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함.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아동들은 같이 생활하거나, 자주 만나거나, 잔소리를 적게 하고 싸우지를 않았으면,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으면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함. 즉, 아동분리보호 기간의 양육환경에서는 개인 공간과 부모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임.
-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에 대해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실무자의 비율이 82.9%이고, ‘기관이나 시설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는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실무자의 비율은 54.6%로 나타남. 또한,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이고,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해 보호자에게 안내를 하였다’는 비율은 63.7%였음. 즉, 원가정 복귀를 위해 정기적으로 상호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지만 특별한 서비스나 노력은 응답자 중 50~60% 정도임.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아동과 부모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연락 및 만남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임.
- 유관기관 및 실무자 간의 협력에 대해 ‘아동이 분리보호시설(쉼터 등) 입소과정’에서는 응답자의 80%이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원가정 복귀과정’, ‘퇴소과정’에서는 75.9%~78.5%가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아동의 분리보호시설 입소과정부터 원가정 복귀 및 퇴소과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5. 분리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보호정책 방안

□ 아동인권 관점에서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보호 방안

-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 규정의 분산, 유사분리보호조치에 대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별도 규정, 보호서비스 전달과정의 두 범으로의 분산규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두 법의 관련 조항간 연관성 명시 등과 같은 두 법을 통합한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의 명시 필요, 혹은 두 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빈약한 아동분리 법률 사항을 보강해야 함. 학대 피해아동보호기간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아동의 분리보호시설 이동에 따른 접근금지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신속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함.
- 관련 기관간 협력 도모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형성을 위해 보호 관련 담당 부처간 거버넌스 구축과 서비스 통합이 필요함.
- 취약가정의 발달위기 아동에 대한 표적화된 보호와 발달지원 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함.
- 위기가족에 대한 다학제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학대 가해 부모의 양육역량 지원 서비스, 위기 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역량 강화지원 서비스 등이 필요함.
- 행정적·사법적 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자간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분리보호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력을 개발해야 함.

□ 아동인권 관점의 아동분리조치 과정과 분리보호

-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에서 아동의견 표현과 청취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
-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견과 갈등 조정과 평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 부모에게 면접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분리조치된 시설의 의무적인 면접교섭 지원 규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분리 이후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 수립과 관련기관 간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분리 이후 학교 등 아동의 생활환경 유지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가해자 체포와 아동안전장치 마련,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강화와 감호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 가해 부모에 대한 분리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분리보호시설의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대한 지원과 평가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원가정 복귀를 위한 다학제적인 접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해 부모를 위한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지원이 계획되어야 함.

□ 아동인권 기반 가정복귀 지원 절차 및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원가정 복귀는 아동이 시설 분리보호 이후 가족과 관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분리보호 직후부터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유지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함.
- 아동생활 상태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원가정 복귀 직전 원가정 복귀 평가 프로그램과 원가정 복귀 이후 아동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2장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13
1.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법률	15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16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41
4. 국내 법률 및 규정 분석의 몇 가지 의미	63
제3장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69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 규정과 적용	71
2.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례	77
3.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조치로 인한 국외 사례	96
4. 주요국 규정의 몇 가지 함의	97
제4장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조사 결과	101
1.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아동, 부모/보호자, 실무자/전문가)과 시설 방문	104
2.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 실태	162
3. 조사 결과 분석이 주는 몇 가지 의미	220

제5장 분리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보호정책 방안	227
1. 아동인권 관점에서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보호 방안	229
2. 아동인권 관점의 아동분리조치 과정과 분리보호	249
3. 아동인권 기반 가정복귀 지원 절차 및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263
 참고문헌	 272
 부 록	 279

표 목차

〈표 1-1〉 심층 면접 및 FGI 조사방법 및 내용	10
〈표 1-2〉 대상자별 설문조사 조사내용	11
〈표 1-3〉 연구 절차 및 방법	12
〈표 2-1〉 즉각분리 유형	23
〈표 2-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	26
〈표 2-3〉 즉각분리 이후 보호유형	29
〈표 2-4〉 시도별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	32
〈표 2-5〉 분리조치 후 최초 보호 유형	32
〈표 2-6〉 지속 분리보호 유형	41
〈표 3-1〉 호주 주정부 및 자치구의 아동보호법	89
〈표 3-2〉 호주의 아동 돌봄과 보호명령의 유형	90
〈표 3-3〉 호주 취약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	95
〈표 4-1〉 인터뷰, FGI 진행계획과 최종 수행내용	105
〈표 4-2〉 시설 방문 계획과 최종 수행내용	106
〈표 4-3〉 인터뷰, 시설방문, FGI 진행과정 요약	106
〈표 4-4〉 아동과 보호자 대상 인터뷰 질문	107
〈표 4-5〉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보호 환경 파악을 위한 질문	108
〈표 4-6〉 1차 실무자/전문가 FGI 참여자	110
〈표 4-7〉 2차 실무자/전문가 FGI 참여자	110
〈표 4-8〉 실무자/전문가 FGI에서 다룬 질문내용	110
〈표 4-9〉 방문 조사한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	112
〈표 4-10〉 P그룹홈의 특성	113
〈표 4-11〉 Y그룹홈의 특성	114
〈표 4-12〉 D양육시설의 직원 현황	115
〈표 4-13〉 D양육시설의 시설 현황	116

〈표 4-14〉 E양육시설의 아동 현황	117
〈표 4-15〉 E양육시설의 직원 현황	117
〈표 4-16〉 E양육시설의 시설 구조	118
〈표 4-17〉 생태체계 분석틀의 체계수준과 적용 근거	120
〈표 4-18〉 인터뷰 대상 분리 경험 아동	120
〈표 4-19〉 생태체계 분석틀의 체계수준과 시간 구분에 따른 교차표	122
〈표 4-20〉 생태체계 분석틀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분리 이전	135
〈표 4-21〉 생태체계 분석틀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분리 당시	136
〈표 4-22〉 생태체계 분석틀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분리 이후	136
〈표 4-23〉 원가정 복귀 경험 사례의 특성	139
〈표 4-24〉 가정복귀 사례 분석결과 요약: 북한 거주 시기	147
〈표 4-25〉 가정복귀 사례 분석결과 요약: 남한 입국과 엄마와의 갈등	147
〈표 4-26〉 가정복귀 사례 분석결과 요약: 그룹홈 입소	147
〈표 4-27〉 가정복귀 사례 분석결과 요약: 원가정 복귀	148
〈표 4-28〉 설문조사 대상 및 조사내용	163
〈표 4-29〉 아동 대상자의 일반현황	165
〈표 4-30〉 분리조치 과정의 아동 참여	166
〈표 4-31〉 학교급별 분리조치 과정의 아동 참여	167
〈표 4-32〉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환경 실태	170
〈표 4-33〉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환경 만족도	175
〈표 4-34〉 분리보호된 아동의 학급별 양육환경 만족도	176
〈표 4-35〉 분리보호된 아동의 사회환경 실태	177
〈표 4-36〉 분리보호된 아동의 사회환경 만족도	181
〈표 4-37〉 분리보호된 아동의 학급별 사회환경 만족도	182
〈표 4-38〉 실무자 대상자의 일반현황	183
〈표 4-39〉 실무자가 인식한 아동분리조치 과정의 아동 참여	185
〈표 4-40〉 실무자가 인식한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환경 실태	187
〈표 4-41〉 실무자가 인식한 분리보호된 아동의 사회환경 실태	189
〈표 4-42〉 실무자가 인식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190
〈표 4-43〉 실무자가 인식한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 상호연락 빈도	191

〈표 4-44〉 실무자가 인식한 유관기관 및 실무자 간의 협력	194
〈표 4-45〉 부모/보호자의 일반현황	198
〈표 4-46〉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의 부모/보호자의 경험	199
〈표 4-47〉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의 부모/보호자의 경험	199
〈표 4-48〉 아동분리보호조치 관련 부모/보호자의 경험	201
〈표 4-49〉 분리보호조치 기간	201
〈표 4-50〉 아동분리보호조치된 이후 부모/보호자의 도움 받은 경험	202
〈표 4-51〉 아동분리보호조치 후 위탁 혹은 입양된 부모/보호자의 경험	202
〈표 4-52〉 아동분리보호 기간 부모/보호자의 연락	203
〈표 4-53〉 자녀와 연락하는 빈도	203
〈표 4-54〉 아동분리보호조치 관련 부모/보호자의 경험	204
〈표 4-55〉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과 지원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	205
〈표 4-56〉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	207
〈표 4-57〉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	208
〈표 4-58〉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부모/보호자의 지원 및 옹호	209
〈표 4-59〉 아동분리보호조치 담당 실무자에 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	210
〈표 4-60〉 아동분리보호 과정의 아동 참여에 관한 아동과 담당 실무자의 인식	212
〈표 4-61〉 아동분리보호 기간 양육환경에 대한 아동과 담당 실무자의 인식	215
〈표 4-62〉 아동분리보호 기간 사회환경에 대한 아동과 담당 실무자의 인식	216
〈표 4-63〉 아동분리보호 기간 부모와 자녀 간의 연락 여부	218
〈표 4-64〉 아동분리보호 기간 부모와 자녀 간의 연락 여부	219
〈표 4-65〉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안내에 관한 보호자와 실무자 인식	220
〈표 5-1〉 피학대 아동의 분리조치에 대한 분산규정	231

그림 목차

[그림 3-1] 영국의 공적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조치 과정	86
[그림 3-2] 돌봄 및 보호명령에 의해 부여된 법적 책임	90
[그림 3-3] 호주의 아동보호 절차	94
[그림 4-1] 생태체계 분석틀	119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 안내문 (아동용)	281
부록 2. 연구 안내문 (보호자용)	282
부록 3. 연구 안내문 (실무자/전문가용)	283
부록 4. 연구 참여 동의서 (아동용)	284
부록 5. 연구 참여 동의서 (부모/보호자용)	285
부록 6. 연구 참여 동의서 (실무자/전문가용)	286
부록 7. FGI 질문 문항 (아동 및 보호자용)	287
부록 8. FGI 질문 문항 (실무자/전문가용)	288
부록 9. 시설장 대상 시설환경 파악 질문 (시설방문 시)	289
부록 10. 설문지 (아동용)	290
부록 11. 설문지 (보호자용)	298
부록 12. 설문지 (실무자/전문가용)	304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정으로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였지만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일시보호조치(이하 ‘즉각분리’라고 한다) 항목을 추가하였다. 즉각분리는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아동을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아동학대 현장으로부터 즉각 분리보호하는 조치이다. 이 조치는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 조항의 공백을 메우고, 더욱 촘촘한 아동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따른 것이다. 즉각 분리 조치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즉각분리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정인이 사건’ 외에도 실제 학대 판정을 받더라도 원가정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재학대율이 11.4%에 이르고(통계청, 2021), 2021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아동학대 사례의 84%(25,916명)에 이르는 아동이 원가정 보호조치로 재학대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다(보건복지부, 2021). 원가정 보호란 학대사례로 판정은 되었으나, 그 사안이 경미해 원가정 보호를 유지하되,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를 받는 84%는 항시 재학대 발생 위험성이 열려 있다. 이러한 자료와 상황 등에 근거하여, 극단적인 학대 상황에서 아동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대행위자와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보다 더욱 촘촘한 아동보호를 위해 응급조치 외에 즉각분리를 아동복지법에 추가하였다.

현재,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의 학대피해 외상을 근거로 1차 판단을 한 후,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아동과의 면담을 통해 분리를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나 ‘즉각분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한다(헬스조선, 2021.1.11).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전문가가 아닌 행정실무자로서, 분리가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데다가 아동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조치’, ‘즉각분리’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기는 생애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학대피해의 심각성, 상습성, 현저한 재발우려 가능성, 긴급성 뿐 아니라, 분리 당시의 아동의 심리적 불안과 위축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도 매우 중요하다.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된 아동의 경우 학대상황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권리를 침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아동의 판단능력 미숙을 우려해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의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체계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관리자의 의견이 우선시 될 경우 아동의 의사표현 기회 자체가 무시당하거나 의사조율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인 학대 피해아동의 관점에서의 권리가 적절히 실현되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안전 및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권리를 제시한 국제법적인 성격의 협약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7; The United Nations, 1989;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는데, 이는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전세계적인 의견 일치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대 피해아동은 아동권리의 가장 극단적인 침해상태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인권은 최약자의 인권보호 수준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아동권리의 보장수준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학대 피해아동의 권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학

대 피해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의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주양육자의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된 아동의 경우 분리과정 및 학대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보호, 위탁보호 등 가정외(out of home) 보호를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원가정 환경과는 다른 낯선 환경에 노출되어 다양한 삶의 차원과 욕구의 측면에서 변화를 겪는다. 아동의 관점에서 갑작스러운 분리과정이나 쉼터나 보호시설에서의 가정외 보호는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과 함께 원가정에서 자신이 누려 왔던 권리와 욕구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선행연구에도 아동학대 현장에서 행위자와 강제로 분리되는 아동이 나타내는 반응, 입소 시설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원가정으로의 복귀 욕구 등 학대 피해아동이 다양한 부정적 상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원 외, 2020; 김미숙, 2020; 이주영, 2021). 즉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왜 부모님과 분리되어야 하는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Stahl(1990)에 의하면, 학대 피해아동에게 있어 원가정에서의 주양육자와의 분리는, 슬픔, 버림받음, 죄책감, 두려움 등의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장윤영 외, 2006). 주양육자가 더 이상 아동 본인을 원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불안감, 주양육자가 자신을 버렸다는데서 오는 분노와 비난, 버림받을 만큼 내가 잘못되었다는 죄책감과 절망 등이 그것이다. 또, Maluccio(1996)은 학대 피해아동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였으나, 분리보호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새로운 환경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표류현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장윤영 외, 2006).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취해지는 분리보호이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사회적 편견과 주변의 거부감, 그리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분리보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기존 연구는 주로 분리보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Chor et al., 2013; 이경은, 염동문, 김미정, 2014; de Han et al.,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분리보호 경험에 관한 연구(이경은, 김미정, 2014; 김세원, 김지혜, 김경희, 2019), 학대 피해아동분리보호시 친권 제한 관련 연구(박주영, 2015; 이은정, 2019) 등이

있다. 아동인권 관점에서 분리보호 조치 과정과 분리 판단과 결정과 이의 아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다. 외국의 경우는 분리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년간 축적되었고(Choi, 2017), 다양한 분리보호 유형이 아동에 주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Stein et al., 2014).

이렇듯, 아동분리조치는 단순히 보호자와의 분리에 그치지 않고,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학교, 친구·선생님 등 익숙한 생활환경에서도 분리되기 때문에 아동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분리 이후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차적 학대상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분리 조치가 피학대 아동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키워 심리적으로 2차 학대를 가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년 기준 아동학대사례 총 37,605건 중 5,437건(14.5%)이 원가정의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되었는데, 이 중 2021년 말까지 원가정과의 분리조치가 지속된 경우가 4,439건(11.8%)인 반면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진 사례는 998건(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이는 분리 이후 아동과 보호자의 가족재결합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리보호 조치 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리보호 조치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분리보호 조치를 함에 있어서 아동인권 측면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동이 부모의 보호아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의 학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정외 보호에 배치된 아동 일지라도 적절한 지원을 통해 되도록 가족에게 영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동보호체계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가족관계 및 양육환경의 개선과 원가정 기능회복을 통한 원가정 복귀는 아동에게 중요하다.

이에 아동분리조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리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분리조치 전 절차와 과정, 분리조치 이후,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 등 아동인권 관점의 분리보호 과정을 마련하고 분리보호 결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학대로 인한 아동의 희생이 최소화되고, 아동의 안전이 확보된 아동의 원가정에서 성장할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원가정 복귀 후 재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분리보호조치 절차 및 과정과 가정의 보호아동의 생활환경 그리고 원가정 복귀 등을 확인·탐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리조치 및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에 관한 관련 연구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아동분리조치 과정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과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아동분리조치 관련법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의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환경과 피해아동의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 원가정 복귀 사례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자세한 연구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아동의 분리조치 및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에 관한 관련 연구 및 통계자료수집 및 분석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분리보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
 - 아동의 분리보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 수집·분석
 - 아동분리조치 이후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관련 연구자료 수집·분석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현장으로부터 아동의 분리조치 과정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 분석
 -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분석
 -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검토 및 이행 수준 확인
 -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의 분리조치 절차 수집 및 분석
 -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의 분리보호에 대한 정책 분석
 -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사례 분석

- 국내 아동의 분리조치 과정 관련법 및 관련제도 분석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아동분리조치 분석
 - 아동의 분리조치 과정 관련법에 따른 소관 부처의 연계 및 통합 조치 분석
- 아동의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환경 분석
 - 아동의 보호조치 이후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 생활환경 분석
 - 아동의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권 보장실태 분석
- 피해아동의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과 원가정 복귀 사례 분석
 - 원가정 기능회복 등 피해아동보호에 중점을 둔 원가정 복귀 제반 사항 분석
 - 원가정 복귀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지표 및 과정 검토
 - 원가정 복귀 과정과 복귀 이후의 모니터링 사례 분석
- 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아동의 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제안
 - 분리조치 이후 피해아동의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과 원가정 복귀 방안 제안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정책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동분리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심층면접 및 초점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조사와 시설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5장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가.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 국제기준 자료 수집 및 분석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과 해설서 및 일반논평 등의 내용분석
-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기구(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의 권고 내용 수집 및 이행 평가

나.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내의 법령, 정책 자료 등 수집 및 분석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항 및 보호 절차, 그리고 사법체계의 자료 수집
-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분리조치에 관한 법률 조항 및 보호 절차, 그리고 관련 자료 수집

다. 아동의 분리조치 과정 시, 행정적·사법적 절차 및 처리에 대한 사례 수집

- 아동분리조치 사례의 수집 및 분석
- 아동분리조치 시 행정적·사법적 등의 관련 부처 간의 연계 및 통합 조치 과정 분석

라. 아동의 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아동의 가정외 분리보호에 대한 연구자료 검토
- 분리조치 이후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문헌 자료 분석

(2) 심층면접 및 FGI 조사

- 목적 : 아동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와 아동분리조치 과정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
- 대상 : 아동분리조치 아동(4명), 부모/보호자(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행정담당 공무원, 사법체계 관계자 등 관련 실무자/전문가(12명) 총 20명

- 방법 : Zoom을 이용한 1:1 및 소집단 비대면 면접
- 내용 : 아동분리조치 아동 및 부모/보호자 그룹은 분리조치 결정 과정 및 분리 이후에 대한 경험, 시설에서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황, 원가정 복귀 관련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면접조사하였고, 관련 실무자/전문가 그룹은 아동분리조치 과정의 문제점 및 한계와 개선사항,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피해아동보호 및 가족기능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면접조사

〈표 1-1〉 심층 면접 및 FGI 조사방법 및 내용

구분	조사방법	조사내용
분리조치 아동(4명)	1:1 비대면 심층면접	- 분리조치 결정 과정에 대한 경험 - 분리 이후 과정 및 시설에서의 경험 - 원가정 복귀 관련 지원 등
부모/보호자 (4명)	1:1 비대면 심층면접	- 분리조치 결정 과정에 대한 경험 - 분리 이후 과정 및 시설에서의 경험 - 원가정 복귀 관련 지원 등
관련 실무자/전문가 (12명)	소집단 비대면 면접(FGI)	- 분리조치 관련 문제점 및 한계(법률적, 실천적)와 개선책 -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외 보호 관련 문제점 및 한계(법률적, 실천적)와 개선책 - 가정복귀 관련 문제점 및 한계(법률적, 실천적)와 개선책 등

(3) 시설방문 조사

- 목적 : 아동복지시설 등 분리조치 이후 보호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 대상 : 4곳(서울, 경기, 그 외 지역)의 분리보호시설에 있는 시설장 및 시설 관계자
- 방법 : 현장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실태 파악(문제점 등)

(4) 설문조사

- 목적 :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분리조치 과정 및 이후의 아동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 대상 : 아동학대로 분리조치된 아동(136명), 부모/보호자(110명), 관련 실무자(253명) 총 499명

- 조사 내용 : 설문문항은 설문 대상자별로 다음의 내용을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리조치 아동은 ① 분리조치 절차 시 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문항, ② 분리조치 기관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또래 관계 등 전반적 발달상황과 정서적 안정감으로 구성된 문항, ③ 원가정 접촉 및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분리조치 부모/보호자는 ① 분리조치 과정, 분리조치, 분리조치 기간에 관한 문항, ② 분리조치 담당 실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 ③ 원가정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실무자는 ① 분리조치 절차, 분리조치의 한계 및 문제점에 관한 문항, ② 분리조치 아동, 보호자의 생활환경, 분리조치 아동의 교육환경 정서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상태 점검 수준에 관한 문항, ③ 분리조치 절차의 타 기관/타 관련자와의 의사소통과 조정, 분리조치 절차의 아동인권 보호 수준 평가에 관한 문항, ④ 분리조치 시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된 문항으로 설문조사

〈표 1-2〉 대상자별 설문조사 조사내용

구분	분석자료 수	조사내용	응답 유형
분리조치 아동	134부	- 분리조치 절차 시 정보 제공, 동의 - 분리조치 기관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또래 관계 등 전반적 발달상황과 정서적 안정감 - 원가정과 접촉 및 원가정 복귀 지원 등	'예', '아니오' 중 택일, 주관식 응답
부모/보호자	103부	- 분리조사 과정, 분리조치, 분리조치 기간 - 분리보호 조치 담당 실무자에 대한 인식 - 원가정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등	'예', '아니오', '해당사항없음' 중 택일, 주관식 응답
관련 실무자	251부	- 분리조치 절차, 분리조치의 한계 및 문제점 - 분리조치 아동, 보호자의 생활환경, 분리조치 아동의 교육환경 정서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상태 점검 수준 - 분리조치 절차의 타 기관/타 관련자와의 의사소통과 조정, 분리조치 절차의 아동인권 보호 수준 평가 - 분리조치 시 개선방안 등	'예', '아니오', '해당사항없음' 중 택일, 주관식 응답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연구 절차 및 방법

단계	내용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구성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방향 설정
연구내용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고찰 연구진 회의 전문가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방향 설정 연구내용 구성 선행연구 고찰
분리보호 아동의 인권 실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아동의 분리조치 자료 조사 및 분석 간담회 및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 파악 분리조치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제도 분석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지원체계, 조치내용 및 방법, 모니터링 과 평가 탐색 아동의 분리보호 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 항목 도출
아동의 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실태 및 개선요구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설문조사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기술통계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면접 및 초점 집단 면접(FGI) 시설방문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아동의 분리조치 이후 분리보호시설 등 수준 검토 아동의 분리보호시설에서의 아동 인권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대상: 분리조치 아동, 부모/보호자, 관련 실무자 총 499명 아동의 분리보호 환경 실태 조사 분석 아동의 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검토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실태 및 개선요구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면접 및 FGI 대상(총 20명): 분리보호 아동, 부모/보호자, 관련 실무자/전문가 아동의 분리보호시설 등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파악
정책 대응 및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자문회의 종합분석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분석 결과 종합 정책방향 설정 개선방안 제안

제2장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제2장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1.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법률

아동분리조치를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조치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아동분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내 법률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있다.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출발하였으나, 1981년 전부개정을 통해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 보장을 그 목적 및 적용범위로 하는 법률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동학대가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부터이며, 이 시점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게 되었으나,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아동학대 현장출동 및 격리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관련 장소 출입, 조사, 질문 권한에 관한 규정들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관되었고,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공공 중심 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0년 12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을 통해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이유로 2014년 제정되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 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맞추어 2020년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했고, 종래 현장출동·조사 및 응급조치 등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담당하던 역할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년을 초과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6개월 단위로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의 내용을 절차에 따라 살펴본 다음, 그 시사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아동복지법은 아동분리조치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신고접수, ② 현장출동·조사, ③ 임시보호조치, ④ 조사, ⑤ 보호조치 결정, ⑥ 보호조치 중의 점검 및 사례 관리, ⑦ 보호조치의 변경, ⑧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조치, ⑨ 사후관리의 절차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하의 내용과 같다.

1) 신고접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신고 및 그에 대한 접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신고 후 현장 출동·조사에 관하여 2000년 전부개정된 아동복지법(이하 “2000년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이후 계속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에 따라 해당 사항에 관한 조문들은 아동복지법에서 삭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아동학대의 신고 및 신고의무자,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¹⁾

다만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²⁾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

1)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3.

2)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1호.

3)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⁴⁾ 아동학대신고전화(1391)를 운영한 바 있으나, 2014년 9월 29일부터는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되었다.⁵⁾

2) 현장출동·조사

현장출동·조사에 관한 사항도 2000년 아동복지법에서부터 규정되었으나 2014년 일부개정된 아동복지법(이하 “2014년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삭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관되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으나,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다음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현장출동과 그 직후의 조사 절차에 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⁶⁾

3) 임시보호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이른바 ‘즉각분리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조치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경우에 현장조사에 따른 판단 하에 임시적인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응급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⁷⁾ 그런데 이 응급조치의무는 2011년 전부개정된 아동복지법

4)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

5)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2면.

6)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7) 2000년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이하 “2011년 개정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에서 격리 조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⁸⁾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라는 이름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내용이 보완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아동분리조치로서 즉시 ①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②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등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⁹⁾

응급조치 외에도 아동복지법에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관련 조치의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는 ‘일시보호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일시보호제도는 1962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부터 존재했다.¹⁰⁾

그런데 2020년 12월 일부개정된 아동복지법(이하 “2020년 12월 개정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은 이와 같은 기존의 아동복지법상 ‘일시보호제도’의 사유에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경우를 추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대 피해아동을 일단 분리하여 ①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②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된 ‘일시보호조치’를 도입하였다.¹¹⁾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시보호조치를 이른바 ‘즉각분리제도’라고 부르고 있다.¹²⁾

8) 2011년 개정 아동복지법 제27조.

9)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10) 「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에 대한 일시위탁보호)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11) 2020년 12월 개정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1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2021. 2. 9.

(1)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 사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관련 조치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¹³⁾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관련 조치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사유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일단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아동학대나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분리하고 이러한 분리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이른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는 학대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렵고, 분리하더라도 보호시간이 72시간으로 짧은데, 현장에서 위급성을 입증할 명백한 근거는 없으나 아동학대의 정황이 농후한 경우 아동을 분리하지 못해¹⁴⁾ 원가정내에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호조치 등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⁵⁾

그렇지만 비록 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13)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

14)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에 의한 분리보호가 반드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위급성을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와 같은 해석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규정이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만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신고를 받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정확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즉각분리 시행 1년(3.30), 학대 피해아동들의 보다 안전한 보호 위해 노력한다!, 2022. 3. 29., 7면.

도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이 요구되고, ②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에도 그에 따라 보호자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보호조치로 아동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일시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실제로 일시보호조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는 일시보호조치를 통한 아동분리조치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응급조치-보호시설 인도 기준¹⁶⁾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2회 이상 재신고 된 경우, 의료인 등의 신고에는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 고려함

- »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 줄 성인이 없는 경우
- »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 줄 성인의 보호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을 만연히 허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 등
- » 피해아동이 처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있는 경우
 - ※ 깨진 술병, 상한 음식, 전선 돌출, 낙상 위험이 있는 가옥구조 등 물리적 환경의 위험도를 확인하도록 하며,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한다.
- »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
- » 피해아동 등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 »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 아동학대행위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명, 상흔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심한 명,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 »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명,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
- » 그 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
 - ※ 명백한 학대사실에 대하여 무조건 부인하며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시도 또는 범죄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정하며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시도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의 비정상적인 태도로 볼 수 있으므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함
 - ※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비가해 부모·양육자가 피해아동 등의 안전보다는 학대를 피해아동 등이 유발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아동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를 정당화 하는 진술만을 거듭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피해아동 등의 면담에 있어 피해아동 등에게 거부를 종용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인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 피해아동(여아 또는 10세 이하 남아)이 여성보호자와 함께 보호요청 시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긴급보호가 가능함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 12월에 발간한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이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이라고 한다)을 통해 제시한 위와 같은 기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에 대하여 제시한 기준과 동일한 것이어서,¹⁷⁾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조치에 특유한 인정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일시보호조치와 응급조치 중 어떤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아동학대에 확대된 ‘임시보호조치’(이른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도 부합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확대된 ‘임시보호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¹⁸⁾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되는¹⁹⁾ 시간상의 제약을 회피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더 용이하게 기간상의 제약도 받지 않고²⁰⁾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의 ‘임시보호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와 체계적으로 상충됨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실상 후자가 유명무실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고 하겠다.

더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했다가 종료된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조치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²¹⁾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및 현장조사 후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요건과 기간이 엄격한 응급조치를 선택할 유인이 없어 보인다.

16)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48면.
 17)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01면.
 18)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본문.
 19)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단서.
 20) 뒤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3개월 이내(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21)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2호.

(2)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 유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유형은 ① 보호대상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일시입소보호’와 ②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는 ‘일시위탁보호’가 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²²⁾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한 곳이다.²³⁾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10개의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고,²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98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되어 있다.²⁵⁾

‘일시위탁보호’는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일시보호조치 사유에 해당 하는 6세 미만(미취학)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을 분리조치하고, 조사기간 동안 아동이 보호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일시보호를 의뢰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전문위탁가정 중 의뢰아동에게 적합한 보호가정을 선별하여 연계·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를 ‘위기아동 가정보호(일시보호)’라고 한다).²⁶⁾

즉각분리제도(일시보호조치)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이래, 2021년 말 까지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이 분리된 사례 총 1,250건을 즉각분리의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22)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2호.

23)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24) 보건복지부, 2021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21, 1면; 보건복지부, 2021 보건복지 통계 연보, 2021, 348면.

25) 보건복지부,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2, 2022, 204면.

26) 보건복지부,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1, 2022, 146면.

27)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2, 27면.

〈표 2-1〉 즉각분리 유형

(2021년 12월 기준)

구분	즉각분리 합계	친족보호	가정위탁	시설입소	기타
건 (%)	1,250 (100%)	383 (30.6%)	22 (1.8%)	843 (67.4%)	2 (0.2%)

(3) 일시보호조치 결정 절차

아동복지법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시보호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중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과 구별된다.²⁸⁾

아동학대에 관한 일시보호조치 결정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출동 및 현장조사 직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례결정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개인적 경험과 역량에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결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²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피해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아동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에 이에 관하여 이 이상의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에게 ‘분리보호(시설전원 포함)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³¹⁾를 통해 피해(의심)아동에게 보호시설의 종류와 특징, 생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아동

28)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29)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

30)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31)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352면.

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³²⁾ 다만, ‘분리보호(시설전원 포함)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 중 피해아동 확인란은 ①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② “분리보호(전원) 되는 시설의 종류, 생활 형태, 규칙, 분리 이후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③ “분리보호(전원)에 동의하였습니다.”로 구성된 항목에 각각 체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아동이 분리보호(전원)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선택 가능하도록 제시받은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피해아동 확인란에 체크한 것만으로 피해아동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피해아동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일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사실을 고지 혹은 통보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도 아동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에게 보호사실을 대면으로 고지하고, 이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보호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일시보호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고지한 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기술하고 있다.³³⁾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에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장,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 학대 피해아동쉼터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³⁴⁾

(4) 일시보호조치 기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은 일시보호조치의 기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관련 조치)를 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조치 의뢰를 받은 후 혹은 일시보호조치 사유가 발생한 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가정위탁, 아동복

3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52-253면.

33)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53면.

3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관련 조치)를 결정해야 할 기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은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그 보호기간이 3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이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³⁵⁾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에 일시입소보호한 경우의 보호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전문위탁가정에 일시위탁보호하는 경우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규정이 없으나, 보건복지부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 일시입소보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개월까지 보호하고, 이후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서 일시위탁보호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5) 일시보호조치 기간 중의 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보호조치 시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³⁷⁾

일시보호조치 기간 중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표 2-1>에서 규정하고 있다.

3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36) 관계부처 합동, 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2021, 187면; 보건복지부,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1, 2022, 147면.

37)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표 2-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

구분	방법
1. 상담	<p>가. 최초 상담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아동보호 또는 치료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p>나. 최초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p> <p>다. 상담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p>
2. 심리검사	<p>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p> <p>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p>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p>
3. 가정환경 조사	<p>가. 가정환경 조사는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실시하거나, 상담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p> <p>나. 가정환경 조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다.</p> <p>다. 가족구성원 내역, 부모 또는 양육자의 연령·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 등 가정환경 조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 동안 피해 아동에 대하여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³⁸⁾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보호·관리계획 수립³⁹⁾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⁴⁰⁾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일시보호조치 후 가급적 7일 내에 추가 조사(가정환경 조사와 피해(의심)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주변인에 대한 조사 등)를 완료하고, 일시보호조치 기간 중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를 실시하며, 자체사례회의,⁴¹⁾ 통합사례회의,⁴²⁾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⁴³⁾⁴⁴⁾ 회의를 활용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⁴⁵⁾에게 사례결정위원회에 안전 상정을 요청하고,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가정복귀를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⁴⁶⁾

38) 아동복지법 제22조의4 제1항 및 제4항.

39) 아동복지법 제15조 제4항.

40)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41)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소속 부서장과 사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부서 내 최소 3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78면.

42) 시·군·구별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필수로 하고, 의료·법률·복지·임상심리·학교 등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한 회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80면.

4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 사례 등 통상의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례 또는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2조의4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44)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도록 위탁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45) 아동복지법 제13조.

46)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55-259면.

(6) 일시보호조치의 종료

아동복지법은 장기보호조치에 관하여는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시설에서 보호 대상아동을 퇴소시키거나 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한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⁴⁷⁾ 일시보호조치에 관하여는 그 종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일시보호조치 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 동안 피해 아동에 대하여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은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당연히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일시보호조치 후 가급적 7일 내에 추가 조사(가정환경 조사와 피해(의심)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주변인에 대한 조사 등)를 완료하여야 하고,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①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⁴⁸⁾ ② 분리경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시 심리치료 지원 등을 고려하여 관계회복을 지원한 후 가정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있다.⁴⁹⁾

② 일시보호조치 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일시보호조치 중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와 ②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례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했지만 사례결정위원회가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정복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일시보호조치를 종료하고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도 아동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일시보호조치 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47) 아동복지법 제16조.

48)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현장에 출동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판단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개별상담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기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59면.

49)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59면.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치결정 내용을 공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환경조사서를 확인·점검하여 복귀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보호자에게 가정복귀를 통보한 다음, 가정복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주일 이내에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안전 여부 및 적응 정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⁵⁰⁾

2021년 3월 30일부터 2021년 말까지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이 분리된 사례 총 1,250건 중 가정복귀 사례는 312건(25.0%)이고, 938건(75.05)에 대하여는 분리보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¹⁾

〈표 2-3〉 즉각분리 이후 보호유형

(2021년 12월 기준)

구분	분리보호 지속	친족보호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건 (%)	938 (100%)	322 (34.3%)	21 (2.2%)	593 (63.2%)	2 (0.2%)

4) 조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⁵²⁾ 해당 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아동학대조사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조사의 업무 수행 원칙, 아동학대 조사 시 파악해야 할 정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 아동학대조사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⁵³⁾

50)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59-260면.

51)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2, 28면.

52)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53)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73-94면.

5) 보호조치 결정

아동학대 피해아동도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할 수 있다.⁵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보호대상아동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⁵⁵⁾

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1) 보호조치 유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 내 보호대상 아동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① 아동학대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② 친족가정보호, ③ 가정위탁보호, ④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⑤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⑥ 입양 관련 조치로 나뉜다.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및 입양 관련 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와 친족 가정 보호·양육 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할 수 있다.⁵⁶⁾

54)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항.

55)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56)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위탁보호는 ① 아동학대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정위탁보호’, ② 그 외의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가정위탁보호’, ③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가정위탁보호’로 구분된다.⁵⁷⁾ 즉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전문가정위탁보호 대상이다.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⁵⁸⁾ 2020년 말 친인척이 아니면서 가정위탁을 담당할 세대는 전국적으로 총 777세대였다.⁵⁹⁾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⁶⁰⁾ 중 입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①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②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③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도 여기에 해당하고, ④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은 236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10개, 아동보호치료시설은 12개였다.⁶¹⁾ 2021년 12월 기준

5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58) 아동복지법 제48조 제2항.

59) 보건복지부, 2021 보건복지 통계연보, 2021, 342면.

60)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공동생활가정, ⑤ 자립지원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아동전용시설, ⑧ 지역아동센터, ⑨ 아동보호전문기관, ⑩ 가정위탁지원센터, ⑪ 아동권리보장원, ⑫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61) 보건복지부, 2021 보건복지 통계연보, 2021, 345-348면.

전국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은 591개였고,⁶²⁾ 그 중 98개소가 학대 피해아동 쉼터로 지정되어 있었다.⁶³⁾

〈표 2-4〉 시도별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

(2021년 12월 기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개소	98	6	4	2	4	4	4	4	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8	5	9	10	4	9	6	4	3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는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경우에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년 아동학대사례 37,605건 중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5,437건을 피해아동이 최초로 보호되는 장소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가 3,960건(7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친족가정보호로 1,332건(24.5%)이었다.⁶⁴⁾

〈표 2-5〉 분리조치 후 최초 보호 유형

(2021년 12월 기준)

구분	분리보호 합계	친족보호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원 입원·입소	기타
건 (%)	5,437 (100%)	1,332 (24.5%)	70 (1.3%)	3,960 (72.8%)	73 (1.3%)	2 (0.0%)

(2) 보호조치 결정 절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조치 결정에 앞서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아

62) 보건복지부, 2021 보건복지 통계연보, 2021, 350면.

63) 보건복지부,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2, 2022, 204면.

64)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2, 26면.

동학대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피해아동 사례관리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①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②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③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④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⑤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⑥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⁶⁵⁾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은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를 참고로 활용할 수 있고, ‘자체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를 활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⁶⁶⁾ 여기서의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자체사례회의 및 통합사례회의는 아동복지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 규정이 없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 따른 척도 및 회의이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 사례 등 통상의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례 또는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아동복지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⁶⁷⁾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65) 아동복지법 제22조의4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66)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136면.

67) 아동복지법 제22조의4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⁶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하여 판단한 경우에,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의 보호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항의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특히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 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입양 관련 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⁶⁹⁾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① 보호조치 계획, ②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③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④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⑤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⑥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⁷⁰⁾ 이와 같은 보호조치와 관련된 업무는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게 사례결정위원회에 안전 상정을 요청하면,⁷¹⁾ 요청을 받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이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공유받아 보호조치에 필요한 개별 보호·관리계획 수립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²⁾ 그리고 실제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은 보호조치에 필요한 ‘개별보호·관리계획서’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동일한 양식으로 통일하고 있다.⁷³⁾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속으로 설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68) 아동복지법 제25조의2 제4항 및 제5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

69)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

70) 아동복지법 제15조 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71) 보건복지부,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2, 2022, 184면.

7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2021, 74면.

73)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2021, 75-76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결정한다.⁷⁴⁾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의 위원회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⁷⁵⁾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입양 필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본다.⁷⁶⁾

아동복지법은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입양 관련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⁷⁾ 그렇지만 아동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보호조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에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서도 사례결정위원회의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를 구분하고 있을 뿐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입양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⁸⁾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이 경우에도 ‘분리보호(시설전원 포함)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⁷⁹⁾

74)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2호.

75) 시·도 사례결정위원회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76)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

77)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

7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79)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172-175면.

6) 보호조치 중의 점검 및 사례 관리

(1) 양육상황 점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친족가정보호·양육,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입양 관련 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①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②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③ 보호대상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⁸⁰⁾ 이를 위하여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⁸¹⁾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행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은 시·군·구 아동복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으로 같음)에 따른 보호조치 후 1개월 내에 단기 점검한 다음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⁸²⁾

(2) 피해아동사례관리 점검 및 사례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중에도 수립된 피해아동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⁸³⁾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⁸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①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②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③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④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⑤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80)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8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

8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2021, 89-90면.

83) 아동복지법 제22조의4 제5항.

84)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

고려한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⁸⁵⁾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 아동보호계획 통보 후 주기적으로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업무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진행상황에 대한 공유 및 점검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재발 위험 사유가 감소하고 일정기간 동안 피해아동의 안전한 상태가 지속 유지되어 더 이상 사례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례관리 종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례관리 종결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술하고 있다.⁸⁶⁾

(3) 피해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⁸⁷⁾ 아동복지법은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은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애초에 학대 피해아동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면접교섭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접교섭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도 분리보호 아동의 원가정 면접교섭 지원에 관하여는 별다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⁸⁸⁾

85)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86)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193-195면.

87) 아동복지법 제15조의5 제1항.

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176면.

7) 보호조치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친족가정보호·양육,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입양 관련 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⁸⁹⁾ 보호조치 변경의 경우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행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은 보호조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으로 같음)을 변경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기술하고 있다.⁹⁰⁾

학대 피해아동 본인이 보호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⁹¹⁾

8)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⁹²⁾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⁹³⁾

89)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제2항.

90)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2021, 91면.

91)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최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자에 피해 아동 본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3항.

92)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3항.

9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친족가정보호,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⁹⁴⁾ 이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⁹⁵⁾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⁹⁶⁾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학대피해로 중·장기보호 중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에 ‘학대행위자’인 친권자 또는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비가해보호자’가 가정복귀를 신청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정복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⁹⁷⁾

- (1) 아동 및 보호자 의사 확인
 - 보호자의 ‘양육계획서’,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 (2) 가정복귀 기본요건 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최근 1년간 재학대 발생 없는 경우
- (3) 양육환경 점검
 - 심리평가 및 면담
 - 가정방문 및 양육계획 확인
 - 행위자의 법적 처분 유형 및 기간 등 종합적으로 검토
 - 미복귀 결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개선사항을 안내

94) 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2항.

9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1항.

96)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항.

97)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권, 2021, 99-106면.

- (4) 가정복귀 계획 수립
 - 아동·보호자 의사, 가정복귀 요건, 양육환경 점검 등을 통해 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복귀 계획(기본 2개월 수준) 수립
- (5)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동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보호자→아동→공동 순으로 대상자별 4회기, 총 12회기 기준으로 진행)
 -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성실히 이수한 아동 및 보호자에 한하여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발급
- (6) 공공연계 사례회의 실시
 - 필수참석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또는 팀장, 담당 상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해당 시설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장
- (7)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및 제출
- (8)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가정복귀 승인 시 아동 귀가 조치 실시
 - 미복귀 결정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선사항을 안내
- (9) 가정복귀 후 모니터링
 - 1주일 이내 가정방문, 이후 1개월 주 1회, 3개월간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모니터링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친족가정보호,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신청권자 중에 정작 보호 대상이 된 학대 피해아동 본인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98) 99)}

2021년 중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5,437건 중 가정에 복귀한 사례는 998건(18.4%)에 불과했고, 4,439건(81.6%)은 분리조치가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⁰⁾ 분리보호가 지속 중인 사례를 그 보호 상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98) 아동학대처벌법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제47조 제1항),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최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자(제50조 제3항), 항고권자(제57조 제1항) 등에 피해아동 본인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99)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100)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2, 27면.

〈표 2-6〉 지속 분리보호 유형

(2021년 12월 기준)

구분	분리보호 지속	친족보호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원 입원·입소	입양	기타
건 (%)	4,439 (100%)	1,336 (30.1%)	122 (2.7%)	2,927 (65.9%)	51 (1.1%)	2 (0.0%)	1 (0.0%)

9) 사후관리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¹⁾ 다만 세부적인 가정복귀 후 지도·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가정복귀일로부터 1주일 이내 가정방문하여 아동의 안전 여부 및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이후 1개월간 주 1회, 3개월간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 가족, 주변관계자들을 통해 재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⁰²⁾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분리조치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가정법원이 할 수 있는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조치는 행정적 아동분리조치임에 반하여,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사법적 아동분리조치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01) 아동복지법 제16조의2.

10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권, 2021, 106면.

1)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연혁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격리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데서 기원하였다가,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로 옮겨온 다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응급조치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접수와 현장출동·조사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신고접수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고 한다),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¹⁰³⁾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은 일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¹⁰⁴⁾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⁵⁾¹⁰⁶⁾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03)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104)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105)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106)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은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으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개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¹⁰⁷⁾

107)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0조 제4항.

(2) 현장출동·조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① 사법경찰관리나 ②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¹⁰⁸⁾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¹⁰⁹⁾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¹¹⁰⁾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¹¹¹⁾ 현장출동 시에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¹¹²⁾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¹¹³⁾

108) 종래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① 사법경찰관리나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었으나,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부터 ① 사법경찰관리나 ②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09)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

110)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7항.

111)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2항.

112)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3항.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출동 시에 ① 신고정보, ② 신상정보, ③ 발생정보, ④ 현장 확인, ⑤ 확인경로, ⑥ 판단/조치/결과의 항목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¹¹⁴⁾를 작성하여야 한다.¹¹⁵⁾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 또는 질문을 함에 있어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¹¹⁶⁾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 출입, 조사·질문 등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¹¹⁷⁾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¹¹⁸⁾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¹¹⁹⁾

(3)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경우, ②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③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

113)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4항.

114) 관계부처 합동, 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2021, 152-154면.

115)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2021, 99면.

116)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5항.

117)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6항.

118)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

119)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3항.

아동등'이라고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¹²⁰⁾ 이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가 아동분리조치에 해당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① 응급조치의 주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다.¹²¹⁾

② 응급조치의 사유

응급조치는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경우, ②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③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종래 응급조치는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만 가능했는데, 2020년 아동복지법은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를 응급조치의 사유에 추가하였고, 피해아동에 한정되어 있는 보호 필요 대상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으로 확대하였다.

③ 응급조치의 유형

응급조치의 유형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등으로부터의 격리, 피해아동등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의 4가지이다. 이 중 ① 피해아동 등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와 ②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으

120)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121) 종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는 주체는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었으나,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부터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로 변경되었다.

로의 인도가 아동분리조치에 해당한다.

피해아동등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는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응급조치이다.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¹²²⁾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가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에 관하여 아동학대처벌법과 그 하위 법령은 상세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중상해 및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의식불명·출혈·화상·구토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존하는 상해는 경미하더라도 도구를 사용한 복합적인 상해·화상·누적적 타박상의 흔적이 있는 경우, 외상은 없으나 피해아동의 진술에 비추어 상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외상은 없으나 피해아동의 신체 움직임 등에 비추어 골절 등이 현존 또는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추정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여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고 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²³⁾

2021년 중 응급조치는 총 3,369건으로 이 중 2,673건(79.3%)가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021년 응급조치 중 아동분리조치에 해당하는 ‘피해아동등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는 2,051건(41.6%)이었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는 197건(4.0%)이었다.¹²⁴⁾

④ 응급조치의 결정·집행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시 응급조치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¹²⁵⁾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조치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인 관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만 이에 대한 판단권을 보유하는 것

122)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123) 관계부처 합동, 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2021, 90면.

124)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2, 31-32면.

125)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과 달리,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누구의 판단에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그 하위 법령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출동(이른바 ‘동행출동’)한 경우에 응급조치 필요 여부 및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함께 논의하여 판단하되, 동행출동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최종의견에 따라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²⁶⁾ 이는 아동학대 사례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지 않고 현장에 따로 출동한 경우에도 출동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유선으로 의견을 구한 뒤 이를 참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상황에 적합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¹²⁷⁾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이더라도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시급성을 다투어 응급조치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앞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경험과 역량에만 의존하게 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응급조치의 성격상 시·군·구 아동보호팀 팀장 주재 ‘자체사례회의’나 ‘통합사례회의’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제3호)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2020. 11. 29. 양천구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 후 개선방안으로 배포한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126) 관계부처 합동, 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2021, 91면.

127) 관계부처 합동, 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2021, 91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에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응급조치 실시 기준이 추가된 ‘아동학대처벌법 응급조치를 활용한 보호시설 인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2회 이상 재신고 된 경우, 의료인 등의 신고에는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 고려함**
- ▶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 줄 성인이 없는 경우
 - ▶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 줄 성인의 보호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을 만연히 허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 등
 - ▶ 피해아동이 처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있는 경우
 - ※ 깨진 술병, 상한 음식, 전선 돌출, 낙상 위험이 있는 가옥구조 등 물리적 환경의 위험도를 확인하도록 하며,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한다.
 - ▶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
 - ▶ 피해아동 등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 ▶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 아동학대행위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명, 상흔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심한 명,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 ▶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명,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
 - ▶ 그 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응급조치를 활용한 보호시설 인도기준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서 임시 보호조치를 위한 판단 기준으로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응급조치와 일시보호조치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현장에서 응급조치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일시보호조치(이른바 ‘즉각분리’)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¹²⁸⁾

2021년 아동학대 통계 중 응급조치를 활용한 보호시설 인도기준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점은 업무 매뉴얼상 같은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한 응급조치(2,673건) 중 ‘피해아동등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8%(1,421건)에 불과한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한 응급조치(348건) 중 ‘피해아동등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가 차지

128)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49면.

하는 비중은 73.5%(317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한 응급조치(348건) 중 ‘피해 아동등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5%(313건)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¹²⁹⁾

⑤ 응급조치의 기간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제3호) 혹은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제4호)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¹³⁰⁾ 다만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¹³¹⁾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제3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제4호) 응급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러한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¹³²⁾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72시간(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된 경우는 그 기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¹³³⁾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¹³⁴⁾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청구 신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으면 응급조치는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종료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입양 필요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조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있음¹³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129)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2, 31-32면.

130)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본문.

131)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단서.

132)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제1항.

133)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제2항.

134)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4항.

⑥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작성·송부 및 응급조치 통보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 즉시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기재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¹³⁶⁾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제3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제4호)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¹³⁷⁾

⑦ 피해아동등의 의견청취 등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이 응급조치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¹³⁸⁾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¹³⁹⁾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증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¹⁴⁰⁾

⑧ 응급조치의 종료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제3호) 혹은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제4호)

135) 아동복지법 제11조 제6항 제2호.
 136)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137)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2항.
 13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
 139)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4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단서.

하는 응급조치를 한 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받은 검사가 72시간(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된 경우는 그 기간) 내에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한 임시조치 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 판사가 결정을 한 경우에 응급조치는 종료된다. 가정법원 판사의 임시조치는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것이므로, 임시조치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관계 없이 응급조치 종료에 따라 피해아동등은 가정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이와 같은 응급조치 종료에 따른 피해아동등의 가정복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서도 응급조치 종료에 따른 피해아동등의 가정복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이 사례판단을 위한 추가 조사를 7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¹⁴¹⁾ 응급조치 종료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응 일시보호조치 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아 일시보호조치가 종료된 경우에 준하여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개별상담과 분리경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리치료 등 관계회복 지원을 한 다음 가정에 복귀시키도록 하되,¹⁴²⁾ 피해아동등을 가정에 복귀시키지 않고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일시보호조치나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⑨ 응급조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의 응급조치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¹⁴³⁾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의 응급조치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

141)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50면, 255면.

14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259면 참조.

143)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7항.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¹⁴⁴⁾

2)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이 직접 법원에 보호를 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장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1) 관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토지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자·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되,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¹⁴⁵⁾ 그리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¹⁴⁶⁾

(2)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¹⁴⁷⁾ 피해아동 본인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이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을 의미할 것인데,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이 그 법정대리인에서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

144)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

145) 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1항.

146) 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2항.

147)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려할 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인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에서도 학대행위자가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¹⁴⁸⁾

검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가 아닌데, 이 점은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이 검사를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상이하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¹⁴⁹⁾ 다만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¹⁵⁰⁾

(3)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조사 및 심리절차를 거쳐 결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할법원의 판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임시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다.¹⁵¹⁾

①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의 유형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의 유형은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동일하며,¹⁵²⁾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이 각 유형의 임시보호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¹⁵³⁾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의 유형 중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위탁(제4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제5호),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

148)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2항.

149)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 제1항.

15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 제3항.

151)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제1항.

152)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제1항.

153) 아동보호심판규칙 제94조.

담소 등으로 상담·치료위탁(제5호의2),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제6호)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아동분리조치에 해당한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2021년 중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총 134건이었다.¹⁵⁴⁾

② 피해자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하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¹⁵⁵⁾

③ 피해자 임시보호명령의 통지

관할법원의 판사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¹⁵⁶⁾

④ 피해자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취소 및 변경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의 집행과 취소 및 변경에 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¹⁵⁷⁾ 후술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취소 및 변경에

154)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2, 34면.

155)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제2항.

156) 아동보호심판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

157)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제50조.

서 다루기로 한다.

⑤ 피해자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불복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¹⁵⁸⁾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¹⁵⁹⁾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¹⁶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¹⁶¹⁾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¹⁶²⁾

(4) 조사 및 심리

① 조사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아동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¹⁶³⁾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조사는 ① 아동학대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② 피해아동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③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정도, ④ 피해아동보호의 필요성, ⑤ 그 밖에 심리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¹⁶⁴⁾

158)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4항,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제3항.

159)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1항 본문.

160)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1항 단서.

161)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3항.

162)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4항, 가정폭력처벌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9조 제3항.

163)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제1항.

164)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제4항.

법원은 조사관에게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아동학대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고,¹⁶⁵⁾ 조사관은 피해아동·행위자 및 가정구성원, 변호사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심문 등을 할 수 있다.¹⁶⁶⁾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아동학대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아동학대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¹⁶⁷⁾

② 심리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하며, 심리기일을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¹⁶⁸⁾

피해아동·행위자·가정구성원·청구인,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고,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분을 함께 송달한다.¹⁶⁹⁾ 이 경우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분 상의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¹⁷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아동,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 청구인이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청구인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¹⁷¹⁾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¹⁷²⁾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고,¹⁷³⁾

165) 가정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166)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제2항.

167) 아동학대처벌법 제56조, 가정폭력처벌법 제22조.

168)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5조.

169)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6조 제1항 및 제3항.

17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6조 제3항.

171)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7조 제3항.

172)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7조 제2항.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¹⁷⁴⁾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¹⁷⁵⁾

다만,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은 법원이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 가정폭력처벌법 제33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¹⁷⁶⁾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¹⁷⁷⁾ 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원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변호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결정

① 기각결정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¹⁷⁸⁾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¹⁷⁹⁾

173) 가정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

174) 가정폭력처벌법 제35조 제1항.

175) 아동학대처벌법 제56조, 가정폭력처벌법 제32조.

176) 아동학대처벌법 제56조.

177) 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제1항.

178)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4조 제1항.

179)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4조 제2항.

②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는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¹⁸⁰⁾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¹⁸¹⁾ 앞서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유형 중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위탁(제4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제5호),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 상담·치료위탁(제5호의2),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제6호)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동분리조치에 해당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6개월 단위 연장)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1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6개월 단위 연장)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1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6개월 단위 연장)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1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6개월 단위 연장)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1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6개월 단위 연장)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1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6개월 단위 연장)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1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6개월 단위 연장)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1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6개월 단위 연장)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1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6개월 단위 연장)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

2021년 인용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총 236건 중 아동분리조치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보호위탁은 73건(15.8%), 의료기관 치료위탁은 11건(2.4%),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 상담·치료위탁은 102건(22.0%), 연고자 등 가정위탁은 34건(7.3%)이었다.¹⁸²⁾ 이와 같이 2021년 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

180)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181)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해 아동분리가 이루어진 사례는 총 220건인데, 이는 2021년 중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5,437건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로, 이러한 차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미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기간 제한이 있다. 아동분리조치에 해당하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¹⁸³⁾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¹⁸⁴⁾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¹⁸⁵⁾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가 아닌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¹⁸⁶⁾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¹⁸⁷⁾

(6)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판사는 아동분리조치에 해당하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7)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 중의 점검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

182)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2, 34면.

183)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1항 본문.

184)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1항 단서.

185)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3항.

186)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2항.

187)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6조 제1항 및 제2항.

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다.¹⁸⁸⁾

판사는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¹⁸⁹⁾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¹⁹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¹⁹¹⁾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¹⁹²⁾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증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¹⁹³⁾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이와 같이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¹⁹⁴⁾

(8)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변경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한 서면으로¹⁹⁵⁾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

188)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2항.

189)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2항.

190) 아동학대처벌법 제53조 제1항.

19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192)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

193)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단서.

194)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95) 아동보호심판규칙 제91조 제1항.

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¹⁹⁶⁾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¹⁹⁷⁾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결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¹⁹⁸⁾

(9)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불복

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 결정 포함)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¹⁹⁹⁾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²⁰⁰⁾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²⁰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²⁰²⁾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²⁰³⁾

(10) 피해아동보호명령 업무수행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러한 죄를

196)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3항.

197)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4항.

198) 아동보호심판규칙 제91조 제3항.

199)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4항,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제3항.

200)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1항 본문.

201)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1항 단서.

202)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3항.

203)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4항, 가정폭력처벌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9조 제3항.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 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²⁰⁴⁾

4. 국내 법률 및 규정 분석의 몇 가지 의미

아동분리조치와 관련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 개정 경과에서 출발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로서 임시보호조치와 보호조치,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로서 응급조치와 피해아동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전반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아동분리조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의미

첫째,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조치에 관한 사항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 전반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분리조치와 사법적 분리조치가 두 법률에 나뉘어 규정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행정적 분리조치 중 ‘일시보호조치’와 ‘보호조치’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작 이러한 보호조치에 이르기 위한 절차의 시작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조사’에 관한 사항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이나, 상호 유사한 행정적 분리조치인 ‘일시보호조치’(이른바 ‘즉각분리’)와 ‘응급조치’가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보듯이 개정 과정에서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조문이 추가된 결과로 보인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그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응급조치 후 임시조치 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일시보호조치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행정적 분리조치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분리조치에

204)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

이르는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은 보호대상아동 모두에 대한 사항으로 법률의 앞쪽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은 이와 동떨어져 뒤쪽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통일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이나 절차의 진행과정과 무관한 조문 배치가 전체적인 이해를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제15조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4는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계획 각각의 내용과 상호관계 내지 절차상 선후관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과 그 하위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조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조차 절차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작성하는 ‘업무 매뉴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배포되는 이 ‘업무 매뉴얼’의 최신 버전이 보건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는 물론 국회도서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로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이와 같은 비공개 자료인 ‘업무 매뉴얼’ 내에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고, 실무에서 중요한 업무 처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군·구별 ‘자체사례회의’나 ‘통합사례회의’,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동행출동하였는데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 최종판단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의 사항이 ‘업무 매뉴얼’상으로만 존재하는 내용들이다.

다섯째,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자신에 대한 분리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최선의 이익과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자신이 겪게 될 분리조치 전반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그 절차의 각 단계에서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거나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보호처분, 아동학대의 신고, 조사, 행정적 보호조치 및 사법적 보호조치를 모두 일괄하여 아우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의 보

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아동복지법과 별개의 제정하고,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절차의 단계별로 핵심적인 사항을 해당 법률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아동분리조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별적 의미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아동 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불충분하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할 때, '보호자'는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아동의 참여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²⁰⁵⁾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²⁰⁶⁾ 이를 결정할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아동의 참여권·의사진술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할 수 있으나,²⁰⁷⁾ 정작 보호대상아동인 피해아동 본인의 신청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나 퇴소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²⁰⁸⁾나 가정복귀 결정을 취소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²⁰⁹⁾에도 보호대상 아동의 참여권·의견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조치는 사실상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규정된 시간상의 제약을 회피하고 더 용이하게 기간상의 제약도 받지 않으면서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최대 6개월까지 이르는 보호조치를 일시보호조치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5) 아동복지법 제15조 제4항.

206)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

207) 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2항.

208)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3항.

209) 아동복지법 제16조 제5항.

셋째,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 중인데, 원래 2017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단위로 설치·운영하도록²¹⁰⁾ 한 기구였던 점,²¹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1개뿐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개별 사건에 즉각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최소한 시·도 단위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중앙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보호, 입양관련 조치) 및 같은 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해당 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은 이를 위해 ‘분리보호(시설전원 포함)에 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 양식²¹²⁾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및 양식의 취지가 형식적으로 보호대상이 된 피해아동에게 어떤 내용이든 설명을 제공했으며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을 갖추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양식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아동에게 선택권이 부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①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② “분리보호(전원) 되는 시설의 종류, 생활 형태, 규칙, 분리 이후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③ “분리보호(전원)에 동의하였습니다.”로 구성된 체크박스에 표기하는 방식인 현재의 ‘분리보호(시설전원 포함)에 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 양식에 피해아동이 분리보호(전원)되는 시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선택 가능하도록 제시

210) 2017년 개정 아동복지법 제46조의2.

211) 2020년 4월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운영하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대체하였다.

21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권,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021, 352면.

된 시설들을 기록하는 란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복지법은 분리조치된 피해아동과 가족간의 면접교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분리조치된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간의 면접교섭이 원가정 복귀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한 의미와 함께 아동권리협약에서 분리된 아동의 부모와의 정기적 면접교섭권을 아동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거나 분리조치된 시설의 자에게 면접교섭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를 제한하는 규정²¹³⁾ 자칫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자신의 1차적 양육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부모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아동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의 측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조치를 통해 분리된 다음 장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경우에 대하여 아동복지법과 그 하위 법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는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임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에 복귀하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가정복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조치는 피해아동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시설 입소에 대하여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인신구속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아동복지법은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동을 시설에 보호함에 있어서, 그 결정 과정에 피해아동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피해아동이 18세에 달할 때

213)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단서.

까지 별도의 연장 조치 없이 보호조치가 계속 유지되도록 허용하며, 이미 결정된 보호조치의 변경이나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가정에 복귀할 것을 피해아동 본인이 신청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절차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준하여 가정법원이 심리·결정하고 정기적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적 분리조치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3장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제3장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 규정과 적용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기준으로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안전 및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권리를 제시한 국제법적인 성격의 협약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7; The United Nations, 1989;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는데(국제아동인권센터, 2022), 이는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견 일치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가지 기본원칙인 무차별의 원칙(CRC 제2조), 생존·보호·발달 보장원칙(CRC 제6조),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CRC 제3조), 아동참여의 원칙(CRC 제12조)을 근간으로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9개 영역(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아동에 대한 폭력(김영지 외, 201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 특별보호조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협약 비준국은 각 영역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The United Nations, 1989;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다수의 조항 중 가장 근원적인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 폭력으로 부터의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초기에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아동학대 및 폭력과 관련한 조항을 2015년부터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는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국가보고서에 포함시켰다(김영지, 김희진, 전선영, 김평화, 2015;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2005;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아동에 대한 폭력’영역에 해당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9조 및 39조는 아동학대와 관련

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당사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아동학대의 발견 및 조치, 치료, 예방, 조사 등을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정부, 2017;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이 외의 8개 영역에서는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한 정의와 아동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며 성장하기 위한 보호자 및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아동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학대 피해아동은 아동권리의 가장 극단적인 침해상태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인권은 최약자의 인권보호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권리의 보장수준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학대 피해아동의 권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학대 피해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의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윤수경 외, 2019).

특히 주양육자의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된 아동의 경우 분리과정 및 학대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보호, 위탁보호 등 가정외(out of home)보호를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원가정 환경과는 다른 낯선 환경에 노출되어 다양한 삶의 차원과 욕구의 측면에서 변화를 겪는다. 아동의 관점에서 갑작스러운 분리과정이나 쉼터나 보호시설에서의 가정외 보호는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과 함께 원가정에서 자신이 누려왔던 권리와 욕구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최은희 외, 2005; 김연수, 신창식, 2017).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리과정과 대안양육에서의 아동의 권리가 준수되어야 하며 원가정으로 조속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아동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살펴 필요성이 있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의 의의

국제인권 규범에서 Interest(이익보호)의 법리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법리가 명문으로 원용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은 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이고, 거의 유일하다(이정은, 2016).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외교부 홈페이지 조약문 번역 참조).

제3조는 아동권리협약의 우산조항(umbrella clause)이라고 하여 협약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인정된다. 의무의 주체는 사적, 공적 주체를 모두 포함하며, 특히 복지기관, 법원, 정부, 국회가 모두 포함된다. 이들의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니, 복지기관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활동부터 정부의 법과 예산집행, 행정행위, 국회의 입법활동이 모두 포함될 뿐 아니라, 특히 법원에서 판사는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Vuckovic Sahovic, Doek, & Zermatten, 2012).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의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담은 General Comment 제14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UN CRC 제3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UN CRC의 모든 조항이 궁극적으로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아동권리협약의 여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생길 경우에는 아동최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UN CRC 해석의 기본틀을 제공해 준다. 둘째, 제3조는 실제적인 권익(substantive right)을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아동의 여러 이익 가운데 선택해야 하거나 여러 주체들 간의 이익을 형량하고 선택해야 하는 경우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 규정 자체로부터 국가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법원에서 바로 인용 가능한 조항이 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이는 ‘절차에 관한 규정’(rule

of procedures)이다. 아동최선의 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주체의 모든 행동에 적용된다. 그렇게 광범위한 만큼 그 판단의 실재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아동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조사(assess)하고 결정(determine)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법원칙을 이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제시된다(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3).

2) 유엔아동권리협약 다른 조항과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²¹⁴⁾

UN CRC의 제3조가 전반적인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선언하는 조항이라면, 이 외에 별도로 아동최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 조항들이 있다. 이는 이 원칙이 구체적인 아동인권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제9조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반드시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에 의해 권한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이 그러한 분리조치가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10조 아동의 가정과의 재결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친권과 후견권의 행사에 대한 조항인 제18조에서도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특별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제21조 입양조항에서는 아동최선의 이익이 a primary consideration이 아니라 the paramount consideration으로 제시되어 있어 아동의 입양절차에 있어서는 보다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금 시 성인과의 구별을 규정한 제37조의(c), 사법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보장을 규정한 제40조 제2항(b)(iii)에서도 아동최선의 이익원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Freeman, 2007).

214) 이경은(2016).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최선의 이익 법리와 한국의 아동보호 법제 일부 내용 발췌.

3) ‘아동최선의 이익’과 아동보호제도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항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r her, and, to this e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 CRC는 최우선적으로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친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7조). 그러나 아동최선의 이익 조항인 제3조의 2항은 위와 같이 당사국이 부모, 후견인과 관련하여 아동의 복지(well-being)에 필요한 보호(protection)와 배려(care)를 입법·행정적 조치를 통해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을 친부모로부터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분리하거나 친권을 종료(termination)하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제9조).

UN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제도를 아동보호제도(Child Protection System)라고 규정하고, ‘사회복지, 교육, 건강, 안전, 사법절차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법, 정책, 규제, 서비스의 총합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8).

미국 연방정부는 191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를 설립하였다. 정부의 아동보호 관련 정책은 각 가정의 아동양육지원, 아동의 건강, 발달, 교육 지원, 청소년비행 예방과 건전한 진로탐색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보호국의 주된 업무는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및 보호, 아동 후견인 지원,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대안양육가정(친인척 양육포함) 지원, 입양에 집중되어 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3). UN의 정의와 미국의 각 주 정부의 입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복지적 프로그램과 복지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도 있다. 그 서비스와 규율의 수준과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아동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미국의 모든 주법에서 주 법원(state court)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이경은, 2016). 이 경우 반드시 ‘아동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결정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미국 모든 주에서 공히 아동의 양육자 결정,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보호(placement), 영구적 분리, 친권의 정지, 입양 결정 등을 들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문제는 앞서 설명했듯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특별히 고안된 행정적 사법적 절차와 함께 이 아동을 대표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이경은, 2016).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핵심적인 것으로 제시한 ‘절차적 보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UN CRC 제3조 제2항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의무는 바로 친권과 후견권에 대한 조항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아동최선의 이익의 구체적인 모습은 친권과의 충돌의 접점에서 발견된다.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친권의 박탈이다. 그러나 아동의 보호에 못지않게 아동이 친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사국의 최우선적 의무이다. 친권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공적 기관의 개입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전통적 가족관에서 보면 가정내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는 가족법(친족법)의 영역으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적인 규범이라고 보고, 부적절한 친권에 대한 정부 개입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 가족법의 변화 추세를 보면, 이미 법률 용어도 기존의 parental power 혹은 parental rights 대신 parental responsibility로 쓰면서 자녀의 보호와 양육의 책임의 범주로 친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가족관계에서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익 충돌 시 특별대리인을 통한 이익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박성호, 2013).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전이라도 아동의 보호를 위해 공적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생명과 인권에 직결되는 의료적 시술에 대한 부모의 동의권의 한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2.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례

1)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보호법제

197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예방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 P.L. 93-247)을 근간으로 한 초기 미국의 아동분리조치 정책은 아동의 안전을 중요시하여 부모 및 가족환경이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의 분리를 우선시 하였다(류정희, 2018). CAPTA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연방법상 아동학대 및 방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각 주의 아동학대 예방, 평가, 수사, 기소 및 치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 등과 함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평가, 기술적 지원,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아동학대를 관장하는 연방정부의 기본법으로서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한미현, 2005). CAPTA는 미국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s) 제67장 제5101조 내지 제5116 조의i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학대 및 방임 법원강화법(Strengthening Abuse and Neglect Courts Act of 2000), 국가아동보호법(National Child Protection Act), 아동학대책임법(Child Abuse Accountability Act), 아동성폭력가해자로부터의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of 1998), 아동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Children Act),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이다. 이외에도 입양 및 안전가족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입양촉진법(Adoption Promotion Act of 2003) 등이 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에 대한 개입이 형사처벌 보다 치료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보여준

다. 즉,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이 심각하거나 부모의 기관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만 법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법적 처우와 별도로 부모에 대한 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 중독의 치료, 가족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이나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은 위탁아동에 대한 가족보존과 가정복귀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노혜련 외, 2019).

(2)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AACW)과 입양 및 안전가족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ASFA)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이하 AACW)은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정 밖에 보호배치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후 적절한 시기에 가족과 재결합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적절한 때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계획으로 입양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ACWA는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양육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믿음에 기초해 가족보존과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정부가 이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AACWA는 가족재결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례계획, 주기적인 재검토, 자문회의의 개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가족과 인접한 위탁양육시설로의 배치 등 주정부가 실현해야 할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Pine et al., 2009). 이에 따라 가정외 보호된 학대 피해아동의 영구적인 보호방안 수립에 있어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CPS)의 기초 또한 가족재결합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으며 가족재결합이 불가능 할 경우에만 입양과 같은 대체 보호수단을 고려하게 되었다(Wulczyn, 2004). 그러나 재결합을 강조하는 정책적인 흐름에 의해 충분한 준비 없이 아동이 불안정한 부모 및 가족으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재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정책의 흐름은 다시 아동의 안전에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Roberts, 1999).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과 원가정보존법(Family Preservation Act of 1992,

FPA)의 효과에 대한 회의와 파생된 문제점들에 비판이 거세지면서 입양 및 안전 가족법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ASFA)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족보존과 지지서비스 프로그램, 학대 및 방임된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구적인 배치의 가속화, 입양가정에 배치되는 아동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대한 주 정부의 책임 강화, 친부모가 재결합을 원하지 않을 때 위탁가정배치 대신에 제공될 특별서비스의 마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영구적인 배치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유경, 변미희, 임성은, 2010). 이 법에서는 아동이 일단 정부의 보호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위탁가정이나 시설보호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키고, 원래의 가정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거나,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입양가정을 찾아 입양 조치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분리보호된 아동이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것을 막고 아동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ASFA는 아동의 안전과 가족보존의 가치를 모두 강조하며 가정의 보호 아동이 신속하게 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Lau et al., 2003; Taussig et al., 2001). ASFA는 서두에 가족보존과 가족재결합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입양과 같은 대안적인 배치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족보존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AACWA와 유사하나 학대나 방임 등과 같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의해 분리보호된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재결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호의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Krugman, 1999; Roberts, 1999). 또한 AACWA는 가정의 보호아동의 영구적인 보호방안으로 가족재결합을 장려한 반면 ASFA는 신속한 입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ASFA는 위탁보호 이후 15개월 이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가족재결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의 친권을 신속하게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조항을 두어 친권유지와 가족재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예외 조항은 아동이 친인척 보호를 받는 경우, 위탁보호기관에서 친권박탈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국가가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연방정부는 ASF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시한 기본건수 이상의 입양 건에 대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입양건수가 1995년의 25,639건에서 1999년에는 46,072건으로 증가하였다(박세경 외, 2015).

ASFA의 제정은 주정부의 가정외 보호아동보호정책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를 적용하는 방식에는 주(state)마다의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ASFA 제정 후 위탁아동의 영구적인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가족재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일리노이의 경우 입양에 중점을 두었다. 뉴욕은 ASFA가 제시한 위탁보호 이후 15개월 이내의 친권박탈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한을 가족재결합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한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가족재결합을 위한 주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였다(Hort, 2000). 이와는 반대로 일리노이의 주²¹⁵⁾의 경우 ASFA에 명시되어있는 친권박탈 조항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입양을 장려하였고 그 결과 ASFA가 통과된 이래로 일리노이 주의 위탁아동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Hort, 2000). 일리노이 주의 경우 가족보존 프로그램의 효과성 또한 다른 주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일리노이 주의 아동보호정책에서 가족재결합이 우선순위가 낮은 대안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프로그램 실행에 의한 결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Hort, 2000).

2) 영국의 학대 피해아동보호법제

영국은 1946년에 발표된 커티스위원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1948년에 아동법(Children Act)을 제정하였다. 커티스위원회 보고서는 집단양육시설에 의한 보호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ynch, 2020). 그러나 의붓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1975년에 아동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법은 부모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아동을 격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박세경 외, 2015; 서영민, 김승영, 2019). 이에 따라 가정외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정책 또한 가족보존 보다는 아동의 안전을 중시하여 입양과 가정위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가정외 보호를 우선시하는 기조의

215) 일리노이 주의 경우 P.L. 96-272의 제정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가족보존프로그램인 Family First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P.L. 105-89의 제정과 함께 가정외 보호아동 정책적 방향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김혜란, 1993).

부작용으로 불필요하게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1989년도에 다시 부모에 의한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아동법(Children Act)이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영국의 아동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다(박세경 외, 2015; 정웅석, 문영희, 2012). 해당 법은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가족보존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가정외 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와 역할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윤수경, 2019).

(1) 1989년 아동법 (Children Act of 1989)

1989년 아동법은 아동의 보살핌, 보호 및 양육과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의 개념을 소개하고 법원의 권한, 아동에 대한 지방 당국 및 자발적 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설명한다. 이 법의 규정은 위협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가족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1989년 아동법은 피학대아동보호법제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9년 아동법은 총 12편으로 아동 관련 조항 중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대한 내용은 제5편 ‘아동의 보호(Protection of Children)’에 규정되어 있다.

(2)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of 2004)

1989년 아동법은 2003년 일명 클림비 보고서(Climbie report)를 통해 “2004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2004)”으로 보완되었다. 클림비 보고서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the Keeping children safe)”라는 보고서와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라는 녹서를 발간하고,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하여, 아동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2004년 아동법은 1989년 아동법을 조금 더 강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 아동 위원(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의 신설
- 지자체의 아동보호담당관 지정 의무 명시
- 아동복지를 위하여 지자체와 기타 단체 간의 협력 의무 명시
- 합리적 처벌 조항의 삭제 : 종래 아동에 대한 상해 또는 폭행 범죄가 자행된 경우 그 상해 또는 폭행은 아동의 훈육을 위해서 체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아동법 제 59조를 개정하여 아동에 대한 처벌은 교육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출처: 강은영, 김희균(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 피해아동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04년 아동법은 크게 아동 위원, 영국의 아동서비스, 웨일즈의 아동서비스, 가족 소송을 위한 자문 및 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10조에서는 지역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당국, 주요 파트너 기관 및 자발적 및 지역사회 부문을 포함한 기타 관련 기관 간의 지역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지역 당국에 있으며 지역 당국과 협력할 의무는 관련 파트너에게 부여된다. 제11조는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특정 기관의 기능에 맞추어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밖에도 2004년 아동법은 공동 지역 검토(joint area review), 아동사망검토(the child death review) 파트너 등의 틀을 만들어 아동보호서비스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서영민, 김승영, 2019).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영국에서는 세간의 충격을 불러일으킨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을 겪으며 기존 법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그에 따른 보고서가 발간되고, 정부는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지침을 출간하게 되었다.

2018년 아동보호 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첫째,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관료주의적 영향을 받아 적절한 개입이나 타 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지방정부 산하의 단일 체제인 지역아동보호이사회(LSCBs)를 폐지하고 지방정부-경찰-보건기관의 세 기관 연합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1988년 협력지침(1988 Working Together)에 진상조사(Case Reviews)라는 개념으로 처음 소개되어 “1989년 아동법 하에서의 협력지침(Working Together Under the Children

Act 1989)”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진상조사(Serious Case Reviews: SCR)”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동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학대나 방임이 밝혀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심각한 아동학대 진상조사(SCR)와 관련해서, 사례에 대한 대응보다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급급하고 사례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조정실 내에 국가위원회(National Panel)를 설치하여 지방정부가 정리한 사례들을 검토 및 관리하도록 하고, “아동의 사회복지를 위해 효과가 있는 운동 센터(What Works Centre for Children’s Social Care)”에 종합적인 사례 분석을 의뢰하며, 학대아동사례보고 개정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다. “2018년 아동보호를 위한 지침”에서는 심각한 아동학대 진상조사(SCR)의 명칭이 “아동보호 사례 검토(Child Safeguarding Practice Reviews: SPRs)”로 바뀌었다. 셋째, 아동사망패널(Child Death Overview Panels: CDOP)과 관련하여 우드 보고서는 아동 사망에 대한 검토 자료의 수가 부족해서 아동 사망 자료를 분석해 패턴화할 수 있는 수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관련 내용 분석이 교육부보다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특히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이므로 이관하였다(서영민, 김승영, 2019).

2018년 영국의 아동법(2004) 개정에 따라 더불어 개정된 「Working Together」(2018)에서 나타나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s)를 보호 파트너(Safeguarding Partners)로 대체한 것이다. 2018년 개정된 영국의 아동법(Children Act 2004)은 아동의 안전보장을 위한 지역내 핵심 기관(agency)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핵심기관에는 보호 파트너(Safeguarding Partner)로서 지방정부, 경찰, 임상위탁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 등이 포함된다²¹⁶⁾.

이에 따라 「Working Together」(2018)에서는 아동보호(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들 가운데, 다기관협력의 핵심적 주체로서 지방정부, 경찰, 임상위탁그룹(CCG)을 들고, 이 세 주체 책임자들의 주도 하에 아동보호 처리방식이 이끌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8년 아동보호를 위한 지침”에서는 아동 사회복지 서비스 절차를 다음과 같이 이행하게 한다. 아동의 사건이 지방정부당국 아동의 사회복지에 회부된 후 평가가 수행되는 속도는 개별 아동의 필요와 그들이 직면한 피해의 성격과 위협에 의해

216) children Act 2004 16(E)(3)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판단해야 한다.

- 의뢰 접수된 후 근무일 이내에 지방 당국 사회복지사는 의뢰인에게 접수를 통보하고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 아동은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 아동은 도움이 필요하며 1989년 아동법 제17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아동이 고통 받고 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1989년 아동법 제47조에 따라 문의하고 아동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가 있다.
- 모든 서비스는 아동과 가족의 요구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지방정부당국이 취할 추가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
-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아동을 볼 수 있다.

일단 지방정부당국 아동 사회복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수석 사회복지사는 의뢰인과 함께 우려의 본질과 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방정부당국의 아동 사회보호서비스 의뢰된 경우, 주택 및 보건 단체와 같은 지역 당국의 여러 기관의 실무자는 지방정부당국이 아동의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1989년 아동법 제27조에 따라 협력할 의무를 다한다.

(4)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Looked-after children: LAC)

영국은 우리나라의 보호아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Looked-after children: LAC)’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LAC는 아동보호공무원(local authority)이 24시간 이상 돌보는 아동들을 의미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아동보호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하거나(Children Act, section 20), 돌봄명령(section 31, 38),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명령(section 44, 46) 혹은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진 아동(section 21) 등을 포함한다(Children Act 1989). 대부분 가정위탁, 양육시설 혹은 지정된 아동보호관련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며, 가정에서 보호되더라도 아동보호공무원과의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LAC)에 포함하고 있다(NSPCC Learning, 2021). 따라서 영국의 경우, 가정외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이 가정에 머물러 있더라도 아동보호기관의 서비스 대상인 경우에는 LAC에 포함되며, 사법체계의 관할하에 있는 아동들도 이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아동법 17조(Children Act, Section 17 (10))에는 도움필요아동을 ‘국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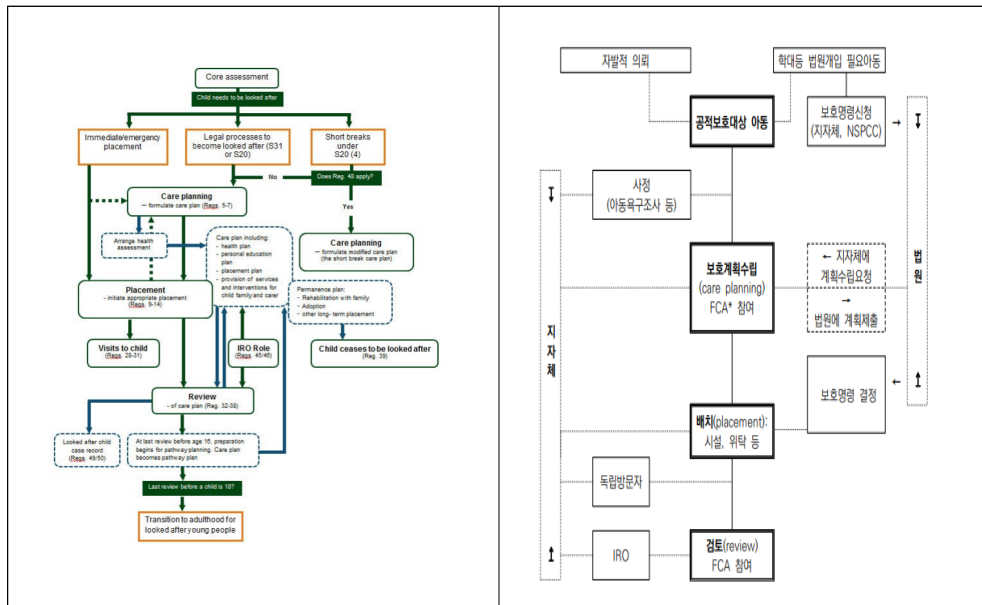
서비스 없이는 일정한 건강과 발달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건강이나 발달이 이미 손상되어 있거나 앞으로 손상될 수 있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아동이 도움필요아동으로 인지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욕구사정(need assessment)을 실시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며, 아동돌봄서비스, 초등아동에 대한 방과후 및 휴일돌봄서비스,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부모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양육지원 서비스,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부모휴식지원서비스 및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Children Act, Section 18-21).

영국에서 아동이 공적보호아동이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요보호아동(children in need)에 대한 보호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워 국가가 주거를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이다. 즉 법 제20조(Provision of accommodation for children: general)는 아동에 대한 숙소제공에 관한 규정인데, 제20(1)조는 '(a) 부모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을 가진 자가 없는 아동, (b) 기아, 미아, (c) 아동을 돌보아온 사람이 아동에게 (어떤 이유로든, 그리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적절한 주거나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아동 등, 요보호아동에게 지사체는 숙소제공(accommodation)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족이 아닌 지사체로부터 숙소제공을 받은 아동은 공적보호아동이 된다. 제20조 규정은 공적보호아동이 되는 포괄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요보호아동의 자연적 발견이나 보호자(또는 아동)의 자발적 의뢰에 대하여 지사체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영인, 2018).

또 다른 과정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한 아동보호인데, 법원명령에 의해 아동이 공적보호아동이 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는 학대 피해아동이지만 그 이외에 부모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것이 부모에게 잘못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Brammer, 2015: 252)로서 보호명령(care order)(법 제31조) 또는 임시보호명령(interim care order)(제38조)이 취해진 경우, 그리고 단기적 응급조치로서 응급보호명령(EPO)(법 제44조)이나 응급보호의 일환으로 경찰이 아동을 분리보호 하는 경찰보호(police protection)(제46조)가 취해진 경우이다. 이외에 형사절차 상 구금을 수반하는 법원명령들이나 경찰서 유치나 구류상태에 있는 아동도 공적보호아동이 된다. 위의 두 개의 흐름 이외에도 지사체가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조치로서 배치한 경우(입양 및 아동법 2002, 제 18조 제3항)도 공적보호아동이 된다.

1989년 아동법 제20조의 숙소제공과 제31조의 보호명령의 두 가지 경로를 거쳐 국가의 보호대상아동이 되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지자체와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영국의 공적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조치 과정



* DfE(2015). 참고, 보호조치과정 검토
 * FCA(Family Court Advosor): 아동 후견인

이들에 대한 숙소 제공을 비롯하여 전 과정에서 아동을 잘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이며, 이러한 보호가 아동최선의 이익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과 지자체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자체의 역할수행에 대하여 이를 보완 내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 자발적 의뢰는 법원의 개입 없이 공적보호아동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의 보호명령이 있어야 보호조치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각 국가에서 아동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지원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기관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및 지침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2008년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은 보호받는 아동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고품질 보호 및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은 1989년 아동법을 개정하여 영국의 지방 당국이 보호 대상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촉진할 사람을 최소 한 명 이상 임명하도록 요구했다. 영국에서는 교육부(DfE)가 치료 계획, 배치 및 사례 검토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을 제공했다(DfE, 2021). 교육부는 또한 돌봄 아동 및 양육자의 범죄화를 줄이기 위한 지역 당국 아동 서비스, 지역 돌봄 제공자, 경찰, 형사 사법 기관 및 지역 보건 서비스(정신 건강 서비스 포함)를 위한 프로토콜을 발표했다(DfE, 2018). 웨일즈에서는 2015년 The Care Planning, Placement and Case Review (Wales) Regulations 에서 아동보호를 계획하는 지방 당국의 책임을 명시했다. 웨일즈 정부는 보호 및 수용 아동을 위한 실행 강령을 발표했으며, 이는 보호 및 지원 계획, 숙소 및 배치, 안전한 숙소, 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관한 돌봄 아동 지원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Welsh Government, 2015).

북아일랜드에서는 1995년 아동 명령(The Children Order 1995)에 아동보호에 관한 지방 당국의 의무, 권한 및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돌봄 및 감독, 아동 및 아동 가정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북아일랜드 보건부는 1995년 아동 명령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 및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양육 시설에서 떠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아일랜드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삶의 가치 “돌봄”을 발표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2021).

스코틀랜드에서는 1995년 아동법(Children Act 1995)에 지역 당국이 돌보는 아동 및 양육자와 관련하여 의무, 권한 및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Foster Children (Scotland) Act 1984는 스코틀랜드의 위탁 양육에 대한 조항을 규정되어 있다. 2009년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규정(Looked After Children Regulations 2009)에는 보호 계획, 양육 및 비상 조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14): 12부에 대한 국가 지침: 보살핌을 받을 위험에 처한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가이드에서는 일선 실무자, 관리자 및 전략적 리더에게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다(Scottish Government, 2016).

최근 스코틀랜드의 지방 당국은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형제자매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Scottish Government,

2021). 1995년 아동법 제17조(1)에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방당국의 의무를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7조(1A)에서는 형제자매와 관계 유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형제자매를 함께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지방 당국은 형제자매를 서로 가까운 곳에 배치에 두어야 한다. 의도는 형제자매가 동일한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관계가 보다 쉽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때, 형제자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경청하고,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한다(Children Act 1995 17(3)). 지역 당국은 그들이 모두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3) 호주의 학대 피해아동보호법제

호주의 경우 가정내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의 경우 가정내 폭력의 범주에서 동시적인 대응과 통합적인 다기관 연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방 정부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방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시범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구축되어 왔다.

(1)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적인 법체계

호주에서 아동보호는 아동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때 국가권력이 가족에 개입할 수 있는 공법의 영역에 속하며(Titterton, 2017),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아동보호서비스의 관리를 담당하는데 아동보호서비스의 직접적 전달은 주 정부 및 자치 지구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 및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로 피해 보고에 대응할 법적 책임이 있다(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2018). 지난 10년 동안 호주 아동보호 시스템은 대대적인 개혁을 겪었다. 특히,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을 가족 보호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공중 보건 접근 방식을 아동보호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2018).

다음의 <표 3-1>은 호주의 주 및 자치지구 정부에서 아동보호와 관련한 주요 입법과 도입 시기의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호주(South Australia)의 경우 1993년 아동보호법이 제정되어 가장 일찍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아동보호 관련 입법화의 내용 또한 호주 전역의 각 주와 자치지구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이는 각각의 지역적 필요에 대한 반영의 필요성과 그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3-1> 호주 주정부 및 자치구의 아동보호법

관할권	주요 아동보호법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2008년 아동 청소년법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 (ACT))
New South Wales	998년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보호) 법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 (NSW))
Northern Territory	아동보호 및 보호법 2007 (Care and Protection of Children Act 2007 (NT))
Queensland	1999년 아동보호법 (Child Protection Act 1999 (Qld)) 2017년 아동보호 개혁 수정안 (Child Protection Reform Amendment Bill 2017 (Qld))
South Australia	1993년 아동보호법 (Children's Protection Act 1993 (SA))
Tasmania	1997년 아동, 청소년 및 가족법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97(Tas.))
Victoria	2005년 아동, 청소년 및 가족법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2005 (Vic.))
Western Australia	2004년 아동 및 지역 사회서비스 법 (Children and Community Services Act 2004(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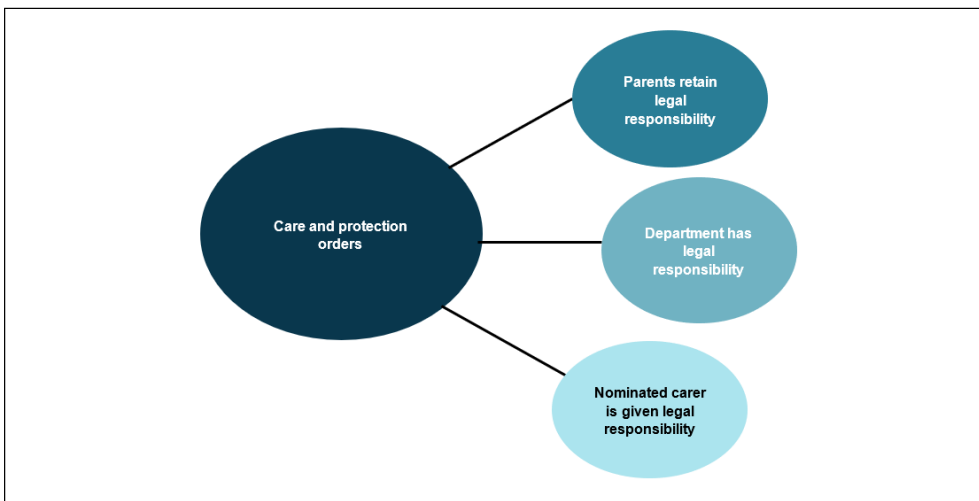
자료: Australian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CFCA Resource Sheet— March 2018.
<https://aifs.gov.au/cfca/publications/australian-child-protection-legislation> 2022.08.20. 인출.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주별 입법화의 토대는 핵심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연방법률(Commonwealth law)이다. 연방법률의 핵심 부분은 특히 1975년 가족법 및 1986년 호주 인권 위원회법으로 주 정부의 법률에 지침을 제공한다. 6개의 주와 자치지구에서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원칙은 ① 아동최선의 이익 존

중 (best interest of the child), ②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과 ③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의 돌봄과 보호명령은 아동보호 부서에 아동복지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적 책임을 부여하는 법적 명령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3-2> 참조).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거나 다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보호명령이 내려진다.

[그림 3-2] 돌봄 및 보호명령에 의해 부여된 법적 책임



<표 3-2> 호주의 아동 돌봄과 보호명령의 유형

명령유형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명령유형은 언제 사용하나요?	아동을 돌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기간
후견인 명령 (Guardianship order)	주 또는 준주 아동보호 부서 또는 비정부 기관	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있고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지명된 양육자	단기 및 장기
양육권 명령 (Custody order)	아동이 주 또는 준주 아동보호 부서 또는 비정부 기관의 보호를 받는 경우 아동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을 유지한다.	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있고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부서 또는 비정부기관	단기 및 장기

명령유형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명령유형은 언제 사용하나요?	아동을 돌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기간
제3자 부모 책임 명령 (Third-party parental responsibility order)	법원이 승인한 지명된 개인	부모가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고 안정적이거나 영구적인 배치가 이루어진다.	지명된 양육자	단기 및 장기
감독 명령 (Supervisory order)	아동의 부모(아동보호 부서의 감독, 지도 하에)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이나 지도가 필요할 때	부모(아동보호 부서의 감독 및 지도 하에)	단기 및 장기
일시 및 임시 명령 (Interim and temporary order)	아동의 부모 또는 주, 준주 아동보호 부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아동을 제거하기 위한 임시 돌봄은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명령을 찾는 동안 발생한다.	아동의 부모 또는 주 및 준주 아동보호 부서	단기
행정적 배치 (Administrative arrangement)	주 또는 준주 아동보호 부서 및 비정부 기관	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즉각 제거해야 하는 긴급상황	아동보호 부서 또는 지명된 보호자	단기 및 장기
이민 명령 (Immigration order)	이민부 장관 또는 지명된 양육자	자녀를 돌볼 친척 없이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	아동보호 부서 또는 지명된 보호자	단기

출처: <https://www.aihw.gov.au/reports/child-protection/child-protection-australia-2020-21/contents/care-and-protection-orders>

아동은 입증된 학대, 아동과 부모 사이의 회복할 수 없는 관계 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돌봄과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입증된 통지가 반드시 아동이 돌봄과 보호명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자녀의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부서는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가족에게 서비스 지원을 의뢰하거나 안전 계획을 세우거나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2) 호주의 아동보호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연방의 아동보호 정책 프레임워크는 연방 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이는 각 주와 자치지구의 아동보호서비스정책에 반영된다. 정부들의 위원회(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에 의해 개발되었던 국가 프레임워크(2009-2020)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 최상의 이익이 모든 정책과 입법화 과정의 중심에서 고려하는 공중 보건의 접근 방식(public health approach)을 도입한다(Australian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CFCA Resource Sheet).

호주의 아동보호 정책 프레임워크는 주·자치지구 정부들이 2008년까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었던 아동보호대응체계 및 아동보호서비스 개혁의 핵심 쟁점은 사례의 접수에서 시작하여 조사, 사례관리에 이르는 아동보호의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위기(risk)”와 “욕구(needs)”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부문 간의 통합적 접근(joined up approach)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보건과 교육 등 타 영역과 아동보호업무의 연계 및 조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며 아동보호 관련 정보의 체계화 관련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빅토리아 등 대부분의 주에서 아동보호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 부문 간, 정부와 비정부부문 간의 분리되어 간혀있는 시스템을 해체(breaking down the silos)하고 정부 간 협력과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통합된 정부(whole-of-government)의 아동보호정책은 정부, 공동체, 다기관(interagency) 간 공통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이는 아동의 성장환경인 가족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아동보호서비스의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적 대응전략은 아동과 가족에 의해 경험되는 다른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는 2차적 예방과 초기개입서비스를 구축하는 것, 가능한 한 초기아동기에 개입하기,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통합된 정부와 부처별로 분절된 체계의 해체, 정보공유,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동체와 확대가족 및 친척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지역화된 서비스와 서비스 허브를 구축하는 것 등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위험, 안전 및 안정성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omfield & Holzer, 2008).

(3) 호주의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정외 보호 아동

아동보호서비스는 가족 환경 내에서 아동 또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한 초기 평가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부모는 전화로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다(Price-Robertson, Bromfield, & Lamont, 2014).

아동이 여전히 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 담당자가 가족에 대한 전체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의심되는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족은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다. 의심되는 피해가 입증되면 가족은 계속해서 아동보호에 관여하고 사례 관리를 받게 되며, 이는 어떤 경우에는 아동 또는 아동을 가정 밖 돌봄에 배치할 수 있다(Price-Robertson et al., 2014). 이 경우 최종 목표는 안전하게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를 부모의 보살핌으로 되돌리는 것이다(PCR, 2017; Salveron, Lewig, & Arney, 2009).

아동보호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모를 위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가족이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돌보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되도록 다른 지원 서비스에 가족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양육 모임, 상담 서비스, 집중 가족 지원 서비스, 가정 폭력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주택 서비스, 알코올 및 기타 약물(AOD)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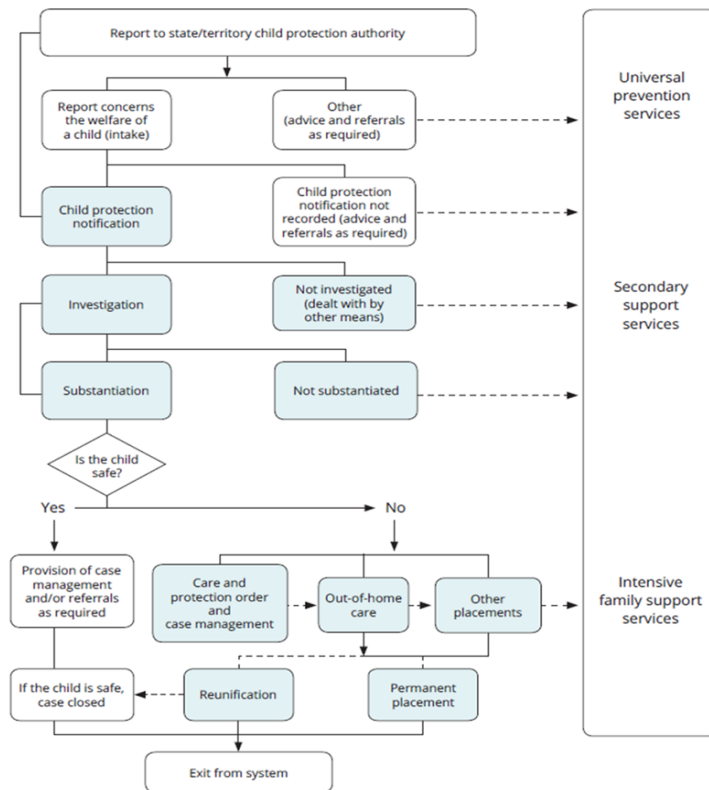
이러한 서비스의 종사자는 아동보호서비스와 다양한 수준의 접촉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 지원 서비스는 아동보호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반면, 성인 정신 건강 전문가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아동보호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다. 아동보호와의 직접적인 접촉의 양에 관계없이 호주에서 아동 및 가족과 함께 일하는 많은 실무자는 아동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서비스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윤리적 요구 사항으로 간주한다.

가정의 보호(Out-of-home care: 이하 OOHC)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증거로 인해 부모 또는 1차 양육자와 함께 살 수 없는 0-17세 아동의 대체 양육을 말한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 2019). 가정 환경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간주되지 않을 때 OOHC 시스템은 아동에게 안전, 안정성 및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CFCA, 2018).

호주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 2009-2020(호주 정부 위원회[COAG], 2009)에 따라 아동을 보호시설에 배치하는 것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배치 안정성과 가능한 경우 학부모와의 재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적으로, 서비스는 가정에서의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가정의 보호 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모 및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음 [그림 3-3]은 호주의 아동보호 절차이다.

통합에 대한 정책 강조와 예방 및 조기 개입에 대한 증가하는 증거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OOHC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AIHW가 수집한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45,756명의 아동이 보호시설에 살고 있다. 이는 1,000명당 8.2명으로 2011년 6월 30일 기준 1,000명당 7.4명에서 증가한 수치이다(AIHWa, 2019). 보호아동의 수는 주와 준주에 따라 다르다(AIHW, 2019). 이러한 변동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국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림 3-3] 호주의 아동보호 절차



출처: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2)

아동이 보살핌을 받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며 부모가 양육 역할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Salveron, Arney and Lewig, 2009).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보호를 받는 동안 자녀의 삶에서 긍정적이고 보호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한 성인과의 관계는 아동 안전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보호 시스템은 이러한 우선순위와 씨름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과 연결하는 복잡하고 지속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Salveron & Arney, 2012).

아동보호 당국은 취약한 아동에게 사례 관리, 지원 서비스 안내, 신고된 아동학대/방임 조사, 돌봄 제공 및 보호명령, 가정외 돌봄 배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 아동보호에 보고된 아동보호서비스 요약은 <표 3-3>과 같다.

<표 3-3> 호주 취약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

서비스	언제	무엇을
조사	아동보호 부서가 추가 조치를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아동은 조사 대상이 된다.	아동보호 요원들이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한다. 인터뷰, 기록 확인 및 가정 방문과 같은 다양한 정보 수집 활동이 포함된다.
돌봄 및 보호명령	아동학대/방임의 피해자로 밝혀졌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명령이 내려진다. 대부분의 경우 입증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있는 경우는 아동을 즉각 분리보호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명령은 법원을 통해 내려진다. 이것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아동보호 부서, 승인된 원주민 지역사회 통제 조직 또는 지정 보호자에게 이전하거나 부모에 대한 감독을 시작하는 효과가 있다.
가정외 보호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에게 가정외 보호시설을 제공한다. 이는 아동보호 목적이거나 부모에게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은 집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숙소에 배치된다. 배치 유형은 각 아동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집중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가족은 언제든지 집중 가족 지원 서비스에 의뢰될 수 있다. 아동보호 부서는 덜 심각한 경우에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가족 재결합을 촉진할 수 있다.	가족은 조언,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이러한 서비스에 의뢰된다. 목표는 부모로부터 자녀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능한 경우 재결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3.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조치로 인한 국외 사례

아동은 주양육자로부터의 학대로 인해 원가정을 떠나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 즉,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부모와 분리되는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적절하게 돌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분노를 느끼며,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Perry, et. al., 1995: Rosenfeld, P et. al., 1997: Williams, Fanolis, & Schames, 2002, 노충래 외, 2008). 또, Burns, Phillip과 Wagner(2004), Clausen, Laudsverk, Ganger, Chadwick과 Litronwnik(1998) Landsverk, Garland와 Leslie(2002)의 연구에서도 위탁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이 위탁 되었을 때, 애착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공격적 행동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우울, 불안, 공포 등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 부모의 이혼, 부모의 학대, 방임 등에 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 배치된 아동은, 성장 이후 성인이 되어도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을 겪는다. Benedict 외(1996)에 의하면,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위탁가정에서 성인기를 맞이한 사람은, 학력, 직업, 신체 및 정신건강, 스트레스, 위험행동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나타내었고, 이 중 약 3분의 1가량은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한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양육자로부터의 분리가 아동기에 부적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아동은 주양육자와 왜 분리되었는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Stahl(1990)에 의하면, 학대 피해아동에게 있어 원가정에서의 주양육자와의 분리, 슬픔, 버림받음, 죄책감, 두려움 등의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장윤영, 박태영, 2006). 주양육자가 더 이상 아동 본인을 원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불안감, 주양육자가 자신을 버렸다는데서 오는 분노와 비난, 버림받을 만큼 내가 잘못되었다는 죄책감과 절망 등이 그것이다. 또, Maluccio(1996)은 학대 피해아동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였으나, 분리보호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새로운 환경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표류현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장윤영, 박태영, 2006).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정외 보호받는 시설보호 아동은 원가정과 분리과정과 분리 이후의 시설생활에서 그들만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생존 및 성장과 발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주요국 규정의 몇 가지 함의

본 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 제3조 아동최선의 이익에서의 아동보호제도를 살펴 보았다. 아동보호체계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친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7조). 그러나 아동최선의 이익 조항인 제3조의 2항은 위와 같이 당사국이 부모, 후견인과 관련하여 아동의 복지(well-being)에 필요한 보호(Protection)와 배려(Care)를 입법·행정적 조치를 통해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을 친부모로부터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분리하거나 친권을 종료(Termination)하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제9조). 즉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핵심적인 것으로 절차상의 제도가 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아동보호 체계에서 아동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상의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영국, 호주, 아동보호체계에서 다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그리고 영구적 가정입양 제도를 거쳐왔다. 나아가 위협가정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아동분리 정책 이외에 원가정으로 아동을 복귀시켜 원가정에서의 아동보호를 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유지(Family preservation) 및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보호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의 자립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도 2018년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가 지침으로 마련되고, 각 지자체 별로 ‘지방당국, 경찰, 임상위원회(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CG)’로 구성된 3개의 법정보호파트너는 ‘Multi-agency Safeguarding Arrangements’를 수립하고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지침 마련, 미국의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동보호를 위해 다기관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각 국가에서 아동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지원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기관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및 지침이 있다. 특히, 최근 스코틀랜드의 지방 당국은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형제자매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Scottish Government, 2021). 1995년 아동법 제17조에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형제자매와 관계 유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형제자매를 함께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지방 당국은 형제자매를 서로 가까운 곳에 배치에 두어야 하고 형제자매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형제자매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동의 복지를 고려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때 국가권력이 가족에 개입할 수 있는 공법의 영역에 속하며(Titterton, 2017),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아동보호서비스의 관리를 담당하는데 아동보호서비스의 직접적 전달은 주 정부 및 자치지구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 및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로 피해 보고에 대응할 법적 책임이 있다(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2018). 주별 입법화의 토대는 핵심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연방법률(Commonwealth law)이다. 연방법률의 핵심 부분은 특히 1975년 가족법 및 1986년 호주 인권 위원회법으로 주 정부의 법률에 지침을 제공한다. 6개의 주와 자치지구에서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원칙은

① 아동최선의 이익 존중 (best interest of the child), ②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과 ③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보호 시설에 배치하는 것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배치 안정성과 가능한 경우 학부모와의 재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적으로, 서비스는 가정에서의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가정외 보호 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모 및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부모 및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절한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제4장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조사 결과

제4장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조사 결과

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 조사방법과 양적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조사에서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아동 복지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학대 피해아동과 아동의 보호자²¹⁷⁾,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실무자²¹⁸⁾를 인터뷰하여 학대와 관련된 상황과 분리 조치 이후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였다. 질적자료는 세 그룹에 대해 수집되었는데 아동, 부모/보호자,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관계자²¹⁹⁾이다. 학대가 발생한 상황과 학대 발생 이후 아동의 경험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대화는 동의를 구한 후 녹취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 자료와 함께 아동이 지내고 있는 거주환경을 알아보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²²⁰⁾,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하여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정서적 환경을 파악하였다.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환경에 대해 시설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진자료²²¹⁾도 수집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 FGI(초점집단면접)도 진행하였는데, 학대 등 아동보호 관련 맥락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아동 관련 전공 교수, 지자체의 아동

- 217) 학대피해아동쉼터나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지내는 아동에게 있어 보호자는 시설의 운영자이거나 보육사인 경우가 많다. 아동에게 친생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폭력, 방임, 유기 등으로 아동과의 관계가 단절 또는 소원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어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 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관계자를 보호자로 인터뷰하였으며, 유일하게 친생부모를 인터뷰할 수 있었던 사례는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진 사례였다.
- 218) 연구에서 인터뷰한 실무자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자 등 관계자로서 아동의 보호자 역할도 하고 있어 보호자와 실무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
- 219)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와의 접회가 어려워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부모를 대신하여 인터뷰하였다.
- 220)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중에서 시·군·구 지자체가 지정·설치하여 운영하며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는 등 일반 공동생활가정과 다른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동생활가정에도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221)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진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시설의 내부 구조 또는 외부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보호팀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학대전담경찰관(APO), 아동학대 관련 법률가,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자 등이 참여하였다.

양적조사에서는 학대로 인해 분리조치된 아동과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분리조치와 관련된 실무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대와 관련된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 그리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1.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아동, 부모/보호자, 실무자/전문가)과 시설 방문

1) 심층면접과 시설방문을 통한 분리 조치 아동 실태 파악 개요

분리조치된 아동이 경험한 학대상황과 학대 이후 분리 조치되는 과정, 그리고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환경과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학대로 인해 분리 조치되어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여 아동이 경험한 학대상황과 분리 조치 이후 아동의 삶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주변 환경 및 실내의 물리적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사진촬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²²²⁾ 이와 함께 시설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여 아동의 심리·정서적 환경을 파악하였다. 아동과의 인터뷰는 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보이스레코더를 통해 녹취하였고, 녹취된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질적 분석방법인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질 의서를 제공하였고 방문을 통한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와의 인터뷰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분리조치 이후의 원가정 복귀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 FGI(초점집단인터뷰)를

222) 현장 이해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하였으나 시설 노출 방지를 위해 사진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인터뷰와 시설방문 계획은 연구 초기의 계획에서 일부 변경되어²²³⁾, 심층면접과 FGI 진행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4-1〉 인터뷰, FGI 진행계획과 최종 수행내용

최초 계획(20명)	최종 진행(20명)
분리 조치 경험 아동 7명	총 4명 - 분리 조치되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3명 - 원가정 복귀(그룹홈에서 지내다가 복귀)한 사례 1명
분리 조치 경험 부모/보호자 7명	총 4명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양육시설)의 실무자(보호자) 3명 - 원가정 복귀한 사례의 모친 1명
분리 조치 관련 실무자/전문가 6명	총 12명 - 1차 FGI: 분리 조치 관련 실무자/전문가 6명 - 2차 FGI: 분리 조치 관련 실무자/전문가 6명

223) 아동, 아동의 보호자, 시설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와 시설 방문을 추진해온 과정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학대피해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한 아동, 그리고 아동의 부모 등 가족을 인터뷰하고자 섭외하는 과정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시보호시설이나 보호치료시설 등 학대로 인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방문이나 인터뷰 등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방문이나 인터뷰를 거절할 사유가 아동이 인터뷰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동이 인터뷰를 거부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등과 같은 이유였다. 이러한 이유는 시설 측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터뷰를 위한 섭외를 진행하면서 아동 인터뷰나 시설 방문에 호의적인 곳들이 있었다. 아동이 처한 상황이나 코로나19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섭외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었다.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나 섭외에 적극적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하게 하였다. 이점을 여기에서 밝히는 이유는 시설의 운영철학, 운영원칙,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의 가치와 태도 등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줄 것이므로 시설을 운영하고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얼마나 개방적인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연구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구 초기에는 아동과 보호자를 각각 하나의 집단으로 하여 FGI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섭외가 어렵고 섭외가 되었다고 해도 아동이나 보호자를 집단 인터뷰로 의견 수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후 학대 피해아동은 개별 인터뷰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아동의 보호자는 친부모나 기타 가족을 인터뷰하고자 하였으나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시설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보호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하였고,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통해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표 4-2〉 시설 방문 계획과 최종 수행내용

최초 계획(4개소)	최종 방문 시설(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2곳의 시설 방문 - 지방 2곳의 시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2개 시설 방문 - 수도권 1개 시설 방문 - 지방 1개 시설

연구를 위해 진행된 인터뷰와 시설 방문, 실무자/전문가 FGI는 다음의 표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4-3〉 인터뷰, 시설방문, FGI 진행과정 요약

일시	진행 내용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참여할 실무자/전문가 인원 확정
7.15-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참여할 아동 섭외 위해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 1차 섭외 요청 • 아동양육시설 방문 위한 1차 섭외 요청 •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이유로 시설 방문 위한 1차 후보 4곳 중 3곳에서 섭외 거절함 • 서울의 S시설이 방문 수락하여 공문 발송함
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을 보내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시설에 보낼 공문 작성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FGI 참여자 섭외를 위한 공문 발송 요청함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설방문을 위한 2차 후보에 섭외를 위한 공문 발송 요청함
7.27-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가정 3곳에서 아동 5명, 보호자(시설의 원장) 1명, 총 3명 섭외함(지방의 공동생활가정 아동 2명, 수도권 공동생활가정 아동 1명, 지방의 공동생활가정 아동 2명) • 공문 발송한 시설에 시설방문 및 FGI 참여할 아동 및 보호자 2차 섭외 요청 • 지방 아동일시보호시설 3곳의 보호자 3명 섭외함 • 지방 아동일시보호시설 2곳 현지조사 일정 조율함 • 그 외 시설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아동 2차 학대 가능성 우려, 아동보호 목적으로 노출 금지, 정신 장애 있는 아동이 다수여서 의사소통 어려움 등의 사유로 거절함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한 시설에서 서울시청 허락을 받은 후 다시 상의하자고 연락 • 한 일시보호시설에서 아동 2명, 보호자 1명 섭외
8.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청 담당관에 공문 발송 요청 • 서울시청에서 시설 방문 승인 • 서울의 한 시설 방문일정 확인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섭외로 실무자/전문가 그룹 섭외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 수도권의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 섭외 취소함 • 취소 사유는 아동의 2차 학대 가능성 우려

일시	진행 내용
8.8-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섭외 요청할 때 내부 논의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어려웠던 기관들에 아동 및 보호자 인터뷰 참여를 3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함 • 지방의 아동일시보호시설 두 곳 현지조사 취소됨 • 취소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외부인 출입금지 • 섭외된 보호자 그룹 인터뷰 일정 조율함 •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의 아동 3명, 보호자 2명 섭외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공동생활가정(P그룹홈) 시설방문 및 아동 2명과 보호자(시설 운영자) 인터뷰 진행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가정 아동 2명 인터뷰 일정 취소됨 • 취소 사유는 당일 아이들이 인터뷰 거부했다고 함 • 또 한 곳의 일시보호시설 섭외 취소됨. 사유는 업무 일정상 어렵다고 함
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아동 1명 정서불안증세로 인터뷰 취소함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D양육시설 방문 • 시설의 과장 인터뷰 실시
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Y그룹홈 시설 방문 및 아동 2명과 보호자(시설 운영자) 인터뷰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전문가 6명 온라인 줌을 통한 FGI 실시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 1명, 보호자 1명 온라인 인터뷰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동의 가출, 인터뷰 거절로 진행되지 못함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E양육시설 방문 • 아동과 보호자(시설장), 시설관계자(사무국장) 인터뷰 실시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전문가 6명 온라인 줌을 통한 2차 FGI 실시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거주 원가정 복귀 사례와 친모 인터뷰 실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인터뷰에서 다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4〉 아동과 보호자 대상 인터뷰 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분리가 이루어진 배경(왜 분리되었는지?) 2. 분리보호 결정과정에 당사자(아동, 부모)가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어떻게 참여했는지? 3. 아동의 분리 결정에 대한 안내나 설명 등을 들었는지? 4. 분리보호 조치 과정에 대해 / 분리 이후의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5. 아동 분리 이후 아동을 어디에서 보호할지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6. 분리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7.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족 중 누구와 만났고, 누구를 만나지 못했는지? 8. 분리 이후 아동은 가족 중 어떤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었고, 어떤 가족과의 관계는 유지되지 않았는지? 9.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족을 만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10.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11. 분리보호 조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 느낌을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12. 분리보호 조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걱정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13. 분리보호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14. 분리보호로 인해 도움이 된 점 /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15. 분리 이후의 과정은 어땠는지?
16. 현재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곳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아동, 가족)의 참여가 있었는지?
17. 현재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곳의 환경 등은 어떤 곳이며 지내기에 어떤지?
18. 현재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곳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19. 현재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곳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20.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점, 가장 걱정이 되는 점?
21. 아동이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2.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언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23.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어떤 도움(지원)을 받고 있는지?
24. 현재 보호받고 있는 곳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지원)은 무엇인지?
25.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어떤 도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26. (부모에게)분리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아동의 부모가 갖는 의무, 권리, 역할에 관해 들어보았는지, 들어보았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27. (부모에게)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본인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2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5〉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보호 환경 파악을 위한 질문

1. 귀 시설은 개인 시설인지, 법인 시설인지? 법인이라면 어떤 법인이며 법인 산하에 어떤 시설이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2. 귀 시설(법인시설이라면 법인에 대해서도)의 연혁(최초 설립일, 설립과정, 그동안의 간략한 역사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3. 귀 시설의 운영자(시설장)는 어떤 분이시고, 종교적 배경, 운영철학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귀 시설이 학대 피해아동보호시설로 운영되어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처음부터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되었는지?)
5. 귀 시설은 학대 피해아동만 보호하고 있는지요? 학대 피해아동 이외의 아동도 보호하고 있다면 어떤 아동들인지요?

6. 현재 보호하고 계신 아이들은 몇 명이며 어떤 아이들인가요? ※ 성별, 나이, 학년(재학 중인 경우)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합니다.
 7.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학대를 당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합니다.
 8.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지원과 서비스를 받는지요? ※ 학대받은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어떤 지원과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파악합니다.
 9.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외 보호체계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주로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지요?
 10.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외 보호체계를 결정할 때 아동최선의 이익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11. 학대 피해아동이 시설에 처음 오게 되면 아동은 보통 어떤 상태인지요?
 12. 학대 피해아동이 처음 시설에 오면 시설에서는 아동에게 어떤 조치(제공되는 물리적 환경, 제공되는 서비스 등)를 하나요?
 13. 학대 피해아동이 처음 입소한 이후 시설에서 지내면서 보통 어떤 변화를 보이나요?
 14.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입장에서 학대 피해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15. 아이들은 시설장과 종사자를 부를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르나요?
 16. 귀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자기가 살던 집이나 지역이 가까운 편인가요? 먼 편인가요?
 17. 귀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형제나 자매가 있을 경우 얼마나 자주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나요?
 18. 귀 시설에서 지내는 학대 피해아동은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누구와 얼마나 접촉(전화통화 또는 가정방문이나 만남 등) 하나요?
 19. 귀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20. 귀 시설은 학대 피해아동이 원가정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21.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 분리, 가정외 보호, 가정으로의 복귀 등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마지막으로 시설을 라운딩 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시설 내외부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녹음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전문가 FGI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와 2차로 진행된 실무자/전문가 FGI에 참여한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표 4-6〉 1차 실무자/전문가 FGI 참여자

번호	소속	본 보고서에서의 호칭
1	광역시 사무관	K
2	학대피해아동쉼터 대표	W
3	아동학대특별수사팀 경위	A
4	지자체 아동보호팀 팀장	U
5	아동보호전문기관 전 관장	I
6	법무법인 변호사	S

〈표 4-7〉 2차 실무자/전문가 FGI 참여자

번호	소속	본 보고서에서의 호칭
1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H
2	대학의 사회복지학부 교수	R
3	지자체의 아동보호팀장	N
4	공동생활가정 대표	Y
5	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J224)
6	아동보호 관련 기관 주무관	C

인터뷰에서 다룬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8〉 실무자/전문가 FGI에서 다룬 질문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분리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파악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동분리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과 한계(법률적, 실천적)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외 보호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법률적, 실천적)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복귀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한계(법률적, 실천적)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4) 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J는 이 연구에서 인터뷰한 가정복귀 사례 N이 지냈던 그룹홈의 종사자였다. J는 가정외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진술했다.

5. 학대받은 아동의 분리제에 있어 주요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분리조치 과정에서 (실무자가)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요?
7.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외 보호체계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주로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지요?
8.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외 보호체계를 결정할 때 아동최선의 이익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가정외 보호체계가 아동이 살아온 지역과 가까운지, 아동이 가족과 접촉하기 좋은 조건인지, 형제자매가 함께 분리되었을 경우 가까운 지역에서 함께 보호되는지 등을 고려하는지 등.
9.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제공(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10. 분리조치 이후 아동이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는지요?
11. 분리조치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분리조치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외 보호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외 보호에 있어서의 실천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법률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실천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 아동의 분리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 아동의 분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주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요?
19.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뤄진 내용 이외에 현장에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및 격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전문가 FGI는 2차로 추가 진행하였는데²²⁵⁾, 사회복지 분야 교수 2명과 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서울시청 소속 및 서울시의 구청에 소속된 아동보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2차 FGI에서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의견을 주로 청취하였다.

225) 연구계획서 상 실무자/전문가 FGI는 6명 한 그룹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분리 경험 이 있는 아동과 보호자를 섭외하고 인터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아동과 보호자 인터뷰 대상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대신 실무자/전문가 6명으로 한 집단을 더 구성하여 FGI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2) 시설 방문 조사자료의 분석

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은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체계가 결정된다. 학대의 심각성과 아동이 갖는 심리·정서·행동 등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아동의 보호체계가 결정되는데²²⁶⁾, 본 연구에서는 분리 이후 아동이 보호되는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을 방문하여 아동의 보호환경을 파악하였다.

〈표 4-9〉 방문 조사한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

시설유형	방문한 시설	비고
공동생활가정	P그룹홈 - 지방 중소 도시에 소재 - 8명의 남자 아동보호	- 아동 2명 인터뷰 - 보호자(시설장) 인터뷰
공동생활가정	Y그룹홈 - 수도권 지역에 소재 - 4명의 남자 아동보호	- 보호자(시설장) 인터뷰
아동양육시설	D양육시설 - 서울 소재 - 34명의 남녀 아동보호	- 과장 인터뷰
	E양육시설 - 서울 소재 - 39명의 남녀 아동보호	- 아동 1명 인터뷰 - 보호자(시설장 및 사무국장) 인터뷰

(1) P그룹홈

P그룹홈은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 주택으로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평범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룹홈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독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어 외향 상 아동보호 시설이라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 실내는 아동복지시설 규정에 따라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

226)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가정의 보호를 할 때에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동의 상황과 아동의 의견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보호체계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동보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동에게 바람직한 보호체계에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동의 의사나 아동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 사무를 보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화재시 대피방법’이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함’ 그리고 주방의 냉장고 문에 식단 등이 비치되어 있어 일반 가정과 구분되는 시설로서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실내는 햇빛이 밝게 들어오고 아동이 사용하는 방과 거실 등이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어 일반 가정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 아동들은 태권도 등 개별적인 일정에 따라 방과 후 활동을 한다. 종사자 역시 일반 가정처럼 아동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사를 준비하고 아동의 스케줄에 따라 태권도장까지 아동을 바래다 주는 등 뒷바라지를 한다.

〈표 4-10〉 P그룹홈의 특성

최초 설립일	2010년 1월
그룹홈 소유	시설장 개인 소유 ※ 처음에는 기업 후원으로 무상 임대받았다가 기업에 반납하고 현재 주택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매입함
지역환경	일반 주택가의 독립주택
그룹홈 특성	남자 아동 그룹홈, 총 8명 보호 중 ※ 정원 7명이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장애아동 1명 추가로 보호중임
아동 현황과 실내 구조	1층, 방 4개(사무실 1, 아동 방 3개) - 초3, 초4, 초5(지적장애) 아동이 각 1개의 방 사용 2층, 방 3개 - 중2, 고1(형제가 방 하나 함께 사용) - 20세(대1) 방 하나 사용 - 21세(대학 휴학, 취업 준비), 21세(군 제대 후 취업 준비) 두 사람이 방 하나 함께 사용
종사자 현황	시설장 1명, 보육사 3명

최초 설립일은 2010년 1월로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다. 처음에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어 무상으로 임대한 집을 사용하다가 기업에서 요구하여 반납하고 현재의 집을 시설장이 매입하여 살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1명의 시설장과 3명의 보육사가 8명의 남자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 중인 아동은 총 8명으로 공동생활 가정의 보호 정원인 7명보다 1명을 더 보호하고 있다. 보호 중인 아동 중에 한 명이 지적 장애가 있는데, 이 아동을 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할 수 없어 지자체의 요청으로 정원보다 한 명을 초과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실내 구조는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층에는 저연령의 아동들이, 윗층에는 고

연령의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다. 1층에 있는 4개의 방 중에 1개는 사무실 겸 종사자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초등학교 아동 3명이 각각 한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는데,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 형제가 하나의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대학교 1학년인 20세 아동이 하나의 방을, 나머지 하나의 방은 21세 동갑인 두 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Y그룹홈

〈표 4-11〉 Y그룹홈의 특성

최초 설립일	2008년 1월
그룹홈 소유	시설장 개인 소유 ※ 처음부터 시설장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준비함
지역환경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
그룹홈 특성	남자 아동 그룹홈, 총 4명 보호 중
아동 현황과 실내 구조	방 4개 - 방1: 사무실, 시설장이 7세 아동과 함께 사용 - 방2: 13세(중2) - 방3: 18세(대학교 2학년) - 방4: 22세(대학교 2학년)
종사자 현황	- 시설장 1명 - 보육사 2명: 8시30분 출근, 7시30분 퇴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원장이 근무

Y그룹홈은 수도권에 위치한 남자 아동 그룹홈으로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총 4명의 남자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P그룹홈과 같이 Y그룹홈 역시 아파트라는 일반적인 주택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시설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실내 구조 역시 공동생활가정 규정 상의 표식 외에는 일반적인 가정과 차이가 없다. 현 시설장은 다른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아동을 돌보다가 2007년에 독립적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의 아파트를 자비로 구입하였다. 베란다를 개조한 방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방이 있으며 1개의 방에서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시설장이 7세의 아동과 함께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의 방은 13세(중2), 18세(대학 2학년), 22세(대학 2학년)

아동이 각각 사용하고 있다. 2명의 보육사는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저녁 7시 30분까지 교대로 출근을 하여 아동을 돌보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시설장이 아동을 돌본다. 보육사가 퇴근을 한 저녁에는 시설장이 아동을 돌본다.

(3) D양육시설

D양육시설은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이 주로 보호되고 있으며 가장 어린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이다. 약 1년 전에는 80명에서 9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었으나 아동의 수가 줄어 2022년 8월 현재 34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2〉 D양육시설의 직원 현황

계	센터장	국장	상담 지도원	임상 심리 상담원	생활 복지사 (과장)	생활 지도원 (사회 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기능직
53	1	1	8	2	2	23	1	1	2	12

※ D양육시설 홈페이지에서 발췌

D양육시설의 건물은 아래에 제시된 표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활관은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초등학교 아동만 생활하는 공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남자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여자 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공간의 구분은 아동의 특성이나 보호되는 아동의 수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부득이 아동을 나눈 것이다. 여자 아동들을 나이 등 특성에 따라 별도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건물의 구조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4-13〉 D양육시설의 시설 현황

건물명		용도
본관	기타	체육실 외
	5층	세탁실 외
	4층	남자 아동 숙실, 여자아동 숙실, 휴게실
	3층	남자 중고등생 숙실, 격리시 사용 숙실, 식당, 주발, 영양사실 외
	2층	사무실, 학습실, 미술실, 세미나실, 놀이상담실, 모래놀이상담실, 관찰실, 의무실, 매점
	1층	사무실, 심리검사실, 상담실 외
	지하	모래놀이 상담실, 놀이상담실, 음악·컴퓨터 사용 공간
별관	2층	학습실, 키즈존, 책방, 휴게실
	1층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사무실, 모래놀이실, 놀이상담실 외
	지하	플레이존, 모래놀이실, 제빵실 외
기타	강당, 영사실, 목공실 외	

※ D양육시설 홈페이지에서 발췌

생활관은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초등학교 아동만 생활하는 공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남자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여자 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공간의 구분은 아동의 특성이나 보호되는 아동의 수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부득이 아동을 나눈 것이다. 여자 아동들을 나이 등 특성에 따라 별도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건물의 구조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 각지에서 아동이 입소하므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멀리 떨어져 보호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의 자발적 선택이나 동의하에 입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동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에 오는 건 괜찮은데 원래 다니던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아동에 대해 아동이 살던 지역에서 시설을 찾도록 권유하였다고 한다.

규칙상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외출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동은 다른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조율한다. 아동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를 원하는 아동은 사전에 담당 상담원에게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통화하고 싶은지를 얘기하면 아동과의 조율을 통해 기관의 유선전화를 사용

하여 통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PC 사용 역시 학년이나 성별에 따라 따로 시간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이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년에 따라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고, 아동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밀착하여 밀착 지도를 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아동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나간다.

(4) E양육시설

E양육시설은 외국의 선교사 가족이 설립한 시설로서 여자 아동을 보호하는 양육시설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 39명 가운데 반이 넘는 24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주로 저연령층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미취학의 영유아 아동들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소된 아동들이 많다.

〈표 4-14〉 E양육시설의 아동 현황

정원(명)	현원(명)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42	39	24	0	1	1	2	2	3	9	2	1	0	3	1	1	1	3

※ 2022년 8월 1일 기준
 ※ E양육시설 홈페이지에서 발췌

아동을 돌보는 직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5〉 E양육시설의 직원 현황

(단위: 명)

계	원장	사무국장	자립전담요원	생활복지사	사무원	영양사	임상심리상담원	간호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인
48	1	1	1	2	1	1	1	1	35	2	1	1

※ 2022년 8월 1일 기준
 ※ E양육시설 홈페이지에서 발췌

시설이 비교적 큰 규모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주택과 뚜렷이 구별되며 이곳에서 보호받는 아동들은 친구들과 다른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친구들과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중학생 이상이 되면 핸드폰을 마련해 주는데, 연고자가 있는 아동은 법적 보호자가 따로 있어 핸드폰이나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동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은 2세까지 2명 당 한 명, 3세에서 6세까지는 5명 당 1명, 6세 이상은 7명당 1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이 정도 숫자의 생활지도원은 아이들의 생활을 뒷바라지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하는 등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영유아 아동들에게 애착관계가 중요한데 아동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E양육시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4-16〉 E양육시설의 시설 구조

지상 3층 건물	아동 숙소	3동 3층
		2동 3층
		1동 3층
지상 2층 건물	아동 숙소	3동 2층
		2동 2층
		1동 2층
		자립체험실
지상 1층 건물	사무실 외	사무실 외 21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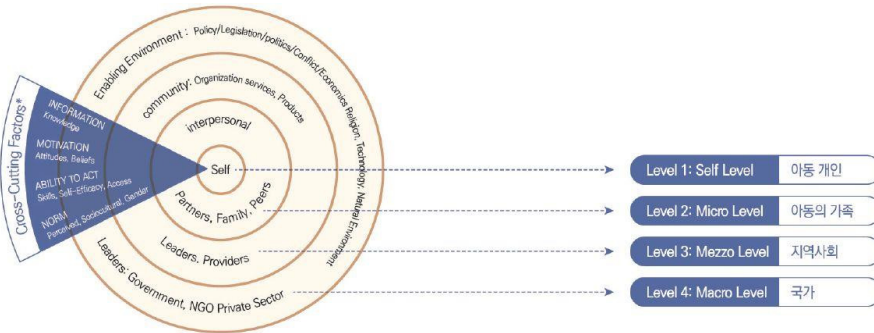
※ E양육시설 홈페이지에서 발췌

3)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아동, 부모/보호자, 실무자/전문가)과 자료의 분석

아동이 학대를 당하여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면 분리 이후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의 틀 안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연령이 도래하여 자립의 경로를

밝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아동 개인의 경험 영역인 개인 체계, 아동의 부모 등 가족의 영역인 가족 체계,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 체계, 그리고 가장 큰 틀에서 아동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제도 등 국가 체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4가지의 체계가 체계 내적인 상호작용 및 체계와 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학대로 인해 분리를 경험하는 아동을 4가지의 체계로 분석하게 되면 아동의 경험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태체계 개념을 활용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²²⁷⁾

[그림 4-1] 생태체계 분석틀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는 아동보호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제15조 제①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6가지의 보호조치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생태체계 관점의 4가지 분석틀에 적용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7) 생태체계모델은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가 주장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현주와 동료들의 연구(2021) 「아동보호체계 운영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채용하였다.

〈표 4-17〉 생태체계 분석들의 체계수준과 적용 근거

체계수준	적용 근거
아동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제2조 제②항: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복지법」제2조 제③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제2조 제④항: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제15조 제①항 보호조치 1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 - 「아동복지법」제15조 제①항 보호조치 2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지역사회	제15조 제①항 보호조치 3~6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보호치료시설 등에서의 보호 또는 입양'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법과 제도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영역 - 친권 제한이나 정지,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 외국 국적 아동과 가족, 다문화 가족, 후견인, 소송 등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

출처: 강현주 외(2021)의 내용을 재구성함.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아동과 보호자는 각각 4명씩이며(228) 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 아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4-18〉 인터뷰 대상 분리 경험 아동

아동 구분	아동 특성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4학년, 남자 - P그룹홈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룹홈 보호기간은 약 3년 5개월 - 미혼모인 친모가 조현병, 암 등을 앓으면서 아동을 못 키우겠다고 주민센터에 요청해 가정 분리됨 - 호적 상 친부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친부는 친권이 없음 - 과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함

228) 분리를 경험한 아동과 보호자를 각각 4명씩 인터뷰하였는데, 그중에 아동 3명은 가정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으로서 원가정과의 접촉이 어려워 친부모 대신 보호시설의 보호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또 1명은 가정외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 복귀한 사례로서 원가정 복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정외 보호 중인 아동 3명과 별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아동 구분	아동 특성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5학년, 남자 - P그룹홈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룹홈 보호기간은 약 1년 6개월 - 친모의 방임, 정서학대, 친부의 폭력 등으로 아보전에서 분리 결정함 - 아동에게 지적 장애 있으며, 친모도 지적 장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동은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지만 표현이 정확하지 않음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5학년, 여자 - E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 조현병이 있는 친모가 약 5년 전에 K양과 동생을 교회에 유기하여 두 아동이 아동복지 센터에 임시보호되다가 현 시설에 입소함 - 친부는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나 지방에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아동을 보호할 여건이 되지 않음 - 아동은 의사표현을 잘 하고 운동, 춤 등을 좋아하는 등 적극적인 편이며, 동생과 친부를 걱정하는 모습임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4학년, 만 23세, 여자 - 그룹홈에서 8년간 거주하다가 22세에 원가정 복귀 - 원가정 복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설 거주 아동 3명과는 별도로 분석하였음

아동의 가정외 분리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아동의 경험은 분리 이전의 학대 경험, 학대를 당한 후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 분리 이후 가정외 보호체계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경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원가정 복귀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4명의 아동에 대해 3명의 경험과 1명의 경험을 별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3명은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과의 교섭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원가정 복귀한 1명의 아동은 나머지 3명의 아동과 살아온 배경이나 분리된 이유와 과정에 차이²²⁹⁾가 있었기 때문이다. 3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분리 이전의 학대 경험, 학대를 당한 후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 분리 이후 가정외 보호의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북한에서 출생한 1명의 가정복귀 사례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북한 거주 시기, 남한 입국과 엄마와의 갈등, 그룹홈 입소, 가정복귀

229) 원가정 복귀한 1명의 아동은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부터 방임과 신체학대 등을 경험하다가 먼저 남한으로 들어온 모친을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모친과 (학대라기보다는) 심한 갈등을 겪다가 모친과 산 지 2개월 만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게 되었고, 8년 동안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 모친과 다시 합쳤다. 학대로 분리되어 시설에서 지내는 다른 아동과는 다른 배경이 있고, 그러나 원가정 복귀의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아 이 사례는 3명 아동의 사례와 별도로 다루었다.

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아동 개인 수준, 아동의 가족 수준, 지역사회 수준, 국가 수준으로 나누어 삶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가정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3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분리 이전과 분리 당시, 분리 이후라는 3단계의 시간적 흐름을 생태체계 관점의 4가지 체계와 교차시켜 4 x 3의 2차원 교차표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다음은 생태체계 분석틀과 시간적 순서에 따른 학대와 관련된 이슈를 교차시켜 만든 표이다.

〈표 4-19〉 생태체계 분석틀의 체계수준과 시간 구분에 따른 교차표

시간 구분 체계수준	분리 이전	분리 당시	분리 이후
아동 개인	분리 이전 아동의 학대 경험	아동이 분리될 때의 경험	분리 이후 보호체계에서의 아동 경험
아동의 가족	분리 이전 학대와 관련한 가족 상황	아동분리와 관련된 가족의 경험과 상황	아동 분리 이후 가족의 경험과 상황
지역사회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지자체)의 노력	아동분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지자체)의 개입과 절차	아동 분리 이후 지역사회(지자체)의 개입과 절차
국가	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제도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과 제도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외 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과 제도

이러한 교차표를 통해 학대 및 분리와 관련한 아동의 경험을 2차원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보다 심층적 이해를 할 수 있으며, 4 x 3 교차표의 12개 각 셀에 들어갈 핵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지속적 비교분석을 하였다. 다음은 3가지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4가지 체계로부터 도출한 핵심 주제들이다.

(1) 분리 이전

① 아동 개인 수준

- 부 또는 모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함
 - (P그룹홈, O아동) 조현병을 심하게 앓던 아동의 친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잔소리를 심하게 하였으며,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동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가학행위를 하였음

“(보호자) 학교 안 보내고, 아이를 때리고, 아이를 학교 끌고 온 천지를 다 데리고 다니고, 데리고 교회에도 가니까 4월 달에 왔는데 학교를 간 날짜가 며칠 안되는거예요.”

- (P그룹홈, S아동)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인 친부가 가정폭력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 친모와 누나와 함께 살다가 친모의 방임과 정서학대 등으로 그룹홈에 입소하였음

“(보호자) 아버는 (가정폭력으로) 교도소 가고. 엄마랑 누나랑 ○○이랑 세 명 살다가 엄마의 방임. (중략) 아버지는 이제 집에서 알코올 거의 중독일 거예요. (중략) 엄마가 밤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진짜 쓰레기장이고. 아이들 먹을 거는 없고. 이제 시켜 먹거나 던져 놓고...”

- (E양육시설, K아동) 조현병 환자인 아동의 친모는 쓰레기 더미에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있을 정도로 아동을 돌보지 않았으며 집을 나가면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 아동과 아동의 동생을 교회에 유기하였음

“(보호자)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하자면, 엄마가 스키조, 그러니까 정신분열 조현병 환자이고요, 보니까 2014년에 한 차례 아동 방임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중략)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17년 6월이면 동생이 한 돌 지난 아이를, 두 자매를 교회에 놔두고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 (D양육시설, C과장) 쓰레기 집이라고 하는, 뉴스에 나올 법한 아이들이 시설에 많이 입소함

② 아동의 가족 수준

○ 심각한 질환과 파탄난 가족관계

- (P그룹홈, O아동) 친모는 심각한 질환(조현병, 뇌암, 유방암)을 앓았으며, 아이를 팬티도 입히지 않은 채 짬질방을 가는 등 증상이 심각했고 친절과도 의절하고 아동의 친부와도 거의 의절한 상태임

“(보호자) 집에 있는 애 팬티까지 다 버려버리고 애 데리고 짬질방에 간다든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조현병의 증상으로 약간 거짓말로 미쳤으니까요.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친절하고도 의절하고 영민이 생부하고도 의절하시고...”, 그러니까 미혼모로 낳아서, 그녀가 이혼하고 ○○이 아버를 만나서 얘기를 낳아서...”

- (P그룹홈, S아동) 자살충동이 있는 친부는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살시도를 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는 아내(아동의 친모)가 바람이 나자 딸(아동의

누나)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아내를 불러들이고, 자녀들 앞에서 부부관계를 하는 등 가족관계가 파탄난 모습을 보임

“(보호자) 애한테는 아빠가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얘기하고. 아빠가 이제 자살하려는 거. 애 태어날 때 전부터 아마 있었어요. (중략) 엄마가 바람도 살짝 나고 그래서 아빠는 그걸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딸의 목에 칼을 대고 전화기로 빨리 오라 그래. (중략) 목에 칼을 대고. 이제 아빠도 아는 거죠. 자기가 병도 있고 엄마가 살짝 바람 피운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게 굉장히 누적됐던 거죠.”

○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 간 사랑은 남아 있음

- (P그룹홈, S아동) 친부가 술을 마시고 병을 깨뜨려 피가 나는 모습을 기억하며 “아빠가 다쳐가지고 엄청 많이 걱정”함

“(보호자) 거기서 살 때 아빠는. 이제 한쪽은 술 먹고 있었었는데 한 병은 머리에 박고 한 병은 ... 한 명은 거기에서 바닥에 깨트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피 나가지고 저희들끼리만 있다가 또 아빠가 ... (중략) 아빠가 다쳐가지고 엄청 많이 걱정을 좀 했거든요.”

- (E양육시설, K아동) 조현병으로 아동을 유기할 정도인 모친이지만 정신이 들 때는 아동을 애타게 찾는 등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음

“(보호자) 그래서 아동 모하고 분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또 아동 모가 또 정신이 차려지면 아이를 그렇게 또 애타게 찾았나 봐요.”

- (E양육시설, K아동) 아내의 조현병과 자녀의 양육시설 입소, 지방으로 떠도는 불안정한 직업이지만 성실하며 자녀를 잘 돌보고 애정이 많은 아빠

“(보호자) 그런데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지방에 있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중략) 다행히 이 아빠는 굉장히 성실하게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③ 지역사회 수준

○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 (P그룹홈, O아동) 친모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수차례 신고된 적이 있어 주민센터에서는 아동의 가족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

“(보호자)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그 히스토리를 다 아는 거죠. ○○이 엄마가 못 키우겠다. 이러니까 뭐 ‘잘됐다. 이런 데가 있으니까 소개시켜줄게 아동을 입소시켜라 (이렇게 된 거지요)’”

④ 국가 수준

- 법의 허점을 노림 - 아동을 이용해 수급비를 받고자 함
 - (P그룹홈, O아동)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친부에게 호적을 못 올리게 되어 친모의 호적에 올라가고 친모는 아동을 이용해 수급비를 받아 개인 유흥비로 쓰고자 함

“(보호자) 미혼모로 낳아서, 그니까 이혼하고 ○○이 아빠를 만나서, 애기를 낳아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미혼모의 자녀는) 친부한테 못 올리니까, 이 엄마가 자기한테 올려서, 이제 수급비 받고, 아바한테 생활비 받고, 이래서 이제 돈을 다 쓰는 거죠.”

“(보호자) 아빠는 법적인 것이 전혀 없었어요.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밖에 안 됐죠. 아버지는 아버지 호적대로 있고 엄마는 애를 낳아서 자기 밑에 넣었으니까요. 미혼모니까요.”

(2) 분리 당시

① 아동 개인 수준

- 기대도 희망도 없고, 슬프고 거부감이 듦
 - (P그룹홈, O아동) 아동이 분리되어 그룹홈에 처음 왔을 때 아동은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어 보였음

“(보호자)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하죠? 낙담조차 안 하고 그것을 넘어서 아무런, 애한테는 생각이 없고 기대도 없고요. 자포자기요. 내가 여기서 어떠한 거부를 해도 나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거다, 라는 것을 이미 벌써 우리 ○○이 알았을 거예요. 그전에 엄마한테 무수히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 (P그룹홈, S아동) 아동이 분리되어 그룹홈에 처음 왔을 때 엄마가 자기를 그룹홈에 맡겼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컸으며 많이 울었음

“(보호자) 그때 사학년이었는데 아기처럼 울었다는 거지...”
- 자기를 학대한 모친을 걱정함
 - (E양육시설, K아동) 조현병으로 집을 나간 엄마를 못 보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엄마를 걱정하고 보고싶어함

“○○는 처음에 와서 엄마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엄마를 못 보고 온 거잖아요. 분리가 되고 했으니까. '엄마가 집에 왔을까요?', '엄마가 집에 왔는데 우리가 없으면 엄마가 슬퍼

하지 않을까요?’ 엄마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한동안이 지나 가지고 애가 1학년이 됐어요. 저도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힘든데, 학교 갔다오면 이제 제 방에 오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요, 원장님...’ ‘그래, 왜?’ ‘근데 엄마가 보고 싶어요.’”

② 아동의 가족 수준

- 친모가 아동의 분리를 요청하고 지자체에서 아동을 바로 분리함
 - (P그룹홈, O아동)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되기 이전,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동의 친모가 주민센터에 아동을 못 키우겠다고 하자, 이미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지자체에서 아동을 분리하기로 바로 결정하고 임의로 그룹홈에 배치함

“(보호자) 주민센터에서는 이 엄마가 병명 같은 거, 그리고 기초 수급이었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수차례 됐었어요. (중략) 학교 안 보내고, 아이를 때리고, 아이를 학교 끌고 온 천지를 다 데리고 다니고, 데리고 교회에도 가니까, 4월 달에 왔는데 학교를 간 날짜가 며칠 안 되는거예요.”
 - 심각한 방임과 정서학대로 아보전에 의해 분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짐
 - (P그룹홈, S아동) 아동의 친모는 자녀들만 집에 두고 밤에 들어오지 않고 집안은 쓰레기장이 되고, 집에 먹을 것이 없는 등 방임과 정서학대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다가 분리 결정이 이루어짐

“(보호자) 학대죠. 정서 학대. 엄마가 밤에 집에 안 들어오고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된 거죠.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안 된 거죠. 아보전에서 관리를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분리시키자. 최종.”

③ 지역사회 수준

-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 아동의 의사 반영되지 않음
 - (P그룹홈, O아동) 아동보호체계 개편 전인 3년 전에 분리된 아동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그룹홈에 전화를 하여 자리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하니 배치하였음

“(보호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법이 원래는 지자체에서 아동을 그룹홈으로 배당을 이렇게 배당 그러면 참 참 이상한데, 이렇게 애를 배치시키는데, 이제 주민센터에서 저희 연락처를 알고 ‘이런 아동이 있으니까 자리가 있냐?’ 이래서 그때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아이를 받고...”

- (E양육시설, L원장) 아동보호체계 개편 이전이었던 5년 전, 아동이 양육 시설에 입소할 때 아동이나 부모에게 의사를 물어본 적 없이 시설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시설배정이 되었음

“(의사결정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저희들은 거의 배정해 주는 대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여한 적은 없어요.”

- (E양육시설, L원장) 아동을 보호할 시설은 아동이 입소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가정 배경이나 분리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 없고 아동의 가정외 보호체계 결정에 대해서도 설명은 없었음

“아동 카드에 보니까 '본인 의사를 확인을 하니 동의를 하여 시설 보호로 결정함' 이 문구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구로만 확인을 했죠.”

④ 국가 수준

- 인프라의 부족으로 규정을 위배하여 아동을 보호함

- (P그룹홈, S아동) 아동을 보호할 곳이 없어 처음에는 성인 장애인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였다가 이진 아니라고 판단한 지자체에서 하루 만에 정원이 다 차 여력이 없는 그룹홈에 연락하여 아동을 입소시킴

“(보호자) (그룹홈) 정원에 ○○이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 ○이가 아동 장애인인데, 그런데 지금 어른 장애인 시설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종락)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넘었는데 좀 (아이들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의논해서 ‘오케이 와라’ 어른들 장애인 시설에 있으면 재가, 또 다른 학대죠.”

- 담당자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정보에 편차가 발생함

- (E양육시설, L원장) 아동을 어떤 사람이 담당하는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양이 크게 달라짐

“어떤 사람이 담당하는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양이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히스토리를 아주 세세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누구이며 연락처며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분명히 같이 조사를 나가고 했었을 텐데 어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인지 그것도 안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또 그 담당자가 어떻게 아동 카드를 기술했는가에 따라서도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또 변수가 또 되더라고요.”

- (D양육시설, C과장) 지자체의 담당자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음

“저희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정말 비슷한 시기에 와서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아이는 주무관님이 노력을 해 주시니까 빨리 가요. (중략) 어떤 구청은 연락도 없으시고, (중략) 담당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업무가 조금 좌지우지 된다는 느낌...”

(3) 분리 이후

① 아동 개인 수준

○ 원래 살던 환경으로부터 분리됨

- (D양육시설, C과장) 원래 살던 가정, 학교, 친구, 친인척들과 떨어지게 되어 아이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음

“시설에 오는 건 괜찮은데 학교를 원래 학교에 다니고 싶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저희가 아니라 그쪽 지역 인근의 다른 시설을 찾아보시라고 권유를 드린다는 거...”

○ 분리된 이후에도 학대에 시달림

- (P그룹홈, S아동)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남

“(보호자) ○○이를 보면 밤에 자다가 조그만 소리가 나면 일어나요. (중략)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면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니깐 애가 벌떡벌떡 깨는 거야.”

○ 생활의 기본적인 것부터 도움이 필요함

- (D양육시설, C과장) 방임으로 입소한 아동들 중에는 목욕하는 방법이나 자기 물건 관리하는 방법 등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함

“방임을 통해 온 친구들 중에서는 목욕하는 방법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중략) 자기 사물함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 물건을 관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개입을 하고...”

○ 보호체계 편입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 (P그룹홈, O아동) 그룹홈에 온 이후 아동은 건강해지고 표현도 잘하고 밝아지는 등 큰 폭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보호자) 애가 밝아졌으니까요. 우리 ○○이는 제일 처음에 올 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어떠한 반응에도요. 왜냐면 엄마 조현병의 무수한 잔소리와 폭력에 의해서고요. 애는 학대를 당할 만큼 당해서 무관심한 거죠. (중략) 근데 엄청 많이 바뀌었죠. 건강하고요. (중략) 똑똑해지고요.”

- (P그룹홈, O아동) 지금은 잘 놀고 말도 잘 한다고 스스로 표현함
 “(지금은 어때?) 잘 놀아요. 말도 잘해요.”
- (P그룹홈, S아동) 학교에서 사회를 열심히 하고 수학과 미술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표현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함
 “제가 학교에서 사회를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중략) 사회랑 수학이랑 그거를. 저것도 미술을 또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맨날 만들기 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 (P그룹홈, S아동) 스스로가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하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표현함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고. (중략) 전부 다 걱정하는 마음은 저것도 알고 있어요.”
- (P그룹홈, S아동) 아동은 지적 장애가 있고 말더듬이 있으나 언어치료를 받으며 나아지고 있음
 “(보호자) 애 태어날 때 전부터 아마 (지적장애가) 있었어요. 일종의 그것도 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를 보면 지적장애가 심한 편이 나왔어요. (중략)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극을 안 줘가지고 애가 발달을 못 했구나라는 생각….”
- 아픈 기억은 말하고 싶어하지 않음
 - (P그룹홈, O아동) 아동은 엄마에 대한 기억, 가족과의 분리에 대한 기억 등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친모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엄마는요, 기억이 안 나요.”
- 부모를 걱정하고 좋은 경험을 기억함
 - (P그룹홈, S아동) 아빠가 폭력적이어서 아빠를 피해 살게 된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아빠가 자기를 잘 챙겨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음
 “아빠는 저한테는 잘 챙겨주시는데, 아빠가 이제 엄마랑 누나랑 같이 혼낼 때도 있고, 아니면 잘 살고 싶다고 … 막 이리저리 난리를 부려서 저도 좀 맨 처음에 난폭하다는 생각은 좀 안 들었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피해서 살게 된 거예요.”
 - (P그룹홈, O아동) 친부와 함께 놀러 다녀 온 좋은 기억을 하고 있으며 아빠를 만나고 오면 좋다고 하고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표현함

“아빠는요, 놀았어요, 계곡 가세요. (중략) (아빠를 만나면?) 좋아요. (중략) (뭐가 좋아?) 같이 있어서.”

- (P그룹홈, S아동)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난폭하고 폐렴에 걸리는 등의 아빠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아빠가 “엄청나게 걱정”된다고 함

“그런데 좀 아빠가 이제 또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까, 난폭해졌고 그리고 또 폐렴인지 아빠가 하도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중략) 아빠가 좀 되게 많이 피시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아빠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저가 알고 보니까 술이랑 담배랑 여러가지 많은 걸 피고, 먹고 이러니까, 제가 또 아빠가 엄청나게 지금도 걱정 중이에요.”

- (E양육시설, K아동) 집에 가고 싶어하고, 식구끼리 모여 살기를 간절히 바람

“우리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네 식구만, 우리 식구만. 옛날처럼 우리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 (E양육시설, K아동) 함께 지내고 있는 여동생을 잘 돌봐줌

“(보호자) 5살 차이가 나서 그런지 (동생을) 잘 챙기고요.”

- (E양육시설, K아동)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게 느껴지며, 좋은 게 있으면 아빠를 생각하고,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아빠가 걱정됨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걱정하는 게 뭔지 느껴져요.”

“그냥 엄마가 병원에 있으면 이제 저도 6학년이고 동생도 1학년 올라가면 학교 끝나고 동생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 되는데 아빠는 너무 걱정이 큰 것 같아요.”

“(보호자) 모든 게 아빠예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아빠' 어떨 때는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만큼 아빠하고의 그런 게 있어요.”

- (E양육시설, K아동) 자기를 학대한 엄마를 많이 생각하고 그리워함

“(보호자) 나들이를 나갔거나 할 때 예쁜 게 있고, 맛있는 게 있고 그러면 '다음에 엄마 만날 때 엄마 줘야지' 이렇게 챙겨요.”

- (D양육시설, C과장) 처음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학대했던 부모와 가족에 대한 마음이 생겨남
“‘엄마는 어떻게요?’, ‘엄마가 화가 풀렸으면 자기도 이제 좀 생각해 볼 마음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원하는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걸 들어준다고 한다면 내가 집에 갈 생각도 있다’라고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② 아동의 가족 수준

○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먼 길

- (P그룹홈, O아동) 아동이 그룹홈에서 지내다 원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친모는 기물을 부수고 아동은 구석에서 아무 반응 없이 앉아 있고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는 친부는 술만 먹었다고 함

“(보호자) 한 번씩 집에 가면 OO이는 구석에 처박혀서 그 태블릿하고, 아이가 아무 반응 없이 구석에 가 있고, 엄마는 모든 기물을 다 부시고 있고 하니까, OO이 아빠는 술만 먹으면 울면서 전화와요. 신세 한탄!”

- (P그룹홈, S아동) 아동이 원가정을 방문했을 때 친부의 자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걱정함

“(아빠가) 술 먹고 있었었는데 한 병은 머리에 박고 한 병은, 한 병은 거기에서 바닥에 깨트리 고, 그래서 엄청나게 피 나가지고, 저희들끼리만 있다가, (중략) 이제 집으로 갔다 오는데 제가 맨 처음에 아빠가 다쳐가지고 엄청 많이 걱정을 좀 했거든요.”

- (E양육시설, K아동) 친부와 자녀 모두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친모가 여전히 조현병을 앓고 있고, 친부는 지방에서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형편임

“(아이가) 저희집에 있는 지 한 1년쯤 지나니까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OO이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지금 데리고 가도 엄마는 여전히 (조현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고, 치료를 일단 제대로 안 받는데요. 그리고 자기도 직업이 일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좋겠다.”

○ 가족에게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

- (D양육시설, C과장) 시설에서 가정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으므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예전과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남

“가정에 돌아가면 사실은 처음이야 (중략) 좀 변화하고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지만, 돌아가면 아이가 원래 집에서 있었던 문제 행동들이 다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가정 환경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중략) 그러다 보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세요. ‘아니 선생님, 거기서는 잘 지냈다고 하던데 집에 오니까 똑같다, 웬 말이나?’ 이렇게. 사실 저희로서는 통제할 수가 없는 게 가정에서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양육 철학이라든지, 양육 방법은 저희가 코칭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저희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너무 원론적으로만 (하는 것 아닌가...)”

○ 희망을 향해 조금씩 나아감

- (P그룹홈, O아동) 친부는 아동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이나 명절 때에 1박 2일, 2박 3일 정도로 함께 지내고 있고, 아동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음

“(보호자) 아버를 전면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6개월간은 아파하고 외출만 한 번씩만 허용을 했습니다. (중략) 이제 아빠가 여름휴가 때 2박 3일 정도, 명절 때 1박 2일 정도 이렇게 아빠랑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하고도 관계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여름휴가 때 1박 2일로 저 ○○계곡에 갔다 왔다, 그래 추석 때도 또 만나고…”

- (E양육시설, K아동) 친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가정복귀 프로그램에서 약속을 어긴 적이 거의 없으며, 코로나로 시설 출입이 안 될 때엔 전화나 영상통화로 자녀들과 소통함

“(보호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가는 가정복귀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중략) 한 달에 한 번씩 원가정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집에 가서 매월 마지막 주말에 가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약속을 여태까지 거의 어긴 적이 없어요. 거의 데리고 갔고 코로나 때 한창 외부인 전혀 출입을 금하고 그럴 때는 전화 통화, 영상 통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했고, 아버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이 지지체계가 (되고) 있어요.”

③ 지역사회 수준

○ 시설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제한된 자유

- (D양육시설, C과장)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고 외출이 제한되는 등 제한이 있음

“(시설의) 규칙상으로 핸드폰 사용을 아이들이 못하고 있고, 외출이 조금 제한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다른 시설로 좀 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과정들을…”

- (D양육시설, C과장) 시설의 규칙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받고 시설에 오는 경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이기도 함

“간혹 가다 이제 조금 그런 과정들(시설 규칙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는 과정)이 없이 오는 친구들은 도착해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듣게 되면 사실은 많이 조금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조금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조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E양육시설, K아동)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해야 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친구들과 약속하기도 어렵고, 공부도 힘들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친부에게 호소함

○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함

- (D양육시설, C과장) 아동이 다니던 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 아동의 사례관리기관 등과의 접촉을 통해 아동의 친구관계, 학업, 생활 상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저희는 최대한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아이가 자라온 과정, 학교에서의 모습, 친구 관계 등)을 정보를 취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략) 원적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도 많이 통화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부분들,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이라든지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나 선생님 지시를 따르는 모습 이런 전반적인 정보를 갖고 아이가 또 지역사회 내에서 공부방을 다녔거나 지역아동센터를 다녔거나, 그러면 그쪽하고도 연락해서 아이가 거기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고,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이런 다양한 아이의 모습이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다는...”

○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함

- (D양육시설, C과장) 아동의 입퇴소, 사례관리 등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음

“퇴소를 하고 싶은데 퇴소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답답함이... (중략) 지금 구청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중략)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은 아보전이 개입하고 있으니까 아보전의 견에 따를 거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④ 국가 수준

○ 보호 인프라의 여건이나 시설 형편에 맞춰 아동을 보호함

- (D양육시설, C과장) 기존의 건물구조가 아동의 특성에 맞지 않아 성별, 연령, 아동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필요 없이 분리를 하거나 분리가 필요하지 않는데 분리를 하는 등 아동에 맞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함

“이 건물에 조금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에는 이제 남자 친구들도 사실은 다 같이 있었는데, 남자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에 비해서 워낙 활동성이 높고 또 문제가 워낙 많이 있어 보니까, 저희가 조금 부작용 때문에 지금 분리를 해놓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사실 여자 친구들도 이제 좀 분리를 하고는 싶은데 공간도 조금 마땅치가 않

고, 또 이제 그런 또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미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D양육시설, C과장) 사생활에 대한 제약 때문에 시설 입소를 거부한 아동을 보호할 다른 시설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아동을 강제로 끌고 옴

“네가 진짜 갈 데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여기 와야 된다’ (중략) 최근에도 한 명 입소한 중학교 여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여기 오는 걸 거부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는 있는데, (중략) 핸드폰이나 이런 외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면 자기네 여기 안 오겠다’ 근데 심터들에 연락했을 때 다 티오가 없더라든지 아니면 또 안 받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구청에서는 이 친구를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래서 약간 정말 통보를 하면서까지 끌고 오셨었고…”

- 아동의 보호를 결정하는 과정에 안내나 의견 청취 절차가 없음

- (D양육시설, C과장) 관련 제도나 명문화된 절차가 없다 보니 아동의 보호 및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을 내린 후 통보하게 되고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지자체에서)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결과만 알려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은 좀 못 받아들이는 거고, ‘충분히 설명을 못 받았단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략) ‘거기 선생님들은 나를 도와주는 걸로 느껴지지 않는다. 거기에 선생님들은 나를 어쨌든 물건 취급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필요함

- (D양육시설, C과장)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아동이 가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설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없음

“(아동의 가정복귀 이후 위험요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어쨌든 사후 관리하는 그런 기관들하고 소통하면서, (중략) 사실은 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도 법제화되어 있거나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개입하기 어려워하시는 게 현실인 거 같고요.”

- (D양육시설, C과장)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리는 등의 방법 이외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차원적

국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집에 가는데 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는 ‘112에 신고할 거예요.’ ‘이런 센터에 올 거예요.’ ‘아보전에 얘기할 거예요’ (중략)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개입이 뭔지를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면서도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 (D양육시설, C과장) 아동의 원가정과의 접촉이나 지원은 민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더 현실성 있게 지원할 필요 있음

“구청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따라야 되는 거고, (중략) (아이가 집으로 돌아) 갔을 때의 그런 사후 관리 부분이 사실은 저희로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구청에서나 아보전에서나 주기적으로 방문도 하시고 연락하시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분리조치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요약한 표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0〉 생태체계 분석틀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분리 이전

수준	범주	사례
아동 개인	부 또는 모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현병을 앓던 모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의 학대를 당함 • 폭력적인 부와 친모의 방임과 정서학대 등을 당함 • 조현병 환자인 모로부터 방임과 유기로 당하였음 • 쓰레기 더미가 쌓인 집에서 거주함
아동의 가족	심각한 질환과 파탄난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현병 등 질환을 앓는 모가 친정 등 가족과 의절함 • 자살충동이 있는 부의 자살시도와 흥기협박, 자녀들 앞에서의 부부관계 등 가족관계가 파탄남
	힘든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가족 간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망가진 모습에도 아동은 걱정하고 염려함 • 조현병으로 자녀를 유기하였지만 정신이 들면 자녀를 애타게 찾음 • 아내의 조현병, 자녀의 양육시설 입소, 고단한 생활에도 성실하게 자녀를 돌보고 애정을 유지함
지역사회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이 있어 가족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음
국가	법의 허점을 노림-아동을 이용해 수급비를 받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의 자녀는 모에게 호적을 올리지 점을 악용해 수급비를 받아 개인 유흥비로 쓰고자 함

〈표 4-21〉 생태체계 분석들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분리 당시

수준	범주	사례
아동 개인	기대도 희망도 없고, 슬프고 거부감이 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분리되어 그룹홈에 처음 왔을 때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음 • 엄마가 자기를 그룹홈에 맡겼다는 생각에 많이 움
	모친 걱정을 하고 보고싶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현병으로 집 나간 엄마를 걱정하고 보고싶어 함
아동의 가족	친모가 아동의 분리를 요청하고 지자체에서 아동을 바로 분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체계 개편 전, 조현병을 앓던 모가 아동분리를 요청하자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바로 분리함
	심각한 방임과 정서학대로 아보전에 의해 분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방임하여 집은 쓰레기장이고 먹을 것도 없어 아보전에서는 바로 분리결정을 함 • 경계선 지능인 아동의 누나는 여자 그룹홈으로 분리됨
지역사회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 아동의 의사 반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체계 개편 이전에 분리된 아동의 경우 그룹홈에 전화하여 자리 있는지 확인하고 아동 배치함 • 아동이나 부모 뿐 아니라 시설에도 의견 묻지 않고 배치함 • 아동을 보호할 시설에 아동의 가정배경, 분리 원인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아동을 시설에 배치함
국가	인프라의 부족으로 규정을 위해하여 아동을 보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보호할 곳이 없어 아동을 성인 장애인시설에 입소시켰다가 하루 만에 정원 여유가 없는 그룹홈에 아동을 입소시킴
	담당자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정보에 편차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아동에 대해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질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지자체의 담당자에 따라 아동보호에 노력하는 정도가 다름

〈표 4-22〉 생태체계 분석들을 활용한 분석결과 요약: 분리 이후

수준	범주	사례
아동 개인	원래 살던 환경으로부터 분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살던 가정, 학교, 친구, 친인척들과 떨어지고 다니던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됨
	생활의 기본적인 것부터 도움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하는 방법, 자기 물건 관리하는 방법 등 기본적인 것부터 도움을 필요로 함
	보호체계 편입 이후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건강해지고 표현도 잘 하고 밝아짐 • 잘 놀고 말도 잘 한다고 스스로 표현함 •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생각도 잘 표현함 • 스스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표현함

수준	범주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가 있고 말더듬이 있던 아동이 언어치료를 받으며 나아짐 • 처음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학대한 부모에 대한 마음이 생겨남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 잊고 싶은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에 대한 기억, 분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모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싶어하지 않음
	잊고 싶지 않은 기억, 끊을 수 없는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와의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고, 부를 만나고 오면 좋아함 • 부를 만나고 오면 눈이 축축해져 있음 •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폐렴에 걸린 부를 기억하며 크게 걱정함 • 폭력적인 부를 피해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가 자기를 잘 챙겨주었던 기억을 함 • 식구가 모여 살기를 간절히 바람 • 시설에서 함께 지내는 동생을 돌봐주고 챙겨줌 • 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부가 걱정이 많은 것 같아 걱정됨
아동의 가족	풀리지 않은 매듭, 아직은 먼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원가정 방문 시 모는 기물을 부수와 아동은 구석에 앉아 있고 부는 술만 먹음 • 가족이 함께 살고 싶지만 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부는 지방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함
	변하지 않는 가정,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서 가정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으므로 가정에 돌아가면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희망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는 아동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고, 방학이면 며칠 씩 함께 지내며 아동이 긍정적으로 변함 • 부는 가정복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
지역사회	규칙적인 생활과 유보된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에 맞춰 식사하고, 핸드폰 사용할 수 없고, 외출이 제한되어 친구들과 약속도 어려워 시설에서의 생활이 불편함 • 시설의 규칙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여 시설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아동을 돕기 위해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다니던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친구관계, 학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지자체와의 협력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입퇴소, 사례관리 등 지자체나 아보전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원활하지 않음
국가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보호가 아니라 보호 인프라의 여건이나 시설형편에 맞춰 아동을 보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건물구조에 맞춰 아동을 보호하게 되어 아동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보호를 하지 못함 • 사생활에 대한 제약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는 아이를 강제로 끌고 오기도 함

수준	범주	사례
	아동의 보호를 결정하는 과정에 안내나 의견 청취 절차가 없음	• 관련 제도나 명문화된 절차가 없다 보니 아동의 보호가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함
국가	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필요	•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 다차원적 국가지원체계 마련 필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면서도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원가정과의 접촉이나 지원은 민간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

4) 원가정 복귀 사례 분석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4명의 아동과 4명의 부모/보호자를 인터뷰하였는데, 4명 중에 3명은 공동생활가정 또는 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고 1명은 가정에서 분리되어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다가 친모에게로 돌아가 원가정 복귀한 사례²³⁰⁾이다. 이 사례는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입국하여 모친과 2개월을 살며 갈등을 겪다가 그룹홈에서 8년 간 지냈다. 그룹홈에 거주하며 대학에 입학하였고, 만 22세였던 2021년 1월에 친모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를 하였다. 이 사례에 대해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헤어지고 그룹홈 입소와 가정복귀하기까지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첫째 북한 거주 시기, 둘째 남한 입국과 엄마와의 갈등, 셋째 그룹홈 입소, 마지막으로 가정복귀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아동 개인 수준, 아동의 가족 수준, 지역사회 수준, 국가 수준으로 나누어 삶을 조명해 보았다. 가정복귀한 N사례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230) 여기에서 소개하는 원가정 복귀 사례는 2022년 면접 당시 만 23세로 호칭을 ‘아동’ 대신 ‘사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사례는 부모의 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분리되어 가정외 보호를 받는 전형적인 학대 사례와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데, 가정복귀의 과정에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기울이는 실천 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많아 원가정 복귀사례로 다루었다.

〈표 4-23〉 원가정 복귀 경험 사례의 특성

사례	N사례의 특성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4학년, 만 23세, 여자 - 탈북 청소년으로 아동 5세 때 부모님 이혼하고 친모는 중국으로 감 - 이후 방임과 이모의 신체학대 경험하다 만 14세 때 친모가 있는 남한으로 음 - 남한에서 친모와 2개월 함께 살다가 모친과의 갈등으로 그룹홈 입소 - 그룹홈에서 8년간 거주하다가 2021년 1월, 22세에 가정복귀함 - 현재 대학을 다니며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음 - 모친은 집 근방의 건설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음

(1) 북한 거주 시기²³¹⁾

① 아동 개인 수준

○ 고난의 시작

- 부모님은 이혼하고, 엄마는 중국으로 가고, 홀로 남겨진 8살

“그때 당시 이모가 너무 아프기도 했고 집안에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덟 살 때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시장에 나가서 이제 물건 팔면서, 이렇게 끼니 때웠어요.”

- 어린 나이에 삶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죽기로 마음 먹음

“산에 가서 나물 캐서 팔면서 생계유지를 했어요. 그렇게 10개월을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워낙 어려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큰엄마 아들이랑 약을 구해다 놓고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먹으려고 하던 찰나에 거기 동네 주민 반장 엄마가 오신 거예요. 그 상황을 보신 거죠. 이대로는 되게 위태롭다 싶으셨는지 시골에 첫째 큰엄마가 있거든요. 큰 엄마한테 연락을 하셨죠.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애들을 데려가라고요.”

○ 학대에 시달린 이모집 생활

- 맞고 쫓겨나는 게 반복되었음

“진짜 많이 맞고 많이 쫓겨났었죠. 그래서 큰 엄마(큰이모) 원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중략) 그냥 조금만 그릇을 닦다가 깨뜨렸어요. 그래도 때리고요. 성격도 워낙 불 같으셔서 엄청 화 내다가 그 화가 누그러들면 되게 착하고요.”

231) 북한 출신 N사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수준과 국가 수준에 대한 진술이 많지 않아 주로 아동 개인 수준과 아동의 가족 수준 위주로 분석하였다.

- 기억에서 사라지는 엄마
 - 시간이 지나면서 모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짐

“중간에 엄마가 돈도 보내주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돈 보내줄 때마다 계속 저를 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② 아동의 가족 수준

- 부모 없이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짐
 - 5살 때 부모님의 이혼 후 친모는 중국으로 가고 이모집에서 살게됨
- 새로운 가족, 그러나 돌보아야 할 가족
 - 몸이 아픈 이모와 동갑의 사촌과 함께 살게 됨
 - 그러나 돌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이모와 사촌을 돌봐야 함
 - 함께 살던 이모가 돌아가시고 아이들 둘만 남음

“3살 때쯤에 이모가 워낙 간이 안 좋으셨거든요. 간 복수가 심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 아들이랑 저랑 둘이서만 살았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2) 남한 입국과 엄마와의 갈등

① 아동 개인 수준

- 남한에 입국하다
 - 엄마가 나를 위해 브로커들을 사서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 한국에 오다

② 아동의 가족 수준

- 9년 만에 만난 엄마
 - 반가울 것 같지 않았던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림

“저는 솔직히 워낙 어릴 때만 헤어져서 살면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고 엄마를 만나도 절대 울지 않을 거다. 눈물도 안 나올 것 같다. 이랬는데 딱 만나자마자 뭔가 엄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울었죠.”

○ 엄마와의 만남, 갈등의 시작

- 하나원 퇴소 이후의 진로로 엄마와 갈등이 심해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하나원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동기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언니들이 다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워낙 북한 사람들만 있다 보니 사람들 적응도 쉽지 않고 말도 계속 북한말을 써야 되니까, 엄마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저는 언니들이 다 거기를 간다고 하니깐 저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청 대립이 많았어요.”

- 엄마에게 섭섭한 게 많았음

“엄마랑 헤어진 기간 동안 제가 고생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나 봐요.”, “사소한 거에도 되게 서운하고... 아들한테 신경 쓰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보다 남을 더 챙기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운했고 그런 걸로 싸우고 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가 계속 싫었어요.”

- 엄마가 중국에서 다른 남자와 살며 낳은 남자 동생을 신경쓰는 게 싫었음

“(엄마가) 아들한테 신경 쓰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보다 남을 더 챙기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운했고 그런 걸로 싸우고 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가 계속 싫었어요.”, “엄마가 오로지 저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중국에 있는 남동생(엄마가 중국에서 낳은 배다른 동생)을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동생 때문에 울고 전화하는 걸 보니 옆에서 ‘나는 왜 데려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서운했죠.”

(3) 그룹홈 입소

① 아동 개인 수준

○ 그룹홈 입소, 분노와 슬픔, 두려움

- 탈북자 다큐 촬영하던 PD가 A그룹홈을 소개해줌

-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 슬픔, 두려움

“되게 싫었어요. 싫었다기보다는 그냥 화가 났어요. 왜 여기 와서까지 또 이렇게 엄마랑 떨어져서 같이 못 살지? 또 낯선 곳에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대해 말은 들었지만 실제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겁도 났죠.”

- 비 오는날 처음 간 A그룹홈에서 숨이 막힘

“하필 제가 간 날이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안산 집을 갔는데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되게 어두컴컴하고 대표님은 되게 무섭게 생기셔서요. 집도 되게 작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파트에서 살다 잠깐 올라온 거였는데 비도 오고 이러니까 엄청 음침했어요.”

- 며칠 동안 울기만 함

“처음에는 A그룹홈에 가서 한 며칠 동안은 계속 울었어요. 물론 그 전에 엄마랑 많이 싸우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엄마라는 그게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또 떨어지니까 2개월 동안 정이 들었는지 계속 보고 싶어서 계속 방에서 혼자 울고 그랬어요.”, “(모친)애가 싫다고 자꾸 우는 거예요. 울었어요 처음에는.”

○ A그룹홈, 행운의 만남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다

“그룹홈 생활이 단체 생활이니까 편하지만은 않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다 잘해준다 해도 불편한 게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거기서 저는 조금 그랬던 게 항상 긴장을 안 뉘어요. 쌤들도 다 너무 편하게 대해주고 언니 오빠들도 다 좋고 동생들도 다 좋는데 그 내면의 긴장감이 항상 있었어요.”

“언니 오빠들도 다 너무 잘해주고 다 또래고, 또 대표님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항상 도와주는 선생님

“(아이들 사이에) 갈등 많았죠. 그러니까 쌤들이 힘들어 했죠. 왜냐하면 워낙 애들이 어리고 말도 잘 안 듣고, 또 서로 싸우면 쌤들이 중재해요. (중략) 쌤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가정집에서 그냥 다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어디 가면 가족이랑 여행 갔다, 가족여행이라고 올리고요.”

“애들이랑 있을 때는 엄청 밝은데 혼자 방에 있으면 우울해지고 그랬어요. (중략) 그것 때문에 쌤들한테 되게 말을 많이 했어요.”

○ A그룹홈, 인생의 전환점이 되다

- 많은 여행과 다양한 경험을 함

“다른 그룹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행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룹홈은 여행도 되게 많이 갔어요.”

- 상담, 멘토링, 교육의 기회

“상담 그런 것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 전문 상담사 불러서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멘토링 선생님이 있었어요. 멘토 선생님이라고 저희 집 후원해 주시는 분들 오셔서 아이들 한 명씩 맡아서 가끔씩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중략) 교육 같은 거, 계속 학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님들 초청해서요.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배우고 체험 같은 것도 많이 하

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건 다 했던 것 같아요.”

- 성장의 기회가 됨

“만약에 거기를 안 갔다면 내가 그냥 엄마랑 같이 지내고 했다면 이만큼 못 자랐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성장했다.”

“A그룹홈에 있었던 게 저는 진짜 제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저는 진짜 이만큼 못 컸을 것 같아요.”

② 아동의 가족 수준

○ 엄마와의 관계가 개선됨

- 그룹홈이 피난처가 되어줌

“A그룹홈에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그룹홈 때문에 엄마랑 사이가 이만큼 개선이 됐거든요. 진짜 옛날에는 엄마랑 마주 앉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방학 때 되면 저희는 집으로 가거든요. 기분 좋게 내려가서 항상 올라올 때는 싸우고 올라와요.”

“엄마랑 싸우고 A그룹홈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싸움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A그룹홈(으로 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 엄마도 인정하는 A그룹홈

- 엄마보다 잘 키워줌

“(모친) 지금 너무 감사하고 항상 그게 고맙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잘 데리고 있었어도 엄마 품에 있는 거는 좋지만 저만큼 진짜 이쁘고 착하게 잘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중략) 근데 딸도 얘기하거든요. ‘엄마 나 거기 가서 잘한 거 같애. 그래도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나오고’ 다 거기서 배우게 하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막 이렇게. 어쨌든 아직 저는 대한민국 못 가본 데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 돌아봤잖아요. 진짜 그거는 후회를 안 해요.”

(3) 원가정 복귀

① 아동 개인 수준

- 가정복귀, 믿어지지 않는 현실

“저는 되게 안 믿겨졌어요. 뭔가 내가 평생 여기서 살 것만 같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거의 7,8년 있었으니까요. (중략) 그러니까 진짜 계속 울었어요. 나올 때 많이 울었어요. 계속 울고 안 믿겨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집 나오고 나서도 한 며칠 동안은 계속 뭔가 거기를 가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뭔가 쌤들도 보고 싶고 쌤들이 약간 엄마, 아빠 느낌이었어서 계속 울었죠.”

-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두려움

“계속 같이 안 살아서 더 뭔가 같이 사는 거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겁도 났어요. 또 싸울까 봐요.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산다고 이렇게 나올 때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쌤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저 잘 살 수 있을까요? (중략) 왜냐하면 서로 계속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계속 쪽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돌아갈 때가 없는 거고, 사는 (그룹홈)집으로도 못 가고요.”

- 갈등에 대한 걱정

“(모친) (함께 사는 게) 좋았지만, 제 속마음이에요. 좋았지만 한쪽으로는 화나는 일도 좀 많고 그랬어요.”

○ A그룹홈, 가족이 되다

- 원가정 복귀 후에도 가족처럼 이어지는 유대감

“(모친)엄마 여기 내 고향이야. 두 번째 고향이라고 (아이가 그랬어요.)”

- 원가정 복귀 후에도 연락하고 교류하는 그룹홈

“처음엔 (제가) 연락을 많이 했어요. 쌤들도 가끔 연락해서 ‘괜찮냐? 잘 지내고 있냐?’ 물으시고요.”, “지금도 가끔 ○○집에 가거든요.”, “(모친)(가정복귀 후에도)쌤들하고 통화도 이따금씩 한 번씩 해요. (중략)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쌤들하고 잘 물어봐요. 그래도 쌤들은 우리보다 더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잘해요.”

- 원가정 복귀 후에도 그룹홈 여행에 따라감

“저희는 여행도 가거든요. 나갔던 친구들도 다 같이 가요. 이번에 캠프하는데 참석할 거냐고 연락 와서 8월에 한 번 갔다왔어요.”

- 퇴소 이후에도 이어지는 정서적 유대감

“○○○을 나왔을 뿐이지 그런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설날에도 찾아가고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는 간식 사들고 가고, 쌤들 그럴 땐 선물도 또 사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무슨 그런 중요한 그거 있으면 일단 ○○○부터 생각이 나요.”, “(모친)명절 때마다 가요. 과일이라 사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냥 마음이니까, 사가지고 가면 또 대표님은 또 더 많이 챙겨줘요.”

- 아쉬운 이별

“쌤들이 엄청 아쉬워했죠. (중략) 저희는 나올 때 송별회를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이루었던 과정을 피피티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집이랑 이제 끝인가?’ 이게 더 컸어요. 그냥 ○○집의 존재가 너무 컸어요. 엄마보다도 쌤들이 더 엄마고요, 거기 아들이 더 제 가족 같고, 대표님이 더 아빠 같았죠.”

② 아동의 가족 수준

○ 아동과 가족을 연결하는 중재자

- 선생님은 부모와 연락하고 부모와 아이를 연결해 주는 중재자

“(모친)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적응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 하고도 전화도 하고 쌤들이 또 이렇게 적응 잘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요새는 뭐 마음이 안 좋아한다, 뭐 화가 나 많이 나왔다, 막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 가족과의 잦은 교류 주선하는 그룹홈

“방학 때 되면 몇 번씩 가거든요. 또 가끔 주말에 한 번씩 가고 싶을 때 가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보내주죠. 부모님이랑 연락해서 부모님이 시간이 되시면요. 또 어린 애들은 쌤들이 나서서 미리 다 알아보고 보내요.”, “엄마도 ○○에 자주 왔었어요. 주말에 와서 밥 사주고 가고 그랬어요.”

- 선생님이 함께 하는 엄마와의 여행

“더 관계가 멀어지고 했는데 그걸 잡아주는 게 우리 집이이에요.”, “부모님과 만나서 대화도 시켜주고 엄마랑 같이 여행 같은 거를 보내줘요. 엄마랑 선생님 한 분이랑 같이 여행을 보내 줘요. 가서도 재밌게 놀고 저녁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갖죠.”

- 아동과 부모를 연결

“쌤들이 중간 역할 되게 많이 해줬죠. 왜냐하면 제가 서운한 걸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쌤들한테 얘기하면 엄마도 가끔 속상할 때 쌤들한테 막 물어보죠. 중간에서 중재 역할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아니었으면 엄마랑 이렇게 잘 지내지도 못했고 제가 적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가 조금 서운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중간에서 그런 역할이 있었으니까 저도 엄마 생각을 알고 엄마도 제 생각을 아니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엄마집까지 함께 가준 선생님

“쌤들 같이 밥 먹고 쌤이랑 같이 엄마 집을 갔었죠. 그러니까 쌤들이 진짜 많이 왔다갔다하셨어요.”, “쌤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요. 쌤이 다섯 분이랑 여섯 분 계시거든요. 이번 달은 이 쌤이 이 집을 방문을 하고, 이 아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다 돌아가면서요.”

- 선생님이 따로 엄마를 찾아가기도 함

“저랑 같이 아니고도 쌤들끼리 해가지고 엄마 찾아뵈서 얘기도 하구요.”

- 복귀 전 엄마와 자주 만남을 주선함

“엄마랑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요. 얘기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워낙 엄마랑 엄마 집 자주 갔었어요. (중략)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랬어서 그렇게 막 낯설진 않았어요.”

③ 지역사회 수준

○ 그룹홈 아동의 부모가 서로 연결됨

- 부모모임을 주선하고 SNS를 통해 소통함

“(모친) 쌤들이 다 편해가지고 진짜 잘해주셨어요. 너무 편하게 이렇게 우리를 대해줘가지고 ...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뭐 이렇게 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쌤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의 그 상처 소리도 같이 하고 그런 자리도 대표님이 많이 마련해 주셔서...”

“(모친) (부모들이)다 같이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이런 상담... (중략)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애들하고 합쳐서...”

“(모친) 밴드 보면은 어디 놀러 간 여행 거기 다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디 갔다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랑 이렇게 찍은 거 보면 뭐 맛있게 먹거리 해 놓고 그다음에 막 여러 군데 이렇게 간 거 보이거든요. 그래 그런 거 보면 참 행복하니까, 니가 행복해서 좋다, 엄마는 못 가봐도 좋다, 그러거든요.”

북한에서 입국하여 엄마와의 갈등 끝에 그룹홈에서 8년간 지내다가 가정으로 복귀한 N사례에 대해 위에서 분석한 북한 거주 시기, 남한 입국과 엄마와의 갈등, 그룹홈 입소, 가정복귀의 네 단계를 개인 수준, 가족 수준, 지역사회 수준으로 나누어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4-24〉 가정복귀 사례 분석결과 요약: 북한 거주 시기

수준	범주	사례
아동 개인	고난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없이 홀로 남겨진 8살 • 죽기로 마음 먹음
	학대에 시달린 이모집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고 쫓겨나는 게 반복된 생활
	기억에서 사라지는 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지나면서 모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짐
아동의 가족	부모 없이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살 때 부모님의 이혼 후 친모는 중국으로 가고 이모집에서 살게됨
	새로운 가족, 그러나 돌보아야 할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아픈 이모와 동갑의 사촌과 함께 살게 됨 • 그러나 돌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이모와 사촌을 돌봐야 함 • 함께 살던 이모가 돌아가시고 아이들 둘만 남음

〈표 4-25〉 가정복귀 사례 분석결과 요약: 남한 입국과 엄마와의 갈등

수준	범주	사례
아동 개인	남한에 입국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브로커들을 사서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 한국에 오다
아동의 가족	9년 만에 만난 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가울 것 같지 않았던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림
	엄마와의 만남, 갈등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퇴소 이후의 진로로 엄마와 갈등이 심해짐 • 엄마에게 섭섭한 게 많았음 • 동생을 신경쓰는 게 싫었음

〈표 4-26〉 가정복귀 사례 분석결과 요약: 그룹홈 입소

수준	범주	사례
아동 개인	그룹홈 입소, 분노와 슬픔,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 다큐 촬영하던 PD가 A그룹홈을 소개해줌 •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 슬픔, 두려움 • 비 오는날 처음 간 A그룹홈에서 숨이 막힘 • 며칠 동안 울기만 함
	A그룹홈, 행운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다 • 갈등 많은 아이들, 중재하는 선생님 •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줌 • 무슨 말이든 받아주는 선생님
	A그룹홈, 인생의 전환점이 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여행과 다양한 경험을 함 • 상담, 멘토링, 교육의 기회 • 성장의 기회가 됨
아동의 가족	엄마와의 관계가 개선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홈이 피난처가 되어줌
	엄마도 인정하는 A그룹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보다 잘 키워줌

〈표 4-27〉 가정복귀 사례 분석결과 요약: 원가정 복귀

수준	범주	사례
아동 개인	원가정 복귀를 준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복귀, 믿어지지 않는 현실 •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두려움 • 갈등에 대한 걱정
	A그룹홈, 가족이 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번째 고향, A그룹홈 • 원가정 복귀 후에도 연락하고 교류하는 그룹홈 • 원가정 복귀 후에도 그룹홈 여행에 따라감 • 퇴소 이후에도 이어지는 정서적 유대감 • 아쉬운 이별
아동의 가족	아동과 가족을 연결하는 중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은 메신저 • 가족과의 잦은 교류 주선하는 그룹홈 • 선생님이 함께 하는 엄마와의 여행 • 아동과 부모를 연결 • 엄마집까지 함께 가준 선생님 • 선생님이 따로 엄마를 찾아가기도 함 • 복귀 전 엄마와 자주 만남을 주선함
지역사회	그룹홈 아동의 부모가 서로 연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모임을 주선함 • SNS를 통해 소식을 교류함

5) 분리와 보호, 원가정 복귀와 복귀 후 모니터링의 과정: 피해아동 원가정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실무자/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아동보호 관련 실무자/전문가로 구성된 2차례의 FGI에서 도출된 아동의 가정외 분리와 보호, 원가정 복귀와 복귀 후 모니터링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1) 아동의 원가정 분리와 관련된 이슈

- 학대 행위자의 저항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필요함
 - (A) 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음
 - (A) 학대 행위자가 죽겠다고 하거나,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고, 철수 후 자해 또는 자살을 하는 경우 실무자로서의 어려움이 큼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어야 함
 - (U) 현장에 출동한 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학대판단은 한계가 있음
 - (K)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즉각분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큼
 - (U) 학대전담공무원의 분리에 대한 부담이 큼
 - (K) 즉각 분리 판단을 위해 재학대 발생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분화된 매뉴얼이나 척도가 필요함
 - (U) 아동의 연령별, 특성별 기준에 따른 즉각분리 척도 필요함
 - (I) 아동의 의사와 욕구, 학대의 경중, 학대 행위자의 태도와 변화 가능성, 아동학대 신고 횟수, 비가해 부모·가족의 보호요인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
 - (U) 즉각분리 제도를 약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예, 청소년이 집을 나가고 싶어하는 경우)에 대비한 세분화된 기준 필요함

- 분리 시 아동과 가족의 자기결정권과 결정권의 제한
 - (J) 아동을 분리할 때 부모에게 이후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함

“(부모에게는 아동의 분리가)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떤 부모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아무리 학대를 했다 하더라도요. (중략) 메시지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런 절차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략)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또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 (S) 아동의 나이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아동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I) 아동의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맥락에서 수용되고 반영되어야 함
 - (I)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아동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W) 나이 어린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의 경우 신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함

- (W) 아동은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아동 분리 이후 아동을 위한 결정의 한계
 - (S)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등 다양한 보호방안 모색 필요함
 - (U)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장애아동 등 다양한 아동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보호체계 선택에 한계가 많음
- 아동을 분리할 것인지, 학대 행위자를 분리할 것인지의 구분 필요함
 - (A)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을 분리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아동을 분리하지 않는 게 중요함
 - (A) 학대 가해자를 분리했을 경우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안 필요함
- 아동의 이익과 업무 부담 사이의 딜레마
 - (K)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인력적인 보강을 고려해야 함
- 분리 제도의 현실적 한계
 - (K)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아동의 분리를 오히려 좋아하는 부모도 있음
 - (U) 부모의 잔소리가 싫거나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동이 부모와의 갈등을 이용하여 집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음
 - (U) 분리된 아동이 보호체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함
 - (U) 분리된 아동의 생활에 대한 불만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
 - (K) 한번 분리가 되면 가정복귀의 절차로 인해 시간이 걸리게 되며, 가족과의 단절이 길어지면 관계 회복이 어렵고 가정복귀는 더 어려워짐

- (A) 장소 중심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아동이 보호되는 시설을 옮겨가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가 효력을 상실하는 허점이 있음
- 가정외 분리 시 아동의 욕구와 현실이 상충하는 경우
 - (N) 아동과 친모 모두 함께 살고 싶어하지만 친권이 부친에게만 있어 아동과 친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2) 분리된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이슈

- 학대 유형에 따른 보호와 개입, 아동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권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함
 - (K)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방임, 성학대 등 학대의 유형, 학대의 심각성 등에 따라 보호와 개입이 달라져야 함
 - (H) 원가정에서 양육을 거부하고 시설에서도 거부하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

“장애가 있고 지적장애의 정신장애를 동반한 아이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원가정은 물론이고 시설에서도 거부를 하고 그룹홈도 거부하고 양육시설도 거부를 해서 이 아이를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요, 전국을 수소문해서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보내게 됐는데, 분리보호 조치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거예요. 그런 아이가 (중략) 학대 이후에 분리된 상황에서, (중략) 어디서도 돌봄을 거부당하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 또한 소규모라도 있어야 된다, 그게 지자체 수준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3) 분리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개입

여기에서는 분리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실무자/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때 아동에 대한 개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동이 살아온 가정과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함으로써 아동에게 가해지는 피해와 상처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동과 아동의 가족을 접촉하기 위한 적지 않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과 가족을 섭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큰 이유로 작용했지만,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던 원인이 해소되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원가정으로 복귀하였다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거나 아동을 보호했던 시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 배경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²³²⁾ 여기에서는 분리된 아동의 가정이 회복되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분리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실무자/전문가들의 의견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원가정이 회복되어야 아동도 행복해짐

- (Y) 가정이 회복된다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함

“아동의 가정이 살아나야지 우리 애들이 행복해지고 당당해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원가정 복귀 때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 조건 두지 않고 ‘집에 가고 싶은지 아닌지?’라는 단순한 질문을 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됐었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집이 달라지고 어머니가 엄마가 달라지고 할 때는 어떨니?’라고 물어봤을 때하고 결과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집에 가고 싶냐?’ 하면 당연히 안 좋았던 기억과 모든 상처 때문에 ‘아니예요’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된다면 아빠가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면 어떨니?’라고 했을 때는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원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분명히 되어 되겠다.”

- (R) 원가정 복귀가 가장 좋은 자립

“(요즘에) 자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만기 종료 자립. ... 원가정 복귀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자립인데, ... 요즘 최근에 자살 문제들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으니까 혼자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가정 복귀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자립이죠.”

○ 원가정과의 관계 유지만으로도 변화가 있음

- (R) 학대를 한 부모라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중략) 스트레스가 더 많아서 그럴 뿐이죠. 그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시켜줄 수 있을까? (부모가) 죄책감과 수치심에 아이들 보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언제든지 만남을 한다면 (부모가) 아이들이 점점 더 보고 싶을 수 있죠. 아이들도 부모를 만나지 않다 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점점 많아져서 관

232) 이것은 추측으로서 아동을 보호했던 시설이 아동과 원가정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동을 복귀시킨 후 원가정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다만 드러나지 않아 이 연구에 담지 못했을 뿐, 아동보호와 원가정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계가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할 얘기도 많아지고 더 보고 싶어서 부모님들이 이사 오시기도 합니다. 부모들의 상황 때문에 끝까지 돌아가지 못하는 애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와 의논도 하고 같이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이 생깁니다. 실무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경찰서 요즘 안 가네?’ 예전에는 아이들이 분노가 많으니까 말썽들을 피우는데 부모들이 원가정 복귀와 상관없이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할 때 아이들이 든든해하고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 (R) 가족보존이 초점이며 처음부터 가족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함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나 방임이 아니면 아이를 분리 안 시키거든요. 처음부터 가족 보존에 초점을 맞추죠. 사실은 (분리가) 엄청나게 심각한 조치예요. 아이에게도 가족에게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R) 분리는 최후의 방안

“(아동 선진국에서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분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만남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 (R) 분리 시 가족과의 교류가 중요함

“그런 경우(아동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아동 선진국에서는) 만남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 (Y) 물리적인 가정복귀도 중요하지만 심리·정서적으로 원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원가정 복귀라고 할 수 있음

○ 아동 분리 초기의 개입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

- (R) 가족보존은 학대신고가 들어온 시점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보존을 위한 초기의 노력이 가장 중요함

- (R) 아동이 학대를 받아 분리되었을 때에도 아동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의 재결합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음

- (J)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대응이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

“학대로 신고를 받았을 때부터, 초기 대응 인력부터 (아동과 가족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략)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분리되고 나면 가정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R) 분리되는 초기부터 가족과의 관계 유지가 핵심
 - “(아동이 분리되었을 때)공백을 갖지 않고 처음부터, 만남을 두려워하면 고려해야겠지만...”
- (R) 분리 기간이 길어지면 분리상황이 고착되기 쉬움
 -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기(시설)가 편하고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 (R) 원가정 교섭은 모든 분리된 아동의 권리
 - “아동학대로 분리된 아이들하고 그냥 베이비 박스나 이혼으로 분리된 애들이 완전히 다른 애들로 (취급되는 거예요). (중략) 학대로 분리됐건 무슨 다른 이유로 분리됐건 원가정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하다면 고려해야 되지만 다를 게 없는 거죠.”
- (J) 초기개입의 방법
 - “초기부터 개입을 한다는 것은 초기부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아동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아동의 소식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장치라도 계속 마련해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전체 계획을 부모도 알고 아동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의사결정 참여의 효과
 - (J)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자체가 주는 긍정적 효과 있음
 -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룹홈에서 ‘원가정 복귀를 하느냐 마느냐’, ‘부모님은 언제 만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동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공부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더라도 아동이 그 순간에는 실망을 하지만 그런 의견을 들어주고, 그것을 존중받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발달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 (J) 아동의 참여를 위해 아동에게 주는 메시지
 - “‘이런 과정으로 선생님들이 (너를) 돕겠지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 오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할 것이다.’이고 아동에게 가능하겠는지 의사를 묻기도 합니다.”
- 처음부터 가족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함
 - (R) 가족보존이 초점
 -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나 방임이 아니면 아이를 분리 안 시키거든요.

처음부터 가족 보존에 초점을 맞추죠. 사실은 (분리가) 엄청나게 심각한 조치예요. 아이에게도 가족에게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R) 분리는 최후의 방안

“(아동 선진국에서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분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만남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 (R) 분리 시 가족과의 교류가 중요함

“그런 경우(아동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아동 선진국에서는) 만남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 심리·정서적으로 가족과 합치는 것도 원가정 복귀의 의미가 있음

- (Y) 물리적인 가정복귀도 중요하지만 심리·정서적으로 원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원가정 복귀라고 할 수 있음

○ 아동과 가족의 교섭과 원가정 복귀, 문화처럼 자리 잡아야

- (J) 초기 개입과 지속적인 접촉

“사실은 특별하고 아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은 부모가 처음에 아이를 보육 시설을 두고 갈 때 만남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던 안 (지키더라도…).”

- (J) 상호 협의를 통한 교섭 준비와 교류

“(부모에게) 쪽지를 전한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몇 회를 만나야 된다, 대면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나 아동의 상황에 맞춰서 전화나 문자 혹은 시설 방문이나 가정 방문, 경우에 따라서 외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죠.”

- (J) 부모와 아동의 상황에 따른 교섭 진행

“어떤 경우는 아이와 전화 통화도 처음에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학대를 받고 온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그것이 어렵겠죠. 그러면 중간에서 종사자가 아동의 상황을 계속 문자 메시지를 전하고 부모의 상황을 듣고 아동에게 전달해 주고 이런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방식도 좀 취해 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초기부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 (J) 원가정 복귀는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함
 - “꼭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원가정 복귀가) 문화처럼 자리를 잡아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 아동과 가족을 넘어선 관계와 교류의 확대
 - (J) 부모모임을 통한 교류의 확대
 - “그러면서 만남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그 안에서 했던 것이 부모 모임이었어요. 당장은 안 오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올 수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그 안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하루는 아동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안 오시는 부모에게는 똑같은 방식으로 모임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했어요.”
 - (J) 대안가족의 발굴과 연계
 - “가족하고 관계가 (연결)되지 않거나, 부모가 아예 없는 무연고 아이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랑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안 가족 연결을 했어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가족과 같은 기능을 시설에 있을 때도 하고 후에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족들을 모집해서, 소위 말하는 멘토 같은 이런 건데, 어떤 기능적인 멘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가정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들을 다른 가족과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원가정뿐 아니라 이런 대안(가정)과도 겹겹이 연결을 시켰어요. 결국에는 지지 체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 (J) 관계의 확장, 변화의 확대
 - “원가정의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대안 가족이 채우고 A라는 대안 가족이 활동을 잘 못 할 때 B라는 대안가족이 채워주고, 어떤 경우는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자기가 맞지 않은 아이들까지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서로 챙겨주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퇴소 후에도 가족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런 모임에 참여를 하세요. 다른 부모로부터 배우고 자각을 하게 된 것이 그 계기이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던 것이 다른 가족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나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 종사자의 역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섭 진행
 - (J) 부모와 아동의 상황에 맞춘 교섭 진행
 - (R)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원가정과 밀도 있는 관계 구축이 필요함
 - (R) 아동과 가족의 만남은 실천가가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주선되고 촉진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변화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R) 전문적인 조력 하에 이루어지는 교섭

“(아동과 가족이 만날 때)누군가가 같이 만나는 거죠. 가족과 아이가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 (J) 종사자의 참여와 변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종사자의 변화였어요. 종사자가 소통의 사이사이를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사자에 대해서 적당한 교육과 수업이라도 계속 진행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중략) 원가정 복귀라는 프로세스에 아동을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종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 (J) 너무 바쁜 종사자, 지원만 있다면…

“그런데 그 종사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일단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더라도 시설에 있는 종사자는 아동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만 보아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려는 여유가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수업이나 외부 교육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경험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 외부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가이드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 (J) 아이들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결과

“‘경찰서 가는 횡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희 시설이 지금 20 몇 년이 됐고, 제가 왔을 때는 15년 정도가 됐던 시설이었어요. 그전까지 15년간 2개 그룹홈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한 번도 중도에 복귀한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18세 이후에 다 퇴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작업들(아동과 가족을 연결하고 대안가정을 만드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이들이 거의 40% 정도가 1년 만에 중도 복귀를 했고, 하지 않은 아이들도 퇴소할 때까지 부모랑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생활환경이 변하는 거죠. 저는 거의 매주 경찰서나 학교에 한 번씩은 불러갔었던 어떤 사건이 항상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한 14명 중에 한 명은 꼭 (경찰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 이런 것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안 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대면하기에도 굉장히 안정감이 생기고 하루 대화들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노는 얘기, 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가족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원가정과의 접촉, 가정복귀는 지자체, 경찰, 아보전, 시설 등의 공조와 협력으로 이뤄져야 함

- (Y) 아동의 원가정과의 교섭을 진행할 때 시설은 배제됨

“어떤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제 구청에다가 담당자한테 얘

기를 하고, 그때부터 원가 그쪽에서 회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저희는 배제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하고 구청 담당자분들하고 여기 지역분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4) 원가정 복귀의 한계

- 준비되지 않은 원가정 복귀의 위험성
 - (W) 보호자는 바뀌지 않았는데 보호자의 역지로 원가정 복귀한 아동이 힘들다고 하고 죽고싶다고 함
 - (W) 수급비를 받기 위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도 있음
 - (A) 학대로 분리되었던 아동이 법원의 판단으로 가정복귀했다가 재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적 있음
-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진행의 문제점
 - (I) 표준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이 없어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 (I)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의 진행 절차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해 부모일지라도 신청을 하면 준비 여부와 상관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됨
 - (N) 아보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노력 등 가해자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 가해 부모가 비협조적일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어려움
 - (I) 학대가해자의 생활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부재
- 부모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도 아동을 데려갈 수 있는 절차가 있음
 - (N) 부모가 자신의 편리를 이유로 또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동을 양육하지 않으려 함

“중요한 건 부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아이를 맡겨놓아 편하니까요. 또 대부분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ADHD가 있다든지 장애가 경계성으로 있다든지 가정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 부모 가족, 본인(부모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아이를 데려가고 싶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온전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신경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도와 절차와 법을 봤을 때 부모가 노력하지 않거나 잘못이 있어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

서 아동을 국가가 양육을 하고 있고 부모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아이를 데려갈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규정과 절차와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5) 법률과 관련된 이슈

- 법률적인 판단과 사법부 개입의 필요성
 - (N)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역할이 제한적이고 미약함
 - (S) 가정외 분리 등 아동보호 과정에 사법부가 개입할 경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민원의 발생 등에 대한 대처가 용이해짐
 - (S) 법원이 개입하게 되면 보호관찰관의 개입으로 학대 가해자에게 압력이 되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
 - (S) 상담, 교육 등에서의 참여 등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
 - (A) 검사가 운영하는 ‘사건관리회의’ 제도를 활용하면 경찰, 지자체, 아보전, 시설 등의 관계자가 참가하여 토론을 통해 향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부모의 친권 상실 등에 대한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법률 상 명확하지 않거나 규정이 없음
 - (S)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동 분리에 위헌 소지가 있음
 - (S) 원가정 복귀에 대한 판단은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하며, 일시보호가 종료되었을 때 아동을 복귀시키기 위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6) 아동의 분리와 보호, 원가정 복귀의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

- 아동보호조치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립
 - (J) 시설 배치의 지역적 편차, 실무자의 전문성 편차 등은 아동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불공정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 정립
 - (H) 사례결정위원회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야 함

-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각각의 역할 정립 필요
 - (R) 일시보호와 장기보호라는 분류 기준의 재정립 필요
 - (R) 가정외 보호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도와주는 곳
 - “그룹홈, 위탁 가정은 아이들을 18세까지 잘 키워주는 곳이 아니라 가능하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이 어렵다면 부모와 관계를 맺도록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한 지침 마련
 - (J) 프로세스별, 대응 영역별로 구체적인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이 필요함
 - (J) 시설, 쉼터, 가정위탁 등의 실무자가 알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함

- 지자체와 경찰, 아보전, 시설 등의 역할과 협력을 위한 규정 마련
 - (N) 학대를 한 부모에 대해 아보전이 하는 프로그램, 지자체의 개입,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노력 등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가 떨어짐
 - (R) 지자체에서 조사 따로 하고 이후에 사례관리는 아보전에서 따로 하는 분리된 체계로 효과적인 사례관리와 원가정 복귀 지원을 하기 어려움
 - (J) 어떤 조직의 어떤 실무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실제로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있구요.”
 - (J) 지자체의 아동보호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시설 간의 협력이 중요함
 - “(경찰과 지자체, 아보전이) 역할별로 어떻게 아동을 대하고 가족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략) 그리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례 판단 행위를 할 때나 아니면 사례 결정위원회를 할 때도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도 이런 일관적인 메시지

가 전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세스 별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실질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함
- (R) 효과적인 아동보호와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아보전이 지자체로 통합될 필요가 있음

○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부모의 의무 부과

- (N) 학습 강요와 체벌 등 학대인 줄 모르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에 대해 부모교육,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함
- (N) 학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정, 가정회복 지원이 필요함
- (W)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부과, 의무적인 부모교육 참여 등이 실시되어야 함

○ 실무자 역량 강화 지원과 지침(매뉴얼) 개발

- (J) 실무자의 역량강화와 지침은 두 개의 축

“저는 현장에 있을 때랑 그 이후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매뉴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종사자의 변화가 중요하지 매뉴얼이 무슨 필요냐, (종략) 실제로 나와서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현실이 변화하지 않고 긍정적인 경험들이 확산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매뉴얼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뉴얼과 교육은 같이 가야되는 문제이고요, 어떤 하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당장 할 수 있는 굉장히 상세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변화한 다음부터 기다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그때그때 다르고 바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종사자는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된다.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아동 분리에 대한 관점 정립과 학대 가정 이해하기

- (R) 분리는 아동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맡겠다는 것

“분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정은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더 잘 키워보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 하고 후견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분리가 되면 국가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기 쉽게 하고

그냥 책임은 아무도 안지겠다. 그리고 애 키우기 힘들면 그냥 가족으로 다시 보내버리고, 가족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는데요. (중략) 그러니까 분리를 진짜 신중하게 하고 분리를 한 시점부터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중략) 무슨 문제가 생겨도 국가가 책임지고 친권은 제한이 어느 정도 돼야되는 거죠. 근데 분리를 너무 쉽게 하고 부모가 이혼해도 아이를 받아주면서 또 친권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아동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 (R) 분리된 아동의 부모도 고통스러움

“(부모는) 아이를 버린 사람으로서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삶에서 건강한 선택을 하기 힘들어요. 마음속으로는 건강하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상황이 점점 몰락하죠.”

- (R) 처벌보다는 지원과 도움으로

“아동학대도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위기에 있다는 신호로 보고, 이 가족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를 참여시키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만 또 아이 때문에 살거든요. 이분들이 힘을 내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2.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 실태

1) 설문조사 개요

아동분리조치 시, 아동복지시설 등이 아동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과 아동의 가족재결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9월 27일부터 11월 11일 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분리조치 과정 및 이후의 아동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Zijlstra(2012), Ten Brummelaar, M.D.C. 외(2014), Ten Brummelaar, M.D.C. 외(2018), Middel, F. 외(2020)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분리조치 아동, 아동/보호자, 관련 실무자 총 500명을 목표로 하였다. 아동학대로 분리조치된 아동 136명, 분리조치 부모/보호자 110명, 분리조치 관련 관계자(실무자) 253명, 총 49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분리조치 관련 관계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피해 아동쉼터/일시보호시설/치료보호시설 실무자 등이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조치 초기에 대응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분리조치 이후 아동

의 생활환경 등을 지도·관리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일시보호시설/치료보호시설 실무자 등에게 조사하였다. 이중 설문 응답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여, 아동분리조치 아동은 134부, 실무자 251부, 부모/보호자 103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28〉 설문조사 대상 및 조사내용

구분	참여자 수	분석자료 수	조사내용
분리 조치 아동	136명	134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조치 절차 시 정보 제공, 동의 • 분리조치 기관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또래 관계 등 전반적 발달상황과 정서적 안정감 • 원가정과 접촉 및 원가정 복귀 지원 등
분리 조치 보호자	110명	10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조사 과정, 분리조치, 분리조치 기간 • 분리보호 조치 담당 실무자에 대한 인식 • 원가정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등
분리 조치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81명 - 학대 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치료보호시설 실무자 17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80명 - 학대 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치료보호시설 실무자 17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조치 절차, 분리조치의 한계 및 문제점 • 분리조치 아동, 보호자의 생활환경, 분리조치 아동의 교육환경 정서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 상태 점검 수준 • 분리조치 절차의 타 기관/타 관련자와의 의사소통과, 조정, 분리조치 절차의 아동인권 보호 수준 평가 • 분리조치 시 개선방안 등

2) 조사 도구

조사 내용은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분리조치 과정 및 이후의 아동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Zijlstra(2012), Ten Brummelaar, M.D.C. 외(2014), Ten Brummelaar, M.D.C. 외(2018), Middel, F. 외(2020)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성하였다.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 및 사회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Zijlstra(2012)와 Ten Brummelaar 외(2014) 그리고 Ten Brummelaar 외(2018)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회의를 걸쳐, 양육환경 및 사회환경 영역에 대해 아동용 설문 문항은 47문항, 실무자용 설문문항은 28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아동의 경우, 양육환경 및 사회환경 실태에 관한 문항의 신뢰도는 .664이고,

양육환경 및 사회환경 만족도 신뢰도는 .816이다. 실무자의 경우의 양육환경 및 사회환경 실태에 관한 문항의 신뢰도는 .844이다.

아동보호조사에서 참여 평가 도구(Meaningful Participation Assessment Tool, ten Brummelaar, M.D.C. et al. 2014)는 정보제공, 청문, 의사결정 영역에서 참여에 관한 문항을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도구의 문항을 토대로 연구진 회의를 거쳐 분리조치 과정의 참여 및 의사결정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아동, 실무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아동 .908이고, 실무자 .818이다.

보호자 관련 설문 도구는 2020년 스코틀랜드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부모의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Gary Clapton, 2020)과 Kennan, Forkan, Brady(2017)의 연구에서 실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과 지원에 관한 문항도 연구진 회의를 통해 구성하였다. Gary Clapton(2020)의 아동보호에 대한 부모의 경험에 대한 문항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34문항을 구성하였고, 신뢰도는 .919이다. 또한, Kennan, Forkan, Brady(2017)의 연구에서 실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9문항을 구성하였고, 신뢰도는 .963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술 분석,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활용하여 아동분리조치 과정에 대한 아동 참여, 아동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양육환경 및 사회환경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아동분리조치 전 과정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경험에 관한 내용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 중 주관식 응답에 대해서는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아동분리조치 아동의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

아동분리조치 아동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총 136명 중 불성실한 2명의 자

료를 제외하고 13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34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약 30% 내외로 조사되었다.

〈표 4-29〉 아동 대상자의 일반현황

(n=134)

학교급	n(%)	남자	여자
초등학교	44명(32.8%)	19명(43.2%)	25명(56.8%)
중학교	52명(38.8%)	20명(38.5%)	32명(61.5%)
고등학교	38명(28.4%)	17명(44.7%)	21명(55.3%)
전체	134명(100%)	56명(41.8%)	78명(58.2%)

(2) 분리조치 과정의 아동 참여 실태

아동보호조사에서 참여 평가 도구(Meaningful Participation Assessment Tool, ten Brummelaar, M.D.C. et al. 2014)를 활용하여 아동분리조치 과정에서 아동참여 및 의사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동은 '부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곳(분리보호 시설 혹은 기관 등)에 오는 각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8.1%, '부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선생님은 믿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6.6%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은 '부모와 헤어지는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 '이곳에 오기 전에 자신이 지내게 될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0%로 나타났다. 즉, 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아동 자신의 관련된 회의에 참석이 부족하고 아동 자신이 지낼 곳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는 않았다.

〈표 4-30〉 분리조치 과정의 아동 참여

(N=134)

내용	예		아니오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 없이 자랄 권리'에 대해 들어보았다.	98	73.1	36	26.9
2.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에 대해 들어보았다.	103	76.9	31	23.1
3.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110	82.1	24	17.9
4. 부모님과 헤어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108	80.6	26	19.4
5.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선의 도움이 될지에 대해 각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100	74.6	34	25.4
6. 이곳에 오기 전에 거쳤던 여러 과정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104	77.6	30	22.4
7. 이곳에 오기 전에 각 서비스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104	77.6	30	22.4
8. 이곳에 오기 전에 이곳의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110	82.1	24	17.9
9. 이곳에 오는 각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	118	88.1	16	11.9
10.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지내게 될 곳(시설, 기관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	67	50.0	67	50.0
11.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	94	70.1	40	29.9
12. 부모님과 헤어진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111	82.8	23	17.2
13.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었다.	121	90.3	13	9.7
14.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생님은 믿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돌만 안전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116	86.6	18	13.4
15.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56	41.8	78	58.2
16.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곳에 오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었다.	85	63.4	49	36.6

학교급 아동 대상으로 분리조치 과정에서 아동 참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31>과 같다.

<표 4-31> 학교급별 분리조치 과정의 아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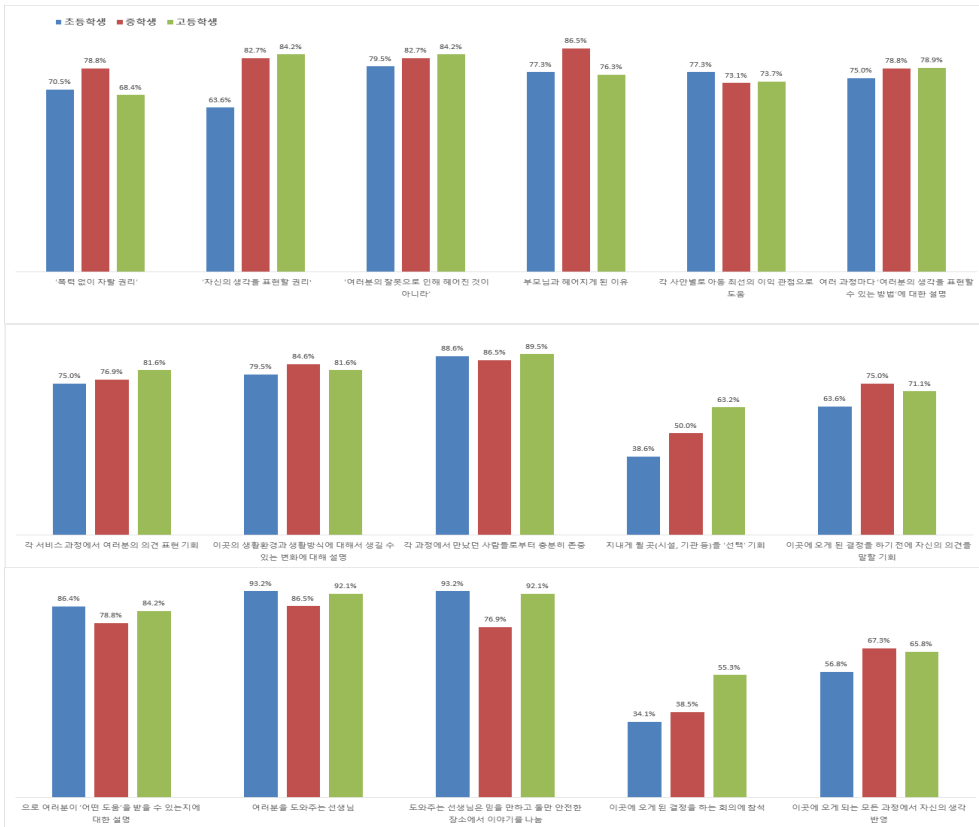
(N=134)

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 없이 자랄 권리'에 대해 들어보았다.	31	13	41	11	26	12
	70.5%	29.5%	78.8%	21.2%	68.4%	31.6%
2.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에 대해 들어보았다.	28	16	43	9	32	6
	63.6%	36.4%	82.7%	17.3%	84.2%	15.8%
3.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35	9	43	9	32	6
	79.5%	20.5%	82.7%	17.3%	84.2%	15.8%
4. 부모님과 헤어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34	10	45	7	29	9
	77.3%	22.7%	86.5%	13.5%	76.3%	23.7%
5.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선의 도움이 될 지에 대해 각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34	10	38	14	28	10
	77.3%	22.7%	73.1%	26.9%	73.7%	26.3%
6. 이곳에 오기 전에 거쳤던 여러 과정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33	11	41	11	30	8
	75.0%	25.0%	78.8%	21.2%	78.9%	21.1%
7. 이곳에 오기 전에 각 서비스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33	11	40	12	31	7
	75.0%	25.0%	76.9%	23.1%	81.6%	18.4%
8. 이곳에 오기 전에 이곳의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35	9	44	8	31	7
	79.5%	20.5%	84.6%	15.4%	81.6%	18.4%
9. 이곳에 오는 각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로 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	39	5	45	7	34	4
	88.6%	11.4%	86.5%	13.5%	89.5%	10.5%
10.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지내게 될 곳(시설, 기관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	17	27	26	26	24	14
	38.6%	61.4%	50.0%	50.0%	63.2%	36.8%
11.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	28	16	39	13	27	11
	63.6%	36.4%	75.0%	25.0%	71.1%	28.9%

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2. 부모님과 헤어진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38	6	41	11	32	6
	86.4%	13.6%	78.8%	21.2%	84.2%	15.8%
13.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었다.	41	3	45	7	35	3
	93.2%	6.8%	86.5%	13.5%	92.1%	7.9%
14.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생님은 믿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들만 안전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41	3	40	12	35	3
	93.2%	6.8%	76.9%	23.1%	92.1%	7.9%
15.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15	29	20	32	21	17
	34.1%	65.9%	38.5%	61.5%	55.3%	44.7%
16.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곳에 오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었다.	25	19	35	17	25	13
	56.8%	43.2%	67.3%	32.7%	65.8%	34.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부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었다', '이곳(분리보호 시설 혹은 기관 등)에 오는 각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6.5%~93.2%로 나타났지만, '부모와 헤어지는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자신이 지내게 될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8.6%~63.2%로 낮았다.

학교급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았고, 분리보호 시설 및 기관을 결정하기 전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 등의 응답 비율이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았다. 학급이 올라갈수록 아동이 지낼 곳에 대한 '선택' 기회,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학교급에 따른 자기표현의 기회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양육환경, 사회환경 실태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 및 사회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Zijlstra(2012)와 Ten Brummelaar 외(2014) 그리고 Ten Brummelaar 외(2018)의 자료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여 아동의 양육환경 및 사회환경 실태를 파악하였다.

① 양육환경 실태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 중 '식사와 간식은 영양이 풍부하다', '보호자가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호자와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보낸다', '하루 일과를 보내기 위해 아동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정할 때 아동이 참여할 수 있다', '돌봐주시는 보호자는 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참여자의 90%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연락하고(만나고) 있다’,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아동을 잘 이해하고 있다’,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모님은 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신다’, ‘아동에게 소중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연락하고 있다’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62.7%~67.2%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연 1~2회’가 39.6%(53명), ‘월 1~2회’가 26.1%(35명), ‘주 1~2회’ 이상이 15.7%(21명), ‘주 3회 이상’이 18.7%(25명)이다. 즉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와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2〉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환경 실태

(n=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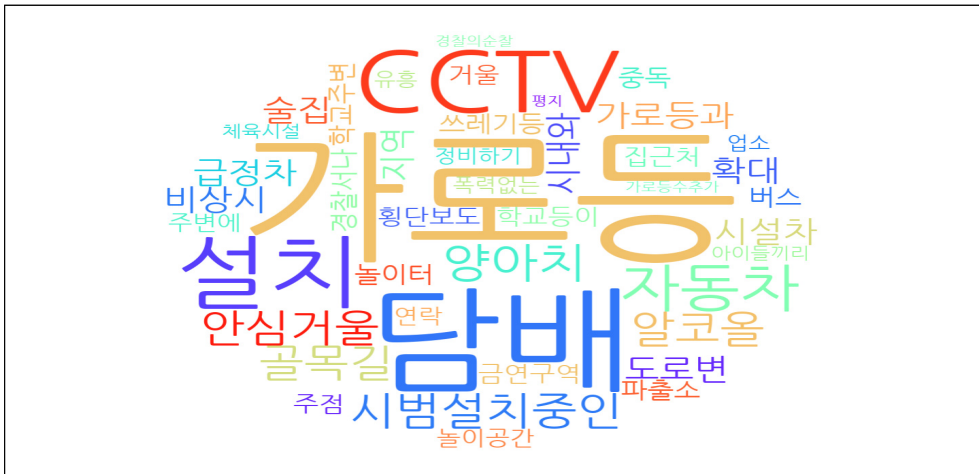
문항	예		아니오		
	n	%	n	%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	1. 식사와 간식은 영양이 풍부하다.	133	99.3	1	0.7
	2. 자기 방이나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107	79.9	27	20.1
거주지 안전: 주거공간 및 주거지 주변	3. 살고 있는 동네가 안전하고 깨끗하다.	125	93.3	9	6.7
	4. 살고 있는 동네에서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마주 칠 수 있다.	47	35.1	87	64.9
보호자와의 관계	5. 보호자가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123	91.8	11	8.2
	6. 보호자와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125	93.3	9	6.7
부모님과의 관계	8.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연락하고(만나고) 있다.	90	67.2	44	32.8
	9.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아동을 잘 이해하고 있다.	85	63.4	49	36.6
	10.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85	63.4	49	36.6
	11. 부모님(어느 한분이라도)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만났고) 있나요?	① 연 1~2회	53(39.6%)		
		② 월 1~2회	35(26.1%)		
③ 주 1~2회		21(15.7%)			
④ 주 3회 이상		25(18.7%)			

문항		예		아니오	
		n	%	n	%
규칙적인 생활	13.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보낸다.	131	97.8	3	2.2
	14. 하루 일과를 보내기 위해 아동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129	96.3	5	3.7
	15. 그 규칙을 정할 때 아동이 참여할 수 있다.	126	94.0	8	6.0
나에 대한 관심	17. '부모님'은 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신다.	87	64.9	47	35.1
	18. '돌봐주시는 보호자'는 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신다.	124	92.5	10	7.5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	21. 가족들로 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	95	70.9	39	29.1
	22. 아동에게 소중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연락하고 있다.	84	62.7	50	37.3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받고 있는 보살핌'이 달라질 수 있다면, 아동들은 개인방, 개인 공간이 있거나 자유롭게 핸드폰을 하거나, 개인 노트북 등을 소지할 수 있으면, 방배치가 자유로웠으면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바꿀 수 있다면, 아동들은 가로등, 안심겨울, CCTV 등의 설치, 놀이터, 담배(금연구역), 술집이나 유흥업소 줄이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돌봐주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아동들은 친밀, 친근, 화목, 가족 같은 관계, 사생활 보호, 평등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아동들은 같이 생활하거나, 자주 만나거나, 잔소리를 적게 하고 싸우지를 않았으며,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으면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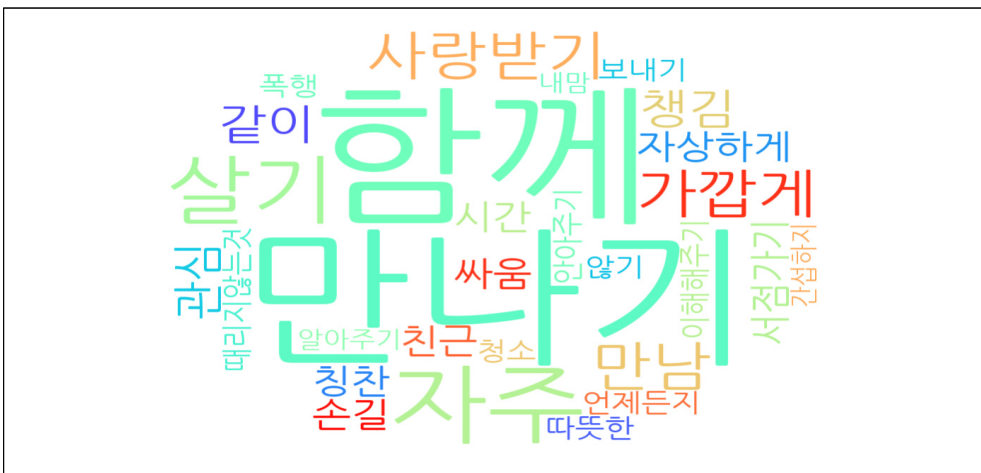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하루 일과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면, 아동들은 휴대폰 시간 늘리기, 늦잠, 차별 없는 규칙, 자유롭게, 노는 시간 늘리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자신에 대해’를 바꿀 수 있다면, 아동들은 자신감, 성격, 성실, 건강, 체력, 집중, 공부, 어리광 부리고 싶다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살핌’에 대해 바랄 수 있다면, 아동들은 사랑받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자주 만나고 싶다, 칭찬 받기 원한다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양육환경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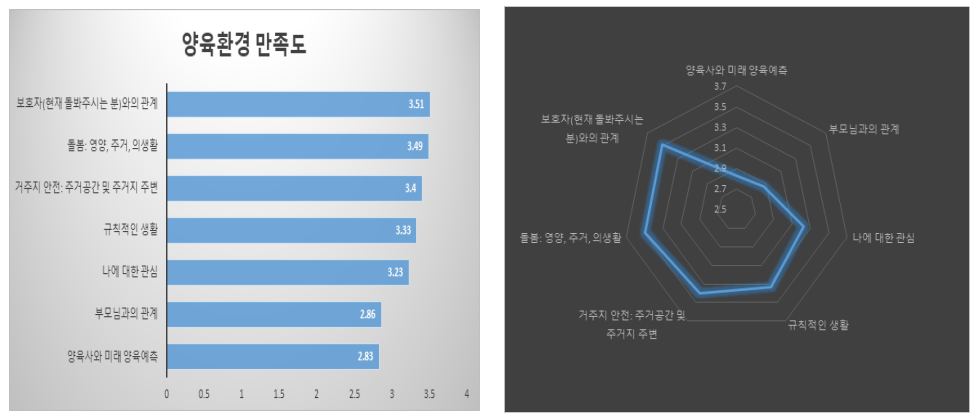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의 현재 양육환경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4점 만점에서 보호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51점,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49점이고, ‘거주지 안전’, ‘규칙적인 생활’, ‘아동에 대한 관심’은

3.23점~3.40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관계’,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에 관한 만족도는 2.83~2.86점으로 3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관계’,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에 대해 만족도가 낮았다.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표 4-33〉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환경 만족도

(n=134)

양육환경	M	SD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	3.49	0.62	2 (1.5%)	3 (2.2%)	56 (41.8%)	73 (54.5%)
거주지 안전: 주거공간 및 주거지 주변	3.40	0.61	1 (0.7%)	6 (4.5%)	66 (49.3%)	61 (45.5%)
보호자(현재 돌봐주시는 분)와의 관계	3.51	0.55	0 (0%)	3 (2.2%)	60 (44.8%)	71 (53.0%)
부모님과의 관계	2.86	1.13	24 (17.9%)	24 (17.9%)	33 (24.6%)	53 (39.6%)
규칙적인 생활	3.33	0.59	1 (0.7%)	5 (3.7%)	77 (57.5%)	51 (38.1%)
나에 대한 관심	3.23	0.65	2 (1.5%)	10 (7.5%)	77 (57.5%)	45 (33.6%)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	2.83	0.99	18 (13.4%)	24 (17.9%)	55 (41.0%)	37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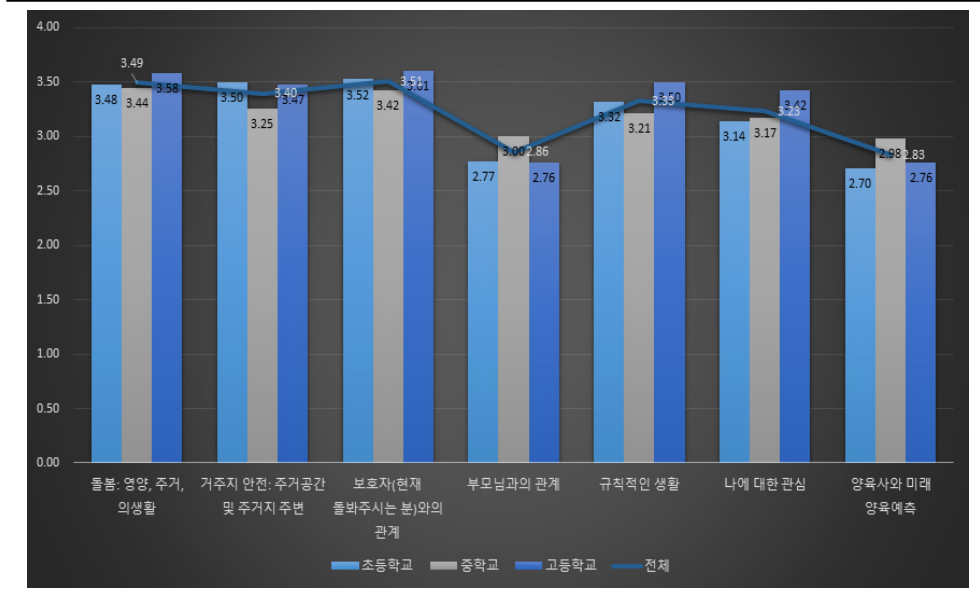


아동의 학급별 양육환경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중, 고등학생 간의 양육환경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4〉 분리보호된 아동의 학급별 양육환경 만족도

(n=134)

구분	초등학교(n=44)		중학교(n=52)		고등학교(n=38)		전체(n=134)		F
	M	SD	M	SD	M	SD	M	SD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	3.48	0.76	3.44	0.57	3.58	0.50	3.49	0.62	0.55
거주지 안전: 주거공간 및 주거지 주변	3.50	0.59	3.25	0.65	3.47	0.56	3.40	0.61	2.46
보호자와의 관계	3.52	0.59	3.42	0.54	3.61	0.50	3.51	0.54	1.26
부모님과의 관계	2.77	1.18	3.00	1.01	2.76	1.24	2.86	1.13	0.66
규칙적인 생활	3.32	0.52	3.21	0.64	3.50	0.56	3.33	0.59	2.75
나에 대한 관심	3.14	0.55	3.17	0.71	3.42	0.64	3.23	0.65	2.36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	2.70	1.05	2.98	0.83	2.76	1.10	2.83	0.99	1.05



③ 사회환경 실태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사회환경 중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 단체, 동아리 등은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 ‘아동의 사생활은 보장받고 있다’,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것(운동, 미술, 음악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학교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현재

친한 친구가 있다’는 참여자의 90%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분리보호 아동의 생활환경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이곳에 생활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옮겨야 했다’, ‘삶에서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49.3%~53.7%로 나타났다. 분리보호 되면서 학교를 옮기게 된 참여자는 절반정도 되며, 그로 인해 예전에 알고 있던 친구와 연락하는 것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5〉 분리보호된 아동의 사회환경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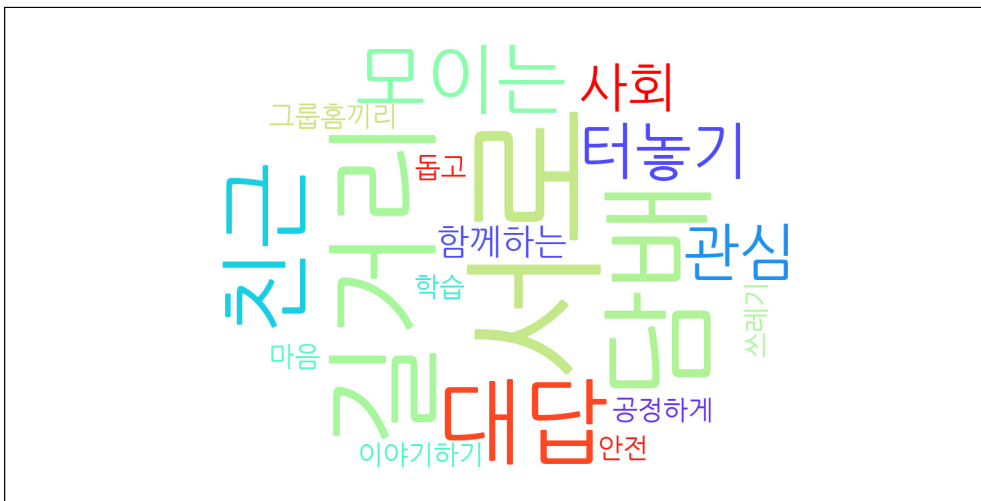
(n=134)

문항	예		아니오		
	n	%	n	%	
이웃(사람들)의 도움	1. 이웃사람이 친절하고 믿을만하여 안전하다.	117	87.3	17	12.7
	2. 이웃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거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03	76.9	31	23.1
	3. 이웃사람 중 의지할만한 사람들이 있다.	113	84.3	21	15.7
지역사회 지원 체계	4.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 단체, 동아리 등은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	126	94.0	8	6.0
	5.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 단체, 동아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다.	120	89.6	14	10.4
	6. 이웃사람들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15	85.8	19	14.2
차별과 존중	7. 아동의 사생활은 보장받고 있다.	121	90.3	13	9.7
	8. 아동은 차별받은 적이 있다.	43	32.1	91	67.9
학교생활	9. 이곳에 생활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옮겨야 했다.	69	51.5	65	48.5
	10. 현재 학교생활이 즐겁다.	118	88.1	16	11.9
	11.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것(운동, 미술, 음악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128	95.5	6	4.5
	12. 학교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126	94.0	8	6.0
친구 관계	13.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66	49.3	68	50.7
	14. 현재 친한 친구가 있다.	128	95.5	6	4.5
지난 생활 경험(삶의 경로)	15. 어릴 때, 이사를 자주 다녔다.	36	26.9	98	73.1
	16. 삶에서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	72	53.7	62	46.3
	17.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	106	79.1	28	20.9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사회환경에서 '이웃사람들의 도움'에 대해 바꿀 수 있다면, 아동들은 이웃들과 인사하기, 정겨운 대화, 서로 친절하게 대하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요청 무시하지 않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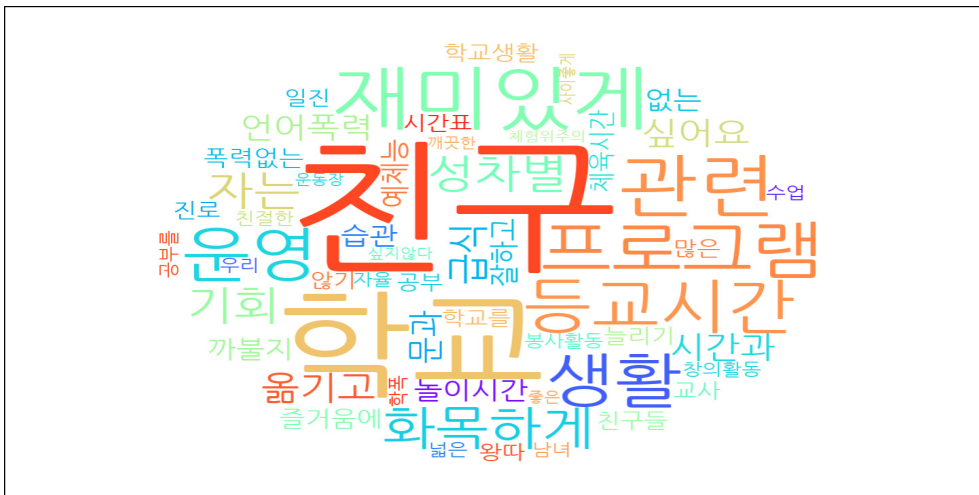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사회환경에서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대해 바꿀 수 있다면, 아동들은 친근하게,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기, 공정하게, 관심, 길거리에 담배 버리지 않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사회환경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동들은 타인 존중, 공손한 행동, 잘 듣기, 태도, 경청, 말투, 인내심, 예의바른 행동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사회환경에서 '학교생활'을 바꿀 수 있다면, 아동들은 친구를 더 사귀고 싶다, 학교 등교시간, 재미있게, 폭력 없는 학교, 등교시간을 좀 더 늦게, 학교 옮기고 싶지 않다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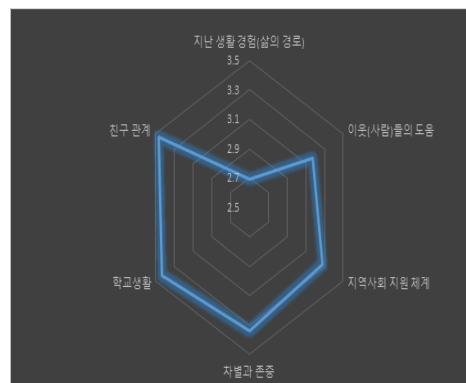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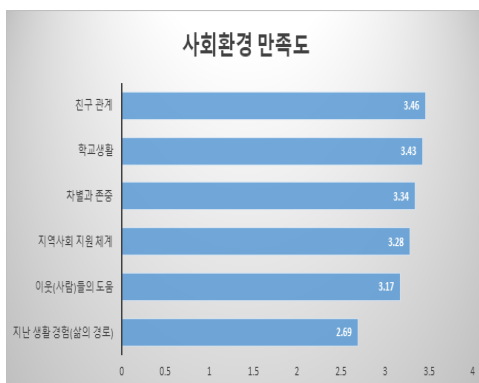
④ 사회환경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의 현재 사회환경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4점 만점에서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4점 이상이었고, ‘이웃(사람)들의 도움’, ‘지역사회 지원체계’, ‘차별과 존중’은 3.17~3.34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생활 경험(삶의 경로)’에 관한 만족도는 2.69점으로 3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향후 아동 인권향상을 위해 이웃(사람)들의 도움, 지역사회 지원체계, 차별과 존중에 관한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6〉 분리보호된 아동의 사회환경 만족도

(n=134)

사회환경	M	SD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이웃(사람)들의 도움	3.17	0.72	4 (3.0%)	13 (9.7%)	73 (54.5%)	44 (32.8%)
지역사회 지원 체계	3.28	0.67	2 (1.5%)	10 (7.5%)	71 (53.0%)	51 (38.1%)
차별과 존중	3.34	0.51	0 (0%)	2 (1.5%)	85 (63.4%)	47 (35.1%)
학교생활	3.43	0.69	2 (1.5%)	9 (6.7%)	52 (38.8%)	71 (53.0%)
친구 관계	3.46	0.64	2 (1.5%)	5 (3.7%)	57 (42.5%)	70 (52.2%)
지난 생활 경험(삶의 경로)	2.69	1.03	20 (14.9%)	38 (28.4%)	40 (29.9%)	36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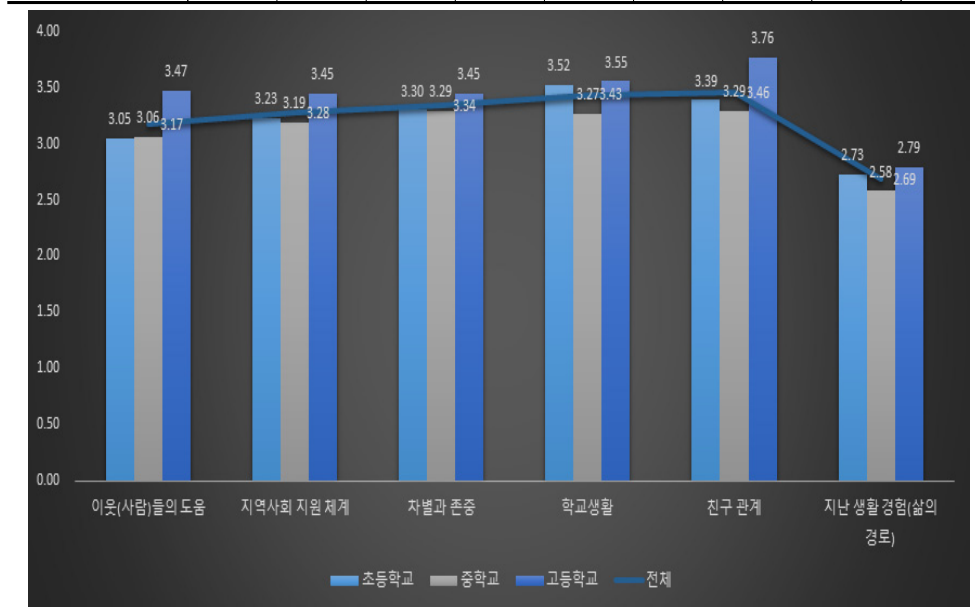


아동의 학교급별 사회환경 만족도는 ‘이웃(사람)들의 도움’, ‘친구 관계’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해 이웃사람들이 믿을만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고, 친구관계가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이웃들의 도움’,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분리보호된 곳에는 이웃사람들이 안전한지, 친구관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4-37〉 분리보호된 아동의 학급별 사회환경 만족도

(n=134)

구분	초등학교(n=44)		중학교(n=52)		고등학교(n=38)		전체(n=134)		F
	M	SD	M	SD	M	SD	M	SD	
이웃(사람)들의 도움	3.05b	0.68	3.06b	0.80	3.47a	0.56	3.17	0.72	4.94**
지역사회 지원 체계	3.23	0.60	3.19	0.74	3.45	0.60	3.28	0.66	1.82
차별과 존중	3.30	0.46	3.29	0.50	3.45	0.55	3.34	0.50	1.30
학교생활	3.52	0.55	3.27	0.79	3.55	0.65	3.43	0.69	2.48
친구 관계	3.39b	0.58	3.29b	0.72	3.76a	0.49	3.46	0.64	6.89**
지난 생활 경험(삶의 경로)	2.73	1.06	2.58	0.98	2.79	1.07	2.69	1.03	0.52



5) 아동분리조치 관련 실무자의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

아동분리조치 관련 실무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실무자는 총 253명 중 불성실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5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51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4-38>와 같다. 아동분리조치 관련 실무자들 중 설문조사에 응답자들은 여자가 79.68%(200명)를 차지하였고, 연령대는 30대가 91명(36.25%), 40대 67명(26.69%), 50대 이상이 93명(37.0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소속은 공공기관이 42.63%(107명), 민간기관 소속이 57.40%(144명)이었고, 직군을 살펴보면, 아동분리조치 시 조사과정 관련 실무자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5.14%, 아동보호전담요원 12.35%, 경찰 2.79%, 아동보호전문상담원 1.59%이고, 아동분리조치 이후 생활 시설 관련 실무자들은 171명(68.13%) 차지하였다. 전체 실무자 중 양육시설 직원이 26.29%, 공동생활가정 직원이 10.76%,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31.0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38> 실무자 대상자의 일반현황

구분		n	%	비고
성별	남자	51	20.32	
	여자	200	79.68	
연령대	30대	91	36.25	
	40대	67	26.69	
	50대 이상	93	37.05	
소속	공공기관	107	42.63	
	민간기관	144	57.40	
직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8	15.14	80 (31.87%)
	아동보호전담요원	31	12.35	
	아동보호전문상담원	4	1.59	
	경찰	7	2.79	171 (68.13%)
	아동 양육시설 직원	66	26.29	
	공동생활가정 직원	27	10.76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78	31.08	

(2) 분리조치 과정의 아동 참여 실태

아동보호조사에서 참여 평가 도구(Meaningful Participation Assessment Tool, ten Brummelaar, M.D.C. et al. 2014)를 활용하여 아동분리조치 과정에서 아동참여 및 의사표현에 대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실무자는 ‘아동에게 ‘학대 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안내하였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87.3%, 88.8%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아동의 잘못으로 인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86.1%,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83.7%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은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학대 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 ‘아동의 잘못으로 인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아동분리보호 결정 회의에서 아동, 부모/보호자를 참여시켰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39.8%이고, ‘아동이 분리되어 보호받아야 할 시설(기관 등)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5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결과에서도 유사하였다. 앞으로 분리보호 조사 과정에서 분리보호 결정 회의에서 대상자(아동, 부모/보호자 등)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분리보호 시설 가기 전에 대상자(아동)이 살 공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4-39〉 실무자가 인식한 아동분리조치 과정의 아동 참여

(n=251)

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n	%	n	%	n	%
1.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학대 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	219	87.3	8	3.2	24	9.6
2.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아동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	223	88.8	3	1.2	25	10.0
3.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아동의 잘못으로 인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216	86.1	6	2.4	29	11.6
4. 아동에게 부모와 떨어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	211	84.1	16	6.4	24	9.6
5.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의 도움이 될 지에 대해 각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206	82.1	13	5.2	32	12.7
6.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을 설명을 하였다.	210	83.7	11	4.4	30	12.0
7.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생긴 일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들었다.	198	78.9	20	8.0	33	13.1
8. 아동이 분리되어 보호 될 곳의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207	82.5	9	3.6	35	13.9
9.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과 부모를 존중하였다.	188	74.9	9	3.6	54	21.5
10. 아동이 분리되어 보호받아야 할 시설(기관 등)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49	59.4	39	15.5	36	25.1
11. 아동분리보호 결정을 하기 전에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181	72.1	13	5.2	57	22.7
12.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아동에게 알려주었다.	194	77.3	11	4.4	46	18.3
13. 아동분리보호 과정 중에 아동과 아동보호전문요원(아동학대상담원 등)이 만나게 하였다.	202	80.5	6	2.4	43	17.1
14. 아동분리보호 과정 중에 아동과 아동보호전문요원(아동학대상담원 등)이 둘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205	81.7	7	2.8	39	15.5
15. 아동분리보호 결정 회의에서 아동, 부모님(보호자)을 참여시켰다.	100	39.8	65	25.9	86	34.3
16.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전 과정에서 아동의 생각이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188	74.9	24	9.6	39	15.5



(3) 실무자가 인식한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양육환경, 사회환경 실태

① 양육환경 실태

실무자들이 인식한 아동분리조치된 아동의 양육환경 중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과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다', '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등의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은 85% 이상이었다. 분리보호 되어 있는 곳에 보호자들은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아동에게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아동이 부모와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이 부모, 가족으로부터 항상 보살핌을 받고 있다’, ‘아동이 소중했던 사람들(조부모, 친인척 등)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31.9%~56.2%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보살핌이나 양육사와 미래예측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의 경우도 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0〉 실무자가 인식한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환경 실태

(n=251)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	1. 영양이 풍부한 식사와 간식, 입을 충분한 옷, 필요한 개인소지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9	83.3	7	2.8	35	13.9
	2. 아동이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6	78.1	18	7.2	37	14.7
거주지 안전: 주거공간 및 주거지 주변	3. 아동이 살고 있는 주변 동네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213	84.9	16	6.4	22	8.8
보호자 관계	4.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221	88.0	5	2.0	25	10.0
	5. 아동과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227	90.4	7	2.8	17	6.8
부모/보호자의 행동	6. 아동이 부모와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106	42.2	106	42.2	39	15.5
	7. 아동에게 현재와 미래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8	78.9	22	8.8	31	12.4
규칙적인 생활	8. 아동의 연령과 아동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루의 일과를 보내게 하고 있다.	210	83.7	7	2.8	34	13.5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아동에 대한 관심	9. 아동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다.	223	88.8	2	0.8	26	10.4
	10. 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 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225	89.6	4	1.6	22	8.8
	11. 아동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15	85.7	9	3.6	27	10.8
	12. 아동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13	84.9	10	4.0	28	11.2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	13. 아동이 부모, 가족으로부터 항상 보살핌을 받고 있다.	80	31.9	136	54.2	35	13.9
	14. 아동이 소중했던 사람들(조부모, 친인척 등)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41	56.2	73	29.1	37	14.7

② 사회환경 실태

실무자가 인식한 분리조치된 아동의 사회환경 중 ‘모든 아동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아동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있다’, ‘아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참여 실무자의 90%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분리보호 조치 과정의 실무자들이 아동을 차별 없이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아동이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64.9%, ‘아동과 이웃사람들이 인사 나누거나 함께 어울리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61.8%로 나타났다. 아동이 예전 친구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이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낸 친구들과 연락하는 비율 절반 밖에 되지 않은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 확인되었다. 아동과 이웃사람들이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이웃(사람)들과 지역사회 내 지원 체계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70%대이므로 지역사회 내 지원 체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이해된다.

〈표 4-41〉 실무자가 인식한 분리보호된 아동의 사회환경 실태

(n=251)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이웃(사람)들과 지역사회 내 지원	1. 전반적으로 아동의 주변 환경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199	79.3	37	14.7	15	6.0
	2. 아동과 이웃사람들이 인사 나누거나 함께 어울리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55	61.8	46	18.3	50	19.9
	3. 아동이 의지할만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181	72.1	39	15.5	31	12.4
	4. 아동이 현재, 미래 행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186	74.1	38	15.1	27	10.8
	5. 아동 주변 사람들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	79.7	33	13.1	18	7.2
차별과 존중	6. 모든 아동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228	90.8	9	3.6	14	5.6
	7. 아동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있다.	232	92.4	3	1.2	16	6.4
	8. 아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235	93.6	4	1.6	12	4.8
학교생활	9.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25	89.6	3	1.2	23	9.2
	10. 아동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5	81.7	13	5.2	33	13.1
친구 관계	11. 아동이 여기 오기 전의 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163	64.9	34	13.5	54	21.5
	12.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또래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8	78.9	12	4.8	41	16.3
	13. 또래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9	83.3	10	4.0	32	12.7
지난 생활 경험(삶의 경로)	14.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 사회적 지원 등 아동의 생활환경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	80.1	27	10.8	23	9.2
	15. 아동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190	75.7	43	17.1	18	7.2
지난 생활 경험(삶의 경로)	16. 아동의 삶(인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앞으로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25	89.6	11	4.4	15	6.0

(4)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실무자들은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할 수 있는 서비스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9%이고,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9%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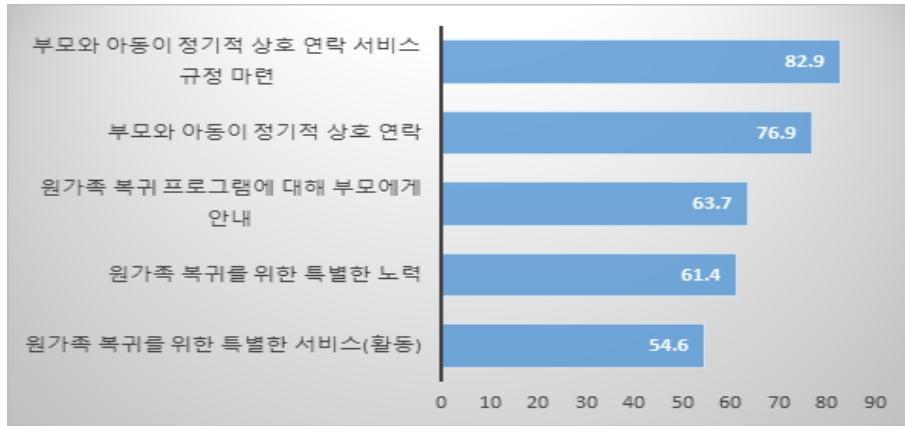
원가정 복귀를 위해, ‘기관이나 시설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는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54.6%이고,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였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해 보호자에게 안내를 하였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63.7%로 나타났다.

원가정 복귀를 위해 정기적으로 상호연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지만, 특별한 서비스나 노력은 응답자 중 50~60% 정도이므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표 4-42〉 실무자가 인식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n=251)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1.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서비스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08	82.9	13	5.2	30	12.0
2.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3	76.9	14	5.6	44	17.5
3. 원가정 복귀를 위해, 특별히 중점 두는 서비스(활동)가 있다.	137	54.6	58	23.1	56	22.3
4. 원가정 복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다.	154	61.4	3	14.7	60	23.9
5.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보호자에게 안내를 하였다.	160	63.7	16	6.4	75	29.9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연락 한 빈도를 살펴보니, 월1~2회 비율이 40.6%로 가장 많았고, 주 3회 이상이 6.4%로 가장 낮았다.

〈표 4-43〉 실무자가 인식한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 상호연락 빈도

(n=251)

구분	n	%
연 1~2회	31	12.4
월 1~2회	104	40.6
주 1~2회	44	17.5
주 3회 이상	16	6.4
해당사항 없음	58	23.1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하고 있다면, 연락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주로 정기적인 만남, 전화를 하고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보호자 연락두절이나 아동 거부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특별히 중점 두는 서비스(활동)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참여, 가족여행, 관계 개선, 기본생활 습관, 부모면담 및 교육,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은 정기적인 소통, 만남, 연락, 상담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원가정 복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원가정이나 부모, 아동이 서로 관계 형성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해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장애요인으로 부모의 인식, 변화지 않는 부모, 양육의지, 재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5) 유관기관 및 실무자 간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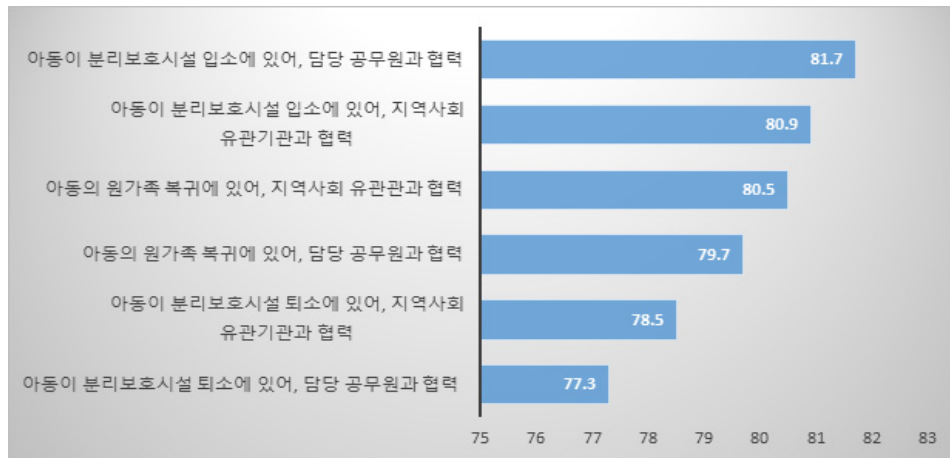
아동이 분리보호시설(쉼터 등) 입소과정에서 담당공무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력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원가정 복귀 과정, 퇴소과정에서 담당공무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이 75.9%~78.5%로 입소 과정에 비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동이 분리 보호시설 입소과정도 중요하지만, 원가정 복귀하고 퇴소하는 과정에서는 유관기관 및 공무원 간의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4-44> 실무자가 인식한 유관기관 및 실무자 간의 협력

(n=251)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1. 아동이 분리보호시설(쉼터 등) 입소에 있어, 담당 공무원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5	81.7	25	10.0	21	8.4
2.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있어, 담당 공무원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0	79.7	31	12.4	20	8.0
3. 아동이 분리보호시설(쉼터 등) 퇴소에 있어, 담당 공무원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94	77.3	32	12.7	25	10.0
4. 아동이 분리보호시설(쉼터 등) 입소에 있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3	80.9	29	11.6	19	7.6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5.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있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2	80.5	29	11.6	20	8.0
6. 아동이 분리보호시설(쉼터 등) 퇴소에 있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97	78.5	31	12.4	23	9.2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 주기적인 연락, 공유, 소통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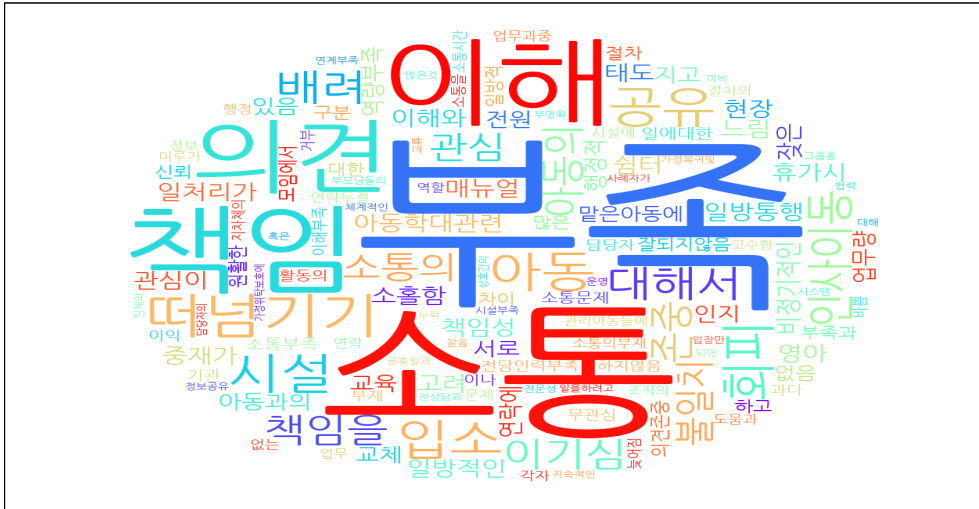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장 이해 부족, 소통 부족, 공무원의 업무 과중, 업무 처리 속도, 책임 떠넘기기 등이라고 언급하였다.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연락, 의사소통, 주기적인 소통, 주체별 역할 협의, 정보 공유 등이라고 언급하였다.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하여, 역사화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이해 부족, 소통 부족, 과도한 업무, 책임 떠넘기기 등이라고 언급하였다.



6) 아동분리관련 부모/보호자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

아동분리조치 전 과정에서의 부모/보호자의 경험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보호자는 총 110명이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누락된 응답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10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표 4-45>와 같다. 부모/보호자 응답자들은 여자가 72.8%(75명)이고 남자가 27.2%(28명)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50대가 48.5%(50명)로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30대가 21.4%(31명), 40대가 30.1%(31명)이 참여하였다. 자녀수는 1명이 30.1%(31명), 2명이 34.0%(35명), 3명 이상이 35.9%(37명)로 나타났다.

〈표 4-45〉 부모/보호자의 일반현황

(n=103)

구분		n	%
성별	남자	28	27.2
	여자	75	72.8
연령대	30대	22	21.4
	40대	31	30.1
	50대 이상	50	48.5
자녀수	1명	31	30.1
	2명	35	34.0
	3명 이상	37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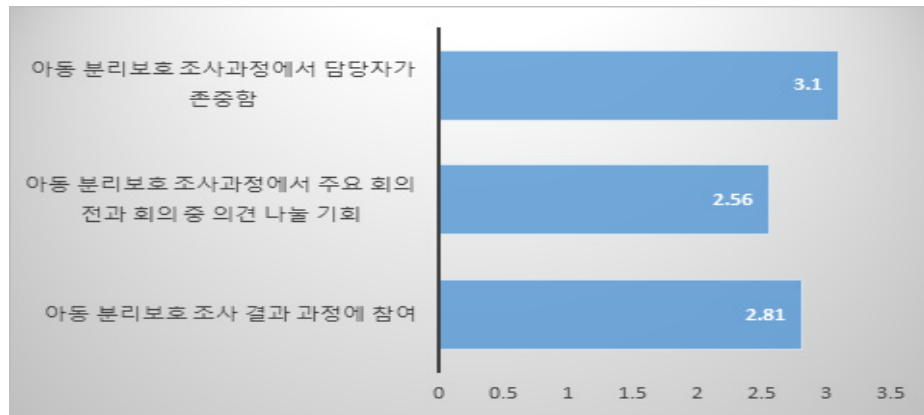
(2)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의 부모/보호자의 경험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의 부모/보호자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조사과정에서 부모/보호자를 참여를 ‘항상’, ‘자주’라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57.3%(59명)로 나타났다. 부모/보호자를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주요 회의 전과 회의 중 의견 나눌 기회에 대해 ‘항상’, ‘자주’라고 응답한 46.6%(48명),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존중받았다고 느낌은 ‘항상’, ‘자주’라고 응답한 비율은 70.9%(73명)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부모/보호자는 의견 나눌 기회 및 참여 기회에 대해 응답자 절반정도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의 부모/보호자의 회의 참여 및 의견 나눌 기회가 좀 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6〉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의 부모/보호자의 경험

(n=103)

문항	M (SD)	항상	자주	드물게	전혀	해당 없음
아동분리보호 조사 결과 과정에 참여	2.81 (1.06)	31 (30.1%)	28 (27.2%)	21 (20.4%)	14 (13.6%)	9 (8.7%)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주요 회의 전과 회의 중 의견 나눌 기회	2.56 (0.99)	20 (19.4%)	28 (27.2%)	32 (31.1%)	15 (14.6%)	8 (7.8%)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담당자가 존중함	3.10 (0.96)	39 (37.9%)	34 (33.0%)	12 (11.7%)	9 (8.7%)	9 (8.7%)



‘아동분리보호 조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명)이었고, ‘아동분리보호 조사가 부모/보호자의 취업이나 향후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17.5%(18명)이었다. 아동분리보호 조사 때문에 경제활동, 직업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었다.

〈표 4-47〉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의 부모/보호자의 경험

(n=103)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아동분리보호 조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8	7.8	79	76.7	16	15.5
아동분리보호 조사가 취업, 향후 직업 선택에 영향	18	17.5	73	70.9	12	11.7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만난 담당자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34점(SD=1.97)로 나타났다.

아동분리보호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부모/보호자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강에 영향을 줌
솔직히 나에게 크게 다가온 피해는 없었다. 다소 심적으로 힘든 기간이었을 뿐..
죄인입니다.
자존감 저하, 자존감에 영향, 자존감이 떨어짐 '조사를 받는다 걸로 자존감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취조식 질문 지양 요청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해당기관으로 문의를 일일이 하고 데리고 다니는 과정이 어려웠었다.
조사기간 지원이 없었다
아동이 생각하기 싫은 것을 자주 질문(예: 성폭력 아동)
아동의 의견만 수용됨
아동인권 존중에 비해 어른 인권 비존중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했음 좋겠음

(3) 아동분리보호 조치 관련 부모/보호자의 경험

아동분리보호조치 관련 부모/보호자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48>과 같다.

‘자녀가 분리조치 되어 보호시설에 있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74.8%(77명) 이었고, 가족과 함께 보호시설로 분리된 경우는 28.2%(29명), 자녀들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는 55.3%(57명) 이었다. 분리조치 되어 새로운 환경에 있으면서 가족이나 형제자매들과 함께 분리조치 되면 적응에 어려움을 덜하겠지만, 형제자매들 각각 분리된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 나타났다. 향후 분리보호 조치 시 형제자매를 분리보호 할 때는 같은 곳으로 분리보호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형제자매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동법 제17조(1A)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지원하는 지침이 발표되어 있다. 이런 사례처럼, 우리나라 역시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에게 형제자매가 있을 때에 형제자매 관계 유지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분리보호조치된 이유에 대해 부모/보호자는 그에 대한 이유를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79.6%(82명)로 나타났다. 분리보호조치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도 20.4%(21명)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응답하고 있다. 즉, 아동분리보호조치 이유에 대한 부모/보호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표 4-48〉 아동분리보호조치 관련 부모/보호자의 경험

(n=103)

문항	예		아니오	
	n	%	n	%
분리조치 되어 보호시설에 있다.	77	74.8	26	25.2
가족과 함께 보호시설로 분리	29	28.2	74	71.8
자녀들 각각 떨어져 있다.	57	55.3	46	44.7
분리조치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다.	82	79.6	21	20.4
다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39	37.9	64	62.1

아동분리보호조치 기간을 살펴본 결과, 2년 이상 분리된 경우가 49.5%(51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3개월 미만이 22.3%(23명),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14.6%(15명),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 13.6%(14명)으로 나타났다.

〈표 4-49〉 분리보호조치 기간

(n=103)

구분	n	%
3개월 미만	23	22.3
3개월 이상~1년 미만	15	14.6
1년 이상~2년 미만	14	13.6
2년 이상	51	49.5

아동분리보호조치된 이후 도움을 받은 경험을 확인한 결과 56.3%(58명) 절반 정도는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가정복귀 후 도움 받은 경험도 48.5%(50명)

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분리보호조치 이후 부모/보호자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50〉 아동분리보호조치된 이후 부모/보호자의 도움 받은 경험

(n=103)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분리조치된 이후 도움 받은 경험	58	56.3	24	23.3	21	20.4
가정복귀 후 도움 받은 경험	50	48.5	29	28.2	24	23.3

아동분리보호조치된 이후 위탁 혹은 입양된 경우는 응답자의 19.4%(20명)이었고, 위탁 혹은 입양된 자녀와 연락한 비율은 80.0%(16명)으로 나타났다.

〈표 4-51〉 아동분리보호조치 후 위탁 혹은 입양된 부모/보호자의 경험

(n=103)

문항	예		아니오	
	n	%	n	%
위탁 혹은 입양되었다.	20	19.4	83	80.6
위탁 혹은 입양된 경우, 자녀와 연락	16	80.0	4	20.0

아동이 '위탁 혹은 입양된 경우, 자녀와 연락한다'고 응답은 80.0%(16명)이었고, 주로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하였다.

(4) 아동분리보호 기간 부모/보호자의 경험

아동분리보호 기간 부모/보호자와 자녀와의 연락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52〉와 같다. 자녀와 연락한 경험은 응답자의 76.7%(79명)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만나거나 연락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6.3%(58명)로 나타났다. 아동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만나거나 연락한 비율이 절반정도이다. 분리보호 기간에 있으면서 아동의 정서 문제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아동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만남, 연락이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이해된다.

〈표 4-52〉 아동분리보호 기간 부모/보호자의 연락

(n=103)

문항	예		아니오	
	n	%	n	%
분리조치 기간, 자녀와 연락한 경험	79	76.7	24	23.3
자녀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연락	58	56.3	45	43.7

아동분리보호 기간에 자녀가 있는 곳에서 자녀와 연락할 수 있는 시설(도구)의 충분성을 확인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85점(SD=1.27)으로 나타났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설(도구)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부모/보호자 간의 연락을 취하는 시설(도구) 충분성에 대한 평가가 격차가 큰 편이다.

아동분리보호 기간에 부모/보호자와 자녀가 연락하는 빈도는 ‘월 1~2회’가 43.7%(45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연 1~2회’가 25.2%(26명), ‘주 3회 이상’이 17.5%(18명), ‘주 1~2회’가 13.6%(14명)로 나타났다.

〈표 4-53〉 자녀와 연락하는 빈도

(n=103)

구분	n	%
연 1~2회	26	25.2
월 1~2회	45	43.7
주 1~2회	14	13.6
주 3회 이상	18	17.5

아동분리보호 기간, 자녀와 연락을 취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응답자의 68.0%(70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연락하거나 만나는 횟수가 달라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45.6%(47명)로 나타났다.

정기적 만남이나 연락이 중단된 적이 담당 공무원 혹은 담당 실무자로 인한 비율은 5.8%(6명)이 있었다. 정기적인 만남이나 연락이 중단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 담당 실무자들은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과 담당자로 인한 중단이 발생하였다고 5%가 응답한 것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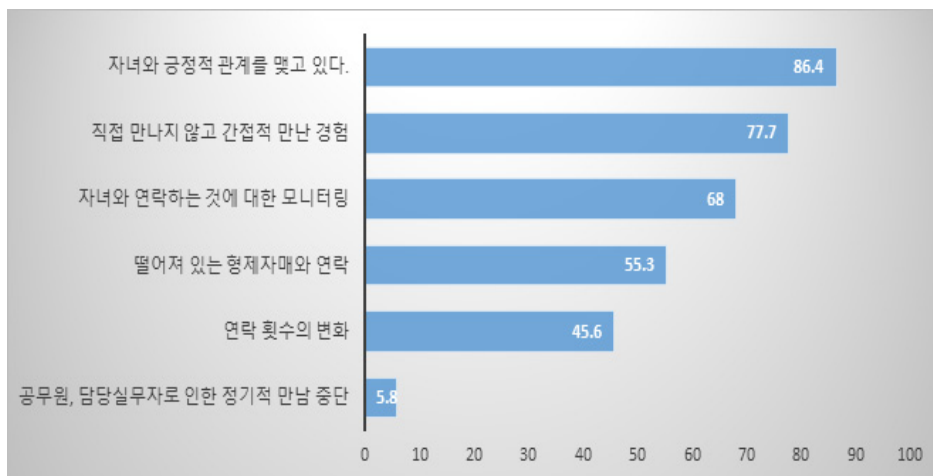
아동분리보호 기간에 부모/보호자와 자녀가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만난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77.7%(80명)이 응답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접적 만남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분리보호 기간에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와 연락한 비율은 55.3%(57명)으로 나타났다. 아동분리보호 기간에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을 때, 86.4%(89명)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부모/보호자는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이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낮았다. 아동과 부모/보호자 간의 긍정적 관계를 맺기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표 4-54〉 아동분리보호조치 관련 부모/보호자의 경험

(n=103)

문항	예		아니오	
	n	%	n	%
자녀와 연락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70	68.0	33	32.0
연락 횟수의 변화	47	45.6	56	54.4
공무원, 담당 실무자로 인한 정기적 만남 중단	6	5.8	97	94.2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적 만남 경험	80	77.7	23	22.3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와 연락	57	55.3	46	44.7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	89	86.4	14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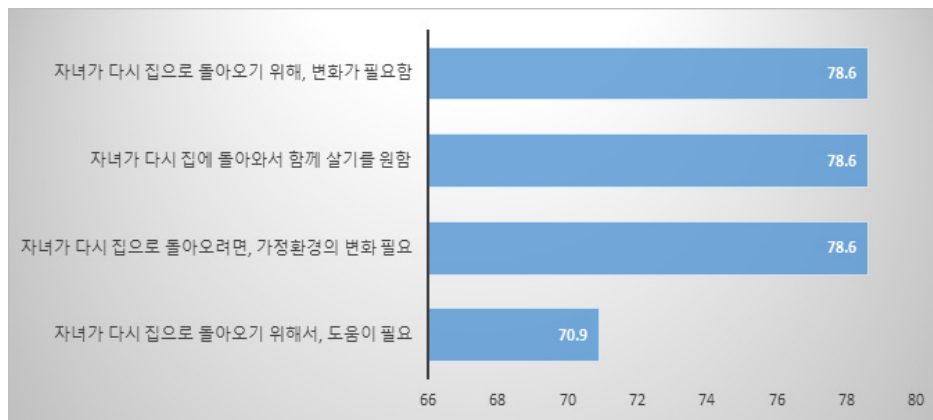
(5)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과 지원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부모/보호자들은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부모/보호자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기 원하다’, ‘자녀가 원가정 복귀하기 위해, 가정환경의 변화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6%로 나타났다.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70.9%로 나타났다.

〈표 4-55〉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과 지원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

(n=103)

문항	예		아니오	
	n	%	n	%
1. 자녀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함께 살기를 원함	81	78.6	22	21.4
2.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함	81	78.6	22	21.4
3.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면, 가정환경의 변화 필요	81	78.6	22	21.4
4.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	73	70.9	30	29.1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보호자의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경제적 여건, 양육태도, 책임감, 가정환경, 질병치료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원가정 복귀를 위해, 가정환경의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방정리, 안정적 환경, 깨끗하고 깔끔한 생활환경, 방마련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원가정 복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양육도움, 경제적 도움, 심리상담, 부모교육, 양육방법 조언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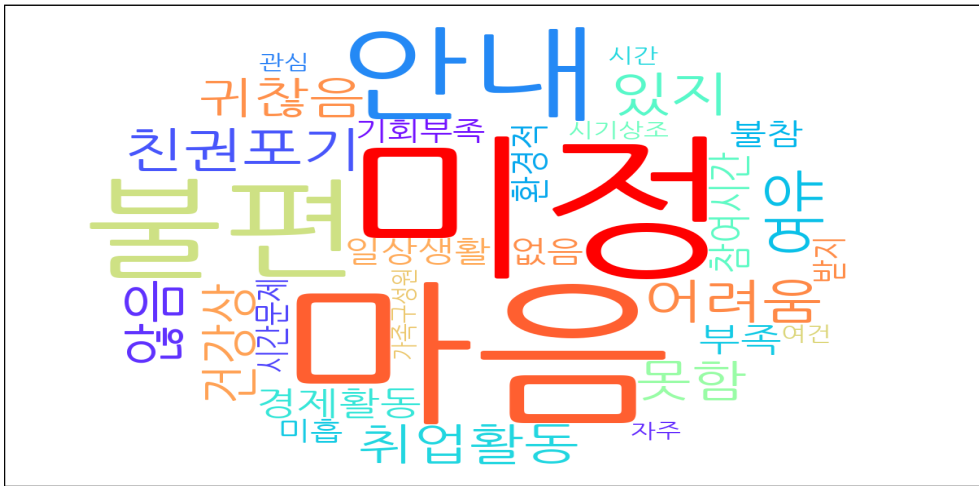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81.6%(84명)로는 ‘예’라고 응답하였고,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자인 84명 중,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47명)으로 나타났다.

〈표 4-56〉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

문항	예		아니오	
	n	%	n	%
1.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받은 경험	84	81.6	19	18.4
2.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받고, 현재 프로그램 참여	47	55.9	37	44.1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해서, 취업활동 어려움, 시간상 문제, 참여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참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98점(SD=1.05)이었다.

〈표 4-57〉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

(n=47)

문항	M (SD)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98 (1.05)	2 (4.3%)	2 (4.3%)	8 (17.0%)	18 (38.3%)	17 (36.2%)

분리된 자녀와 연락한 경험에 대해 부모/보호자에 관한 의견으로, 눈치 보지 않고 만났으며, 더 많이 만났으며,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며, 잠깐씩이라도 자주 만났으며, 항상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부모/보호자의 지원 및 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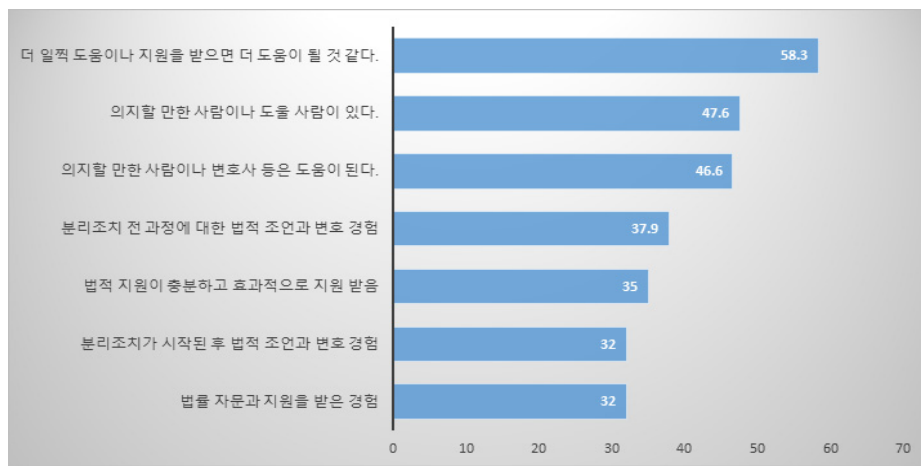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부모/보호자의 지원 및 옹호에 관해 경험을 살펴본 것을 보면, 다음 〈표 4-58〉과 같다. 부모/보호자들은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법률 및 의지할만한 지원이나 도움이 더 일찍 받았더라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8.3%(60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실제적으로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법률 자문과 지원’, ‘법적 조언과 변호 경험’, ‘법적 지원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 받음’은 응답자의 3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향후에는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부모/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4-58〉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부모/보호자의 지원 및 옹호

(n=103)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n	%	n	%	n	%
1. 법률 자문과 지원을 받은 경험	33	32.0	49	47.6	21	20.4
2. 분리조치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조언과 변호 경험	39	37.9	41	39.8	23	22.3
3. 분리조치가 시작도니 후 법적 조언과 변호 경험	33	32.0	47	45.6	23	22.3
4. 법적 지원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 받음	36	35.0	41	39.8	26	25.2
5.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도울 사람이 있다.	49	47.6	33	32.0	21	20.4
6.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변호사 등은 도움이 된다.	48	46.6	31	30.1	24	23.3
7. 더 일찍 도움이나 지원을 받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60	58.3	19	18.4	24	23.3



아동분리보호조치 중 받았던 지원에 대해 추가적 의견으로 부모/보호자는 경제적 도움, 법률 자문, 법률 자문 외에도 심리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아동분리보호조치 담당 실무자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

아동분리보호조치 담당 실무자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4-59>와 같다. 부모/보호자가 인식하기에 ‘자녀에 대한 보살핌, 안전 및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3.92점(SD=0.97)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 상황에 대한 우려사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응답한 평균 점수가 3.87점(SD=0.90)이고, ‘자녀를 돕기 위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실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였다’(M=3.83, SD=0.94) 등의 순이었다. 부모/보호자가 인식하기에 담당 실무자가 아동의 안전, 보살핌 및 발생 사건에 대한 확인, 가족사항에 대한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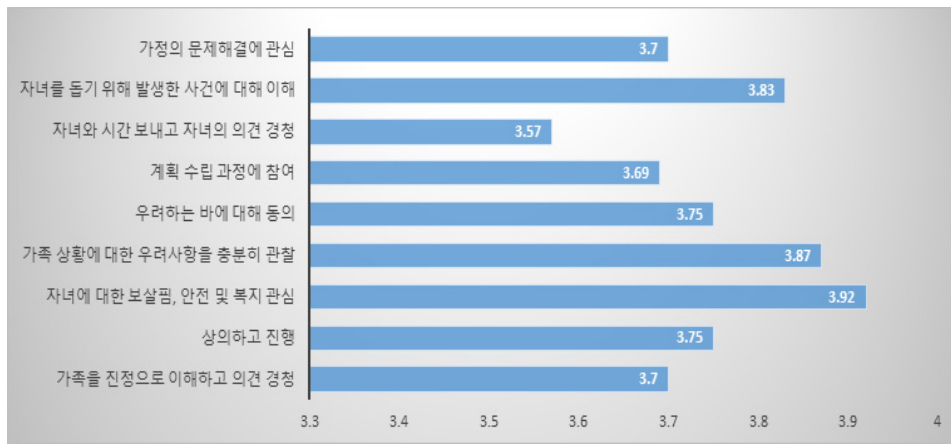
반면,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녀는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평균 3.57점(SD=0.99)으로 나타났다. 즉, 실무자는 사건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인식하고 말하는지에 대해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9> 아동분리보호조치 담당 실무자에 관한 부모/보호자의 인식

(n=103)

아동분리보호조치 담당자	M	SD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의견 경청	3.70	0.90	1 (1.0%)	7 (6.8%)	34 (33.0%)	41 (39.8%)	20 (19.4%)
상의하고 진행	3.75	0.92	1 (1.0%)	6 (5.8%)	35 (34.0%)	37 (35.9%)	24 (23.3%)
자녀에 대한 보살핌, 안전 및 복지 관심	3.92	0.97	2 (1.9%)	4 (3.9%)	28 (27.2%)	35 (34.0%)	34 (33.0%)
가족 상황에 대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관찰	3.87	0.90	1 (1.0%)	4 (3.9%)	31 (30.1%)	38 (36.9%)	29 (28.2%)
우려하는 바에 대해 동의	3.75	0.87	1 (1.0%)	5 (4.9%)	34 (33.0%)	42 (40.8%)	21 (20.4%)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	3.69	0.92	1 (1.0%)	8 (7.8%)	34 (33.0%)	39 (37.9%)	21 (20.4%)

아동분리보호조치 담당자	M	SD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녀와 시간 보내게 하고 자녀에 의견 경청	3.57	0.99	5 (4.9%)	6 (5.8%)	34 (33.0%)	41 (39.8%)	17 (16.5%)
자녀를 돕기 위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해	3.83	0.94	3 (2.9%)	3 (2.9%)	29 (28.2%)	42 (40.8%)	26 (25.2%)
가정의 문제해결에 관심	3.70	0.96	2 (1.9%)	7 (6.8%)	34 (33.0%)	37 (35.9%)	23 (22.3%)



부모/보호자는 아동분리보호조치 담당 실무자가 가족과 일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족의 상황과 필요에 대해 좀 더 경청해 주길 바란다. 또한, 가족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 소통을 하며 아동과 원가정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점이 좋다.

관심과 나온 방법을 알려주는데 노력,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입장에서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초기 대응에서 아이의 거짓말만 듣고 우리쪽 이야기는 안 듣고 분리해버려 관계회복의 기회가 모두 사라졌다.

담당자 변동 없으면 한다(원활한 소통을 위해) 또한, 담당자는 다소 형식적으로 일을 하였고 경찰은 일방향적으로 아동학대범 취급을 하여 기분이 나빴다.

7) 아동분리보호 과정의 아동 참여에 관한 아동과 실무자의 인식

아동분리보호 과정의 아동 참여에 관한 내용을 아동과 실무자 간의 차이를 확

인한 결과는 <표 4-6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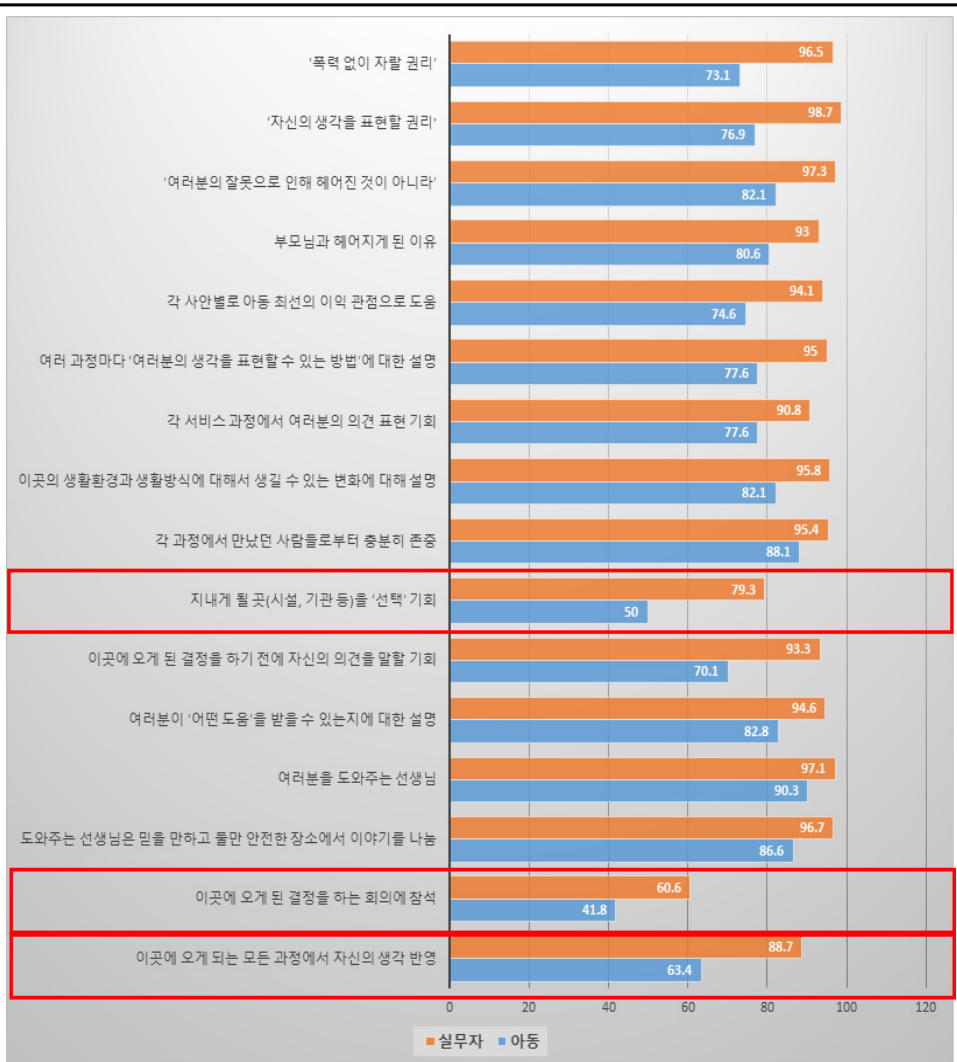
<표 4-60> 아동분리보호 과정의 아동 참여에 관한 아동과 담당 실무자의 인식

분리보호 과정 아동 참여	아동 (n=134)		관련 실무자 (n=251)		x ²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아동에게 '학대 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98 (73.1%)	36 (26.9%)	219 (96.5%)	8 (3.5%)	42.89***
2. 아동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103 (76.9%)	31 (23.1%)	223 (98.7%)	3 (1.3%)	46.77***
3. 아동에게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아동의 잘못으로 인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110 (82.1%)	24 (17.9%)	216 (97.3%)	6 (2.7%)	25.04***
4. 아동에게 부모와 떨어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다.	108 (80.6%)	26 (19.4%)	211 (93.0%)	16 (7.0%)	12.51***
5.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의 도움이 될 지에 대해 각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을 한다.	100 (74.6%)	34 (25.4%)	206 (94.1%)	13 (5.9%)	27.21***
6. '아동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다.	104 (77.6%)	30 (22.4%)	210 (95.0%)	11 (5.0%)	24.75***
7. 생긴 일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는다.	104 (77.6%)	30 (22.4%)	198 (90.8%)	20 (9.2%)	11.89**
8. 아동이 분리되어 보호 될 곳의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다.	110 (82.1%)	24 (17.9%)	207 (95.8%)	9 (4.2%)	18.29***
9.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과 부모를 존중한다.	118 (88.1%)	16 (11.9%)	188 (95.4%)	9 (4.6%)	6.20*
10. 아동이 분리되어 보호받아야 할 시설(기관 등)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67 (50.0%)	67 (50.0%)	149 (79.3%)	39 (20.7%)	30.23***
11. 아동분리보호 결정을 하기 전에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94 (70.1%)	40 (29.9%)	181 (93.3%)	13 (6.7%)	31.35***
12.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아동에게 알려준다.	111 (82.8%)	23 (17.2%)	194 (94.6%)	11 (5.4%)	12.50***
13. 아동분리보호 과정 중에 아동과 아동보호 전문요원이 만나게 한다.	121 (90.3%)	13 (9.7%)	202 (97.1%)	6 (2.9%)	7.22**
14. 아동분리보호 과정 중에 아동과 아동보호 전문요원이 둘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116 (86.6%)	18 (13.4%)	205 (96.7%)	7 (3.3%)	12.57***

분리보호 과정 아동 참여	아동 (n=134)		관련 실무자 (n=251)		χ ²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5. 아동분리보호 결정 회의에서 아동, 부모님/보호자를 참여시킨다.	56 (41.8%)	78 (58.2%)	100 (60.6%)	65 (39.4%)	10.49**
16.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전 과정에서 아동의 생각이나 의견이 반영되었다.	85 (63.4%)	49 (36.6%)	188 (88.7%)	24 (11.3%)	31.44***

*무응답은 제외(관련 실무자)

***p<.001, **p<.01



아동과 실무자 간의 아동분리보호 과정의 아동의 참여에 관해 인식 차이가 있었다 ($\chi^2=6.20\sim 46.89$). 특히,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학대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chi^2=42.89$, $p<.001$),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chi^2=46.77$, $p<.001$)가 있다는 것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이 지내게 될 장소를 선택할 기회’($\chi^2=30.23$, $p<.001$), ‘이곳에 오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chi^2=31.44$, $p<.001$), ‘아동분리보호 결정을 하기 전의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chi^2=31.35$, $p<.001$)에 대한 아동과 실무자 간의 인식 차이가 컸다.

이런 결과를 통해, 실무자는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보제공 등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과정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나 개입 방식이 아동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 아동분리보호 기간 양육환경, 사회환경에 대한 아동, 실무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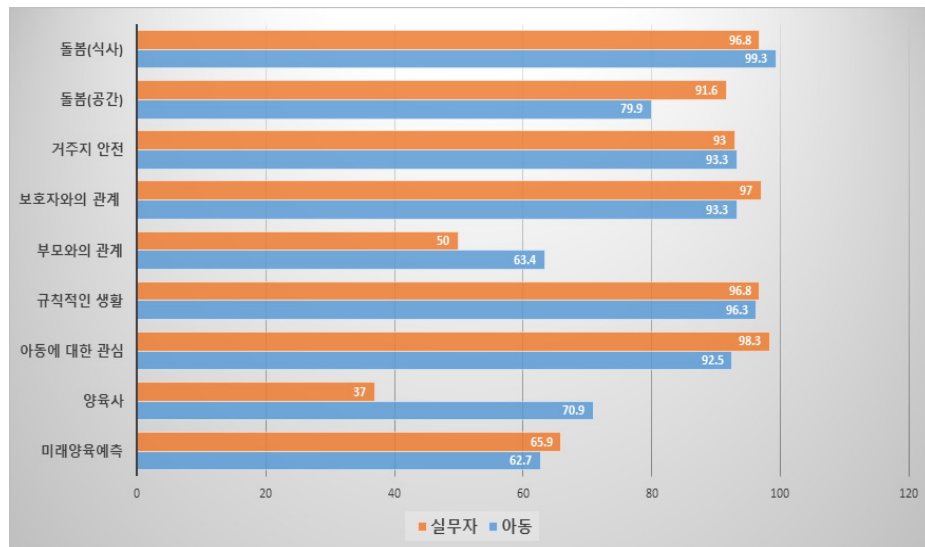
아동분리보호 기간의 양육환경에 대한 아동과 제공자인 실무자들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는 <표 4-61>과 같다. 아동과 실무자 간의 양육환경 중 돌봄에 있어 ‘개인 공간’($\chi^2=10.08$, $p<.01$), ‘부모와의 관계’($\chi^2=5.99$, $p<.05$), ‘아동 자신에 대한 관심’($\chi^2=7.45$, $p<.01$) ‘양육사에 있어 가족들로부터의 보살핌’($\chi^2=37.92$, $p<.001$)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와 양육사에 대해 아동, 실무자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특히나 아동에 비해 실무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환경에 있어 돌봄 공간에 있어 아동 자기 방이나 개인 공간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61〉 아동분리보호 기간 양육환경에 대한 아동과 담당 실무자의 인식

양육환경		아동 (n=134)		관련 실무자 (n=251)		x ²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	식사와 간식은 영양이 풍부하다.	133 (99.3%)	1 (0.7%)	219 (96.8%)	7 (3.2%)	2.30
	자기 방이나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107 (79.9%)	27 (20.1%)	196 (91.6%)	18 (8.4%)	10.08**
거주지 안전	살고 있는 동네가 안전하고 깨끗하다.	125 (93.3%)	9 (6.7%)	213 (93.0%)	16 (7.0%)	0.01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와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125 (93.3%)	9 (6.7%)	227 (97.0%)	7 (3.0%)	2.84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85 (63.4%)	49 (36.6%)	106 (50.0%)	106 (50.0%)	5.99*
규칙적인 생활	하루 일과를 보내기 위해 아동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129 (96.3%)	5 (3.7%)	210 (96.8%)	7 (3.2%)	0.06
아동에 대한 관심	'돌봐주시는 보호자'는 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신다.	124 (92.5%)	10 (7.5%)	225 (98.3%)	4 (1.7%)	7.45**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	가족들로 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	95 (70.9%)	39 (29.1%)	80 (37.0%)	136 (63.0%)	37.92***
	아동에게 소중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연락하고 있다.	84 (62.7%)	50 (37.3%)	141 (65.9%)	73 (34.1%)	0.370

*무응답은 제외(관련 실무자)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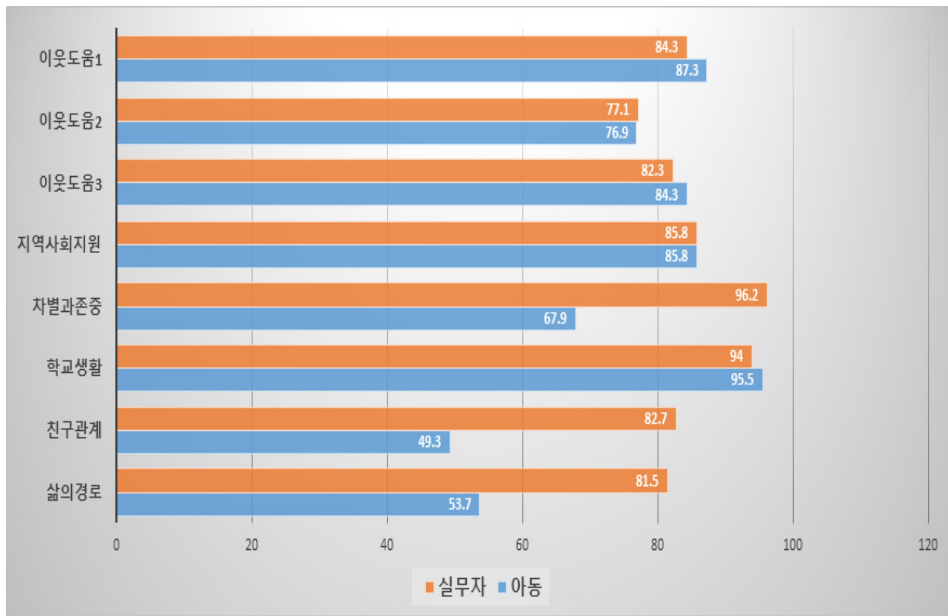
아동분리보호 기간의 사회환경에 대한 아동과 제공자인 실무자들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는 <표 4-62>와 같다. 아동과 실무자 간의 사회환경 중 ‘차별과 존중’($\chi^2=56.85$, $p<.001$), ‘친구관계’($\chi^2=41.95$, $p<.001$), ‘삶의 경로’($\chi^2=32.22$, $p<.001$) ‘양육사에 있어 가족들로부터의 보살핌’($\chi^2=37.92$, $p<.001$)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표 4-62> 아동분리보호 기간 사회환경에 대한 아동과 담당 실무자의 인식

사회환경		아동 (n=134)		관련 실무자 (n=251)		χ^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이웃(사람)들의 도움	이웃사람이 친절하고 믿을만하여 안전하다.	177 (87.3%)	17 (12.7%)	199 (84.3%)	37 (15.7%)	0.61
	이웃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거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03 (76.9%)	31 (23.1%)	155 (77.1%)	46 (22.9%)	0.00
	이웃사람 중 의지할만한 사람들이 있다.	113 (84.3%)	21 (15.7%)	181 (82.3%)	39 (17.7%)	0.25
지역사회 지원 체계	이웃사람들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15 (85.8%)	19 (14.2%)	200 (85.8%)	33 (14.2%)	0.00
차별과 존중	아동은 차별받은 적이 없다.	94 (67.9%)	43 (32.1%)	228 (96.2%)	9 (3.8%)	56.85***
학교생활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128 (95.5%)	6 (4.5%)	205 (94.0%)	13 (6.0%)	0.36
친구 관계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66 (49.3%)	68 (50.7%)	163 (82.7%)	34 (17.3%)	41.95***
삶의 경로	삶에서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	72 (53.7%)	62 (46.3%)	190 (81.5%)	43 (18.5%)	32.22***

*** $p<.001$

*무응답은 제외(관련 실무자)



이는 실무자의 경우는 사회환경에서 아동에 대해 차별하기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실무자들은 아동이 친구관계에 있어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동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즉 아동은 예전의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고 실무자는 '예'라는 응답이 81.5%이었지만, 아동은 53.7%이었다. 삶의 위험한 일들에 대해 실무자에 비해 아동은 회복탄력성이 있어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고 느끼는 비율이 적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9) 원가정 복귀 지원에 대한 아동, 부모/보호자, 실무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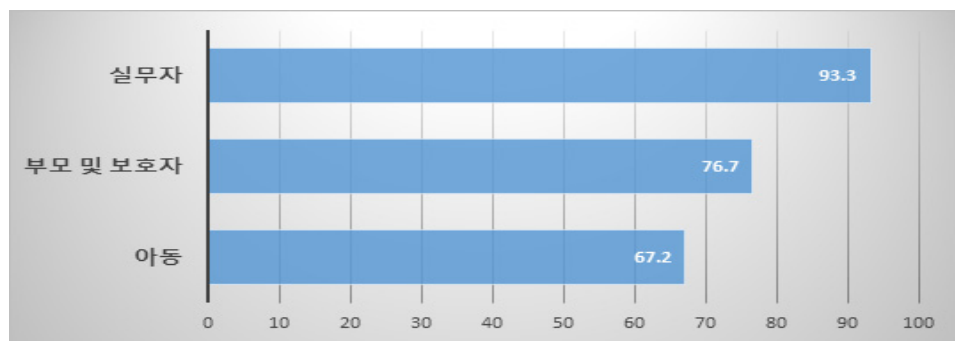
아동분리보호 기간에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만

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표 4-63>과 같이 아동, 실무자, 부모/보호자 간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chi^2=47.77$, $p<.001$). 실무자 집단에서는 ‘아동과 부모가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고 하는 비율이 93.3%로 응답하였지만, ‘아동 및 부모 집단에서는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는 비율이 아동은 67.2%, 부모/보호자는 76.7%로 나타났다. 아동 및 부모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연락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표 4-63> 아동분리보호 기간 부모와 자녀 간의 연락 여부

문항		아동 (n=134)		부모/보호자 (n=103)		관련 실무자 (n=207)		χ^2
		n	%	n	%	n	%	
부모와 연락	예	90	67.2	79	76.7	193	93.3	47.77***
	아니오	44	32.8	24	23.3	14	6.7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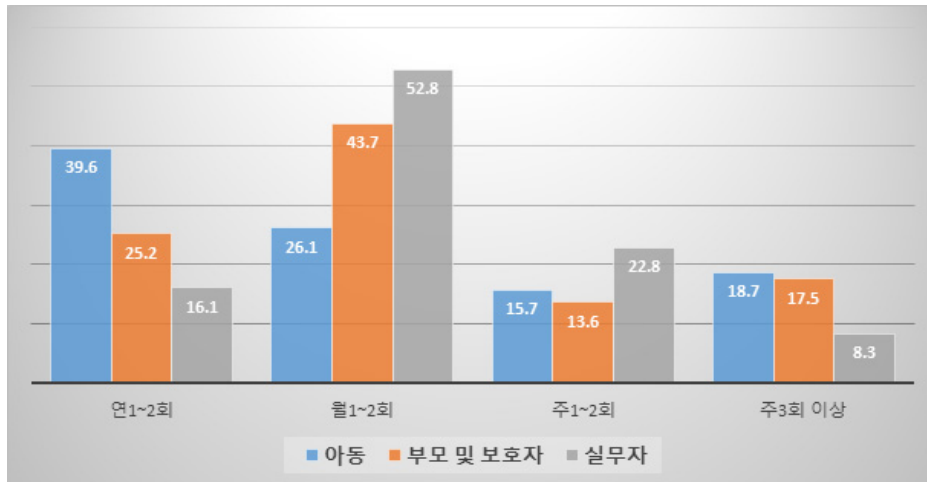
아동분리보호 기간에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다음 <표 4-64>와 같다. 아동, 부모/보호자, 실무자 간의 연락하고 있는 빈도를 인식하는 차이가 나타났다($\chi^2=41.08$, $p<.001$). 실무자의 경우는 ‘월 1~2회 정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부모/보호자의 경우도 ‘월 1~2회 정도하고 있다’가 43.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아동의 경우는 ‘연 1~2회 연락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 ‘월 1~2회 연락하고 있다’가 26.1%로 나타났다. 아동은 분리보호 기간에 부모와

연락하고 만나는 정도를 부모/보호자, 실무자에 비해 적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분리보호 기간 적응하고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와의 연락과 만남 등을 제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64〉 아동분리보호 기간 부모와 자녀 간의 연락 여부

문항		아동 (n=134)		부모/보호자 (n=103)		관련 실무자 (n=193)		x ²
		n	%	n	%	n	%	
부모와 연락 빈도	연1~2회	53	39.6	26	25.2	31	16.1	41.08***
	월1~2회	35	26.1	45	43.7	102	52.8	
	주1~2회	21	15.7	14	13.6	44	22.8	
	주3회 이상	25	18.7	18	17.5	16	8.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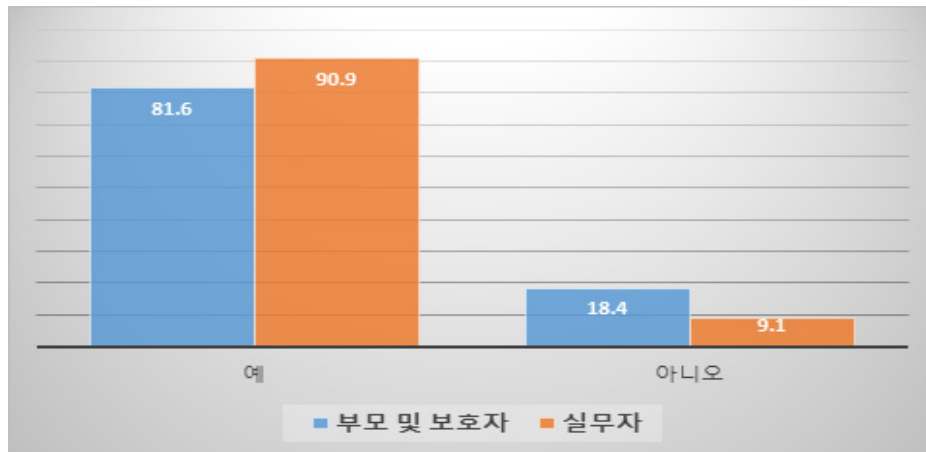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에 관해, 실무자들은 90.9%가 ‘부모/보호자에게 보고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부모/보호자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해 83.3%가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안내를 제공하는 실무자와 안내를 받은 부모 및 보호자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안내에 관해 부모/보호자가 충분히 안내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표 4-65〉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안내에 관한 보호자와 실무자 인식

문항		부모/보호자 (n=103)		관련 실무자 (n=176)		χ ²
		n	%	n	%	
원가정 프로그램 안내	예	84	81.6	160	90.9	26.81***
	아니오	19	18.4	16	9.1	

***p<.001

*실무자 중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 응답은 제외함



3. 조사 결과 분석이 주는 몇 가지 의미

1) FGI 조사 결과 분석이 주는 몇 가지 의미

다음은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심층면접과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방문 및 시설 관계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실무자/전문가와의 FGI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와 보호, 가정복귀와 관련한 시사점과 제언을 정리한 것이다.

(1) 분리 이전

-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부 또는 모에 의해 심각한 학대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과 부모 간의 애착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동은 부모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학대를 가한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하며, 이는 극단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족이지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음

(2) 분리 당시

- 분리되는 아동은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버려졌다는 생각에 많이 울기도 하여 분리가 아동에게 주는 트라우마가 심각함을 보여줌
- 최근 아동보호 체계가 개편되면서 아동의 분리, 보호체계의 결정 등의 과정에 아동이나 가족의 의사를 묻고 아동에게 바람직한 보호체계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아동에게 중요한 결정과정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참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호체계를 결정하기에는 보호 인프라가 부족하고, 아동을 담당하는 담당자에 따라 보호체계 결정에 격차가 있어 아동의 운명이 운에 맡겨질 가능성이 큼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어떤 경우에 어느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와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동이 받게될 보호의 질과 내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차별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임

(3) 분리 이후

- 분리된 아동은 원가정 뿐만 아니라 다니던 학교, 친구, 친인척들과의 관계

도 단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가정외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의 교육적, 물리적, 문화적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유엔 대안양육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처음 보호체계에 편입되면 목욕하는 방법, 자기 물건 관리 등 생활의 기본적인 것 조차 어려워 하지만 보호체계에 편입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동은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표현력이 좋아지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 보호체계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대부분의 아동은 학대했던 부모, 헤어진 가족에 대한 정서적 목마름이 있어 부모와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부모를 걱정하기도 하며 부모를 만나고 오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함께 살기를 바라기도 하여 원가정 복귀가 아동에게 중요함을 보여줌
- 학대했던 부모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일로 인해 아동과 만날 시간이 없고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여 원가정 복귀가 쉬워 보이지 않으나, 그럼에도 아동과 교류하려고 노력하고 방학이면 며칠씩 아동과 함께 지내며 이로 인해 아동이 변화하기도 함
- 두 곳의 양육시설과 두 곳의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한 결과 아동보호에 있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공동생활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낙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식사 시간, 핸드폰 사용, 외출 등에 있어 보다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어 아동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것으로 추측됨
- 이러한 두 시설의 차이는 아동이 보이는 반응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양육시설의 아동은 규칙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은 규칙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았음
- 이러한 규칙으로 인해 양육시설에 입소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시설의 규칙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여 불만인 아이들도 있으며, 규칙이 싫어 입소를 거부하였으나 다른 선택이 없어 끌려온 아동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4) 제언

-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체계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 상황에 맞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상황에 맞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물리적 구조, 상담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함
- 소규모 가정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소규모의 보호시설이 아동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에서의 아동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아동학대, 분리된 아동의 가정복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대상 아동의 연령,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함
- 아동의 분리, 보호, 가정복귀 등의 과정에서 고려하고 준수해야 할 인권지침 마련이 필요함
- 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지자체와 경찰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의 대안양육지침 결의안」,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을 분리하여 가정외 보호를 할 때에는 소규모의 가정환경 보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 원가정 복귀 사례와 실무자/전문가 FGI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다음과 같이 이뤄질 수 있음
 -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아동의 권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학대를 가한 부모, 아동의 가정복귀에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지원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분리 기간이 길어지면 분리 상황으로 고착될 위험 있으며,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아동의 분리 초기부터 계획되고 개입하여야 함
 - 분리된 아동의 가정복귀는 일종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 당연히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함
 -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학대를 조사하는 학대전담공무원, 가정 분리 이후

관여하게 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등 관여된 모든 기관과 관계자가 연계하고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 되어야 함

- 특히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노력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지자체와 아보전, 시설 등 관계자의 역할과 협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매뉴얼)과 실천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슈퍼비전 등의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함
- 이 지침(매뉴얼)에는 아동의 분리, 아동의 가정외 보호와 보호체계의 선정, 그리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각각의 역할, 그리고 아동과 가족이 갖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아동과 가족 간 교섭은 실무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가정의 부모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함
-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모와의 교섭뿐 아니라 시설 거주 아동의 부모들 간에 교류를 주선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아동과 가족 간 지속적인 교섭으로 준비되며 여기에는 시설 실무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이 연구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한 양육시설 원장이 시설 아동들이 끊임 없이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다음의 진술은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방향을 시사하고 있음

“참 슬프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고 진짜 가족과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서 사는 게. 저도 시설장이지만 제가 제 밥그릇이 떨어져도 저는 시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2) 설문조사 분석이 주는 몇 가지 의미

첫째,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보제공 등을 충

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CRC)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아동 보호시스템에서 아동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CRC의 일반 논평 12에 따르면,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는 정보 제공, 자신의 의견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 의견 표명, 최종 결정에 대한 아동 의견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실제로 고려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RC는 발달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참여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동보호 전문가가 발달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과 의사 소통해야 할 것이다(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2009).

둘째, 아동분리보호 기간의 양육환경에서는 개인 공간과 부모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환경에 대한 차별과 존중, 친구관계, 삶의 경로 양육사에 있어 가족들로부터의 보살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실무자들은 아동이 친구관계에 있어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동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즉 아동은 예전의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고 실무자는 '예'라는 응답이 81.5%이었지만, 아동은 53.7%이었다. 삶의 위험한 일들에 대해 실무자에 비해 아동은 회복탄력성이 있어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고 느끼는 비율이 적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아동 및 부모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연락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이유로, 부모의 인식, 변화하지 않는 부모, 양육의지, 재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호주아동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돌보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되도록 다른 지원 서비스에 가족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양육 모임, 상담 서비스, 집중 가족 지원 서비스, 가정 폭력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주택 서비스, 알코올 및 기타 약물(AOD)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또한, 영국에서는 형제자매관계 유지를 위해 함께 배치하거나 함께 배치되지 못할 경우,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연락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러한 것을 아동복지 및 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및 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 실무자 간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현장 이해 부족, 소통 부족, 서로 간의 이해 부족, 과중한 업무, 책임 떠넘기기 등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의 분리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분리보호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부모의 경험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분리된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절대적인 협력자이어야 한다. 부모의 경험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부모의 경험에 대해서도 우리도 고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

분리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보호정책 방안

제5장 분리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보호정책 방안

본 연구는 피학대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가 아동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분리보호 결정, 분리보호조치 이후, 그리고 가정에 복귀하는 일련의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이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분리조치 전반에 대하여 피학대 아동과 가해 부모,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 관련 법률과 지침서 검토, 외국사례 분석,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크게 아동인권 관점에서의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의 보호 전반과 아동분리조치와 관련한 보호 방안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인권 관점에서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보호 방안

피학대 아동의 분리조치시 인권기반 분리보호 방안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학대 등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위험한 양육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양육위기 아동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몇 가지 개입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서비스가 체계적이지 않고, 관련기관 간 서비스의 중복과 분절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분절적 서비스, 아동이 처한 위기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서비스,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 아동발달을 관찰 및 지원할 수 없는 서비스는 아동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실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의 아동은 불안정한 아동기 경험을 갖게 되어 성인기가 되었을 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피학대 아동의 분리보호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분리조치 방안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양육 위기 가정 아동을 위한 발달지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야 할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피해 아동보호조치 법 규정의 분절 문제 해소

학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분리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업무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응급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을 가정의 분리보호 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으로서 제 15조의 보호조치를,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서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각기 적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아동분리보호조치와 관련한 현행 법규정은 하나의 아동분리조치에 대해, 분리 결정의 주체, 분리의 요건과 효과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학대에 대한 법 적용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처벌법의 두 법률은 선택적 혹은 중복 활용된다. 두 조치는 중첩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한 조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조치가 각하되기도 한다(황옥경 외, 2022).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학대 조사 후 아동을 분리보호하거나 혹은 원가정 보호의 맥락으로 아동보호서비스가 체계화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아동학대 발생시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동처벌법의 응급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청구를 하지 않고 아동복지법의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조치(제15조)를 통한 분리보호를 하고 있다. 이 결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을 발생할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아동의 보호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한 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법으로의 분산 규정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해 통합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신수경, 2021).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조치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의 분산, 분절적 작동은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 전반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외에도 두 법에 유사 내용이 분산되고, 달리 기술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 유사한 행정적 분리조치인 ‘일시보호조치’(이른바 ‘즉각분리’)와 ‘응급조치’가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와 과정이 한 법규에 일괄 규정

되어 있지도 않다. ‘일시보호조치’와 ‘보호조치’ 등 행정적 분리조치에 해당하는 규정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작 이러한 보호조치에 이르기 위한 절차의 시작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조사’에 관한 사항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표 5-1〉 피학대 아동의 분리조치에 대한 분산규정

구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피해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근거 및 업무전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출동 및 조사절차권한 상세’
수사와 현장출동	‘수사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사실 통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출동통지
피해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특히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후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후 임시조치가 청구’
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이 피해아동 임시 보호명령·보호명령’
신고 및 조사		신고 및 현장출동·조사 조항
자치단체장의 보호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 계획 및 ‘피해아동사례 관리 계획’	‘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및 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
보조인 자격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 자격’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한 보조인·국선보조인’
친권자	‘피해아동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신고청구’	‘검사의 친권상실 신고 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일부로서의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규율과 연계되지 않는 아동보호의 분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보호서비스 절차의 근거법률 적용에 있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중첩과 분산을 예방하려면, 두 법의 상호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어느 법의 어느 조항이 어떤 경우에 적용·효력이 발생하는 지 누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조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일괄 적용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아동복지법에서 가해자 관련 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제12조)와 아동복지법의 보호조치(제15조)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어떤 절차가 연계되어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과정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경우와 절차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서 동시에 고려될 것임이 적시되어야 한다(황옥경 외, 2022).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통합적으로 적용,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현장 조사자와 가정법원 등의 사법부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피해아동과 가해자 조치에 대한 정보와 논의, 이슈를 통합적으로 적용되고, 두 법 조항간의 연관성을 분명히 할 수 있으려면, 향후 이 두 법의 통합 적용내지는 통합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사법조치 중심의 법으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피해아동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별도로 처리되면서 법이 규정하는 보호조치 등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피학대 아동의 인권기반 보호조치를 위해서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전반에서 매뉴얼에 의존하는 문제도 보완되어야 한다. 법령 규정이 충분하지 않고 사법절차의 적용이 어렵다 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뉴얼의 내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매뉴얼 중심의 업무지침보다는 상위의 시행령이나, 훈령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의 어떤 실무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있구요.”

“(경찰과 지자체, 아보전이) 역할별로 어떻게 아동을 대하고 가족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략) 그리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례 판단 행위를 할 때나 아니면 사례 결정위원회를 할 때도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도 이런 일관적인 메시지가 전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배포되는 이 ‘업무 매뉴얼’의 최신

버전은 보건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는 물론 국회도서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이다. 이 매뉴얼은 아동분리보호를 하고 있는 양육시설이나 쉼터, 가정위탁 등의 실무자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아 보호아동이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분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업무 매뉴얼은 정작 매뉴얼에 포괄되어야 할 관련기관간의 협업과 책임, 역할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조치에서 행정적 분리조치는 아동복지법에, 사법적 분리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분산되어 있음. 이로 인해 법이 규정하는 보호조치 등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두 법이 독립된 규율로 존재하여 분리보호 서비스 전반을 일괄 파악하기가 어려움.
- 아동분리보호에 대한 분산 규정(행정적 조치와 사법적 조치)으로 어떤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아동의 보호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해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해 통합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상호 유사한 행정적 분리조치인 ‘일시보호조치’(이른바 ‘즉각분리’)와 ‘응급조치’가 서로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와 과정이 한 법규에 일괄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를테면 보호조치 규정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출동 조사에 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법에만 명시됨.
- 법령 규정이 충분하지 않고 사법절차의 적용이 어렵다 보니 ‘업무 매뉴얼’에 의존하고 있음.
- 현재 ‘업무 매뉴얼’ 미공개임.

□ 개선방안

-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 규정의 분산, 유사분리보호조치에 대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별도 규정, 보호서비스 전달과정의 두 법으로의 분산규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상호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어느 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채택·효력을 발생하는지, 두 법에서 명시한 분리조치 규정 간 및 신고, 접수부터 보호조치와 그 이후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 조항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야 함.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통합 적용 체계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함. 중첩 적용 혹은 한 조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조치는 각하되는 현실 개선이 필요함. 더 나아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분절 적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함.

-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조사'에서부터 '일시보호조치'와 '보호조치' 등 행정적 분리조치에 해당하는 규정이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의 적용채택을 명시해야 함.
- 조사과정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조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일괄 적용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야 함.
- 매뉴얼 중심의 업무지침보다 상위의 시행령이나 훈령 등이 마련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법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실행되어야 할 것임.
- 매뉴얼 의존 현실과 미공개 상황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분리보호조치 과정(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협업, 연계, 역할, 책임의 명시가 필요함.

2)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빈약한 아동분리 법률 사항 보강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분리조치 기준이 모호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너무 크고, 법률상 명확하지 않거나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분리 준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모의 경우 학대가해자이면서 분리 이후 자신의 생활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아동분리를 반기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잔소리가 싫거나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동이 부모와의 갈등을 이용하여 집을 떠나려는 경우도 있다. 아동이 시설에 분리보호된다는 것은 아동 생활환경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으로 아동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변화이다. 이런 변화를 초래할 분리보호 판단에 담당자 재량의 여지가 크고, 분리기준이 모호한 것은 개선되어야 하며,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장기 보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일시보호와 장기 보호라는 분류기준도 재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요구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동 분리에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

“원가정 복귀에 대한 판단은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하며, 일시보호가 종료되었을 때 아동을 복귀시키기 위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소중심의 ‘아동학대 처벌법’의 분리보호 조항으로 인해 아동이 보호되는 시설로 옮겨갈 경우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가 효력을 상실하는 허점도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분리조치 기준이 모호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너무 크고, 어떤 경우는 학대행위자나 아동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음.
- 일시보호와 장기보호라는 분류기준의 재정리가 필요함.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기간 규정이 없어 아동 분리에 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 필요.
- 사법절차를 통해 장기 보호 판단과 시설보호 계속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장소중심의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보호조치 조항으로 인해 아동이 보호되는 시설로 옮겨갈 경우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가 효력을 상실하는 허점이 있음.

□ **개선방안**

- 담당자의 분리 판단에 대한 다학제적 확인 절차가 필요함. 아동에 대한 모든 시설 분리 보호 결정은 사법적 절차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분리 시 분리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부모의 인식과 양육역량 및 아동의 행동 등 포괄).
- 분리 이후 양육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분리를 희망하는 부모,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분리를 희망하는 아동 등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와 아동의 태도와 인식 평가 필요함.
- 학대 피해아동보호기간 법률명시가 필요함.
- 아동의 분리보호시설 이동에 따른 접근금지 효력이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신속조치 조항 등이 마련되어야 함.

3) 아동보호 관련 담당 부처간 거버넌스 구축과 서비스 통합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이외에도 아동의 학교교육 등과 깊은 연관을 가지므로 교육부와의 연계된 서비스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피학대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에서 행정적 분리조치인가, 사법적 분리조치인가에 따라서 관장하는 부처도, 적용되는 법률에도 차이가

있다. 동일 대상과 내용에 대한 법률의 기술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분리 체제는 자칫 서비스가 분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입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원에 비해 서비스 효율을 낮출 가능성을 높인다.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아동보호체계의 거버넌스 구축 및 서비스의 통합,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을 논함에 있어 사법 영역을 담당하는 검사와 법원의 역할과 협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검사와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처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사법서비스 제공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결정하는 데에는 피해아동보호의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통해 피해아동보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화, 2022). 서비스의 분절과 파편화는 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동보호 서비스에 참여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공식적인 조정 메커니즘이나 주무 부처 없이 여러 부처가 서로 다른 분야와 영역에서 관련된 유사 업무를 관장하기도 한다(김은정, 황옥경 외, 2022 출간예정). 부처의 관리와 행정이 파편화된 아동보호 서비스는 질과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 관련 부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협업 구조가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는 종종 균열을 일으킨다.

어떤 국가에서는 한 부처의 책임 하에 또는 여러 부처의 대표가 있는 ‘조정 기구’를 통해 정책과 서비스의 일관성을 높인다. 아동보호서비스 담당부처간 거버넌스 구축은 다른 관련 부처와의 긴밀하게 연계된 아동보호서비스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분리보호과정, 분리보호 이후, 가정복귀 이후 등 아동인권에 기반한 보호 서비스 정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제공하고, 가족을 지원하려면 다른 부처와 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한편 다양한 서비스 전달기관이 각기 다른 목적에 초점을 두고, 위기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기관들의 통합된 체계가 필요하다. 서비스 전달기관간 명확하게 정의된 역할과 책임이 없으면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계획, 규제, 질 보증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질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전달기관의 서비스 제공체계가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 등의 역할과 협력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느 기관의 어느 담당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할과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하에 관련기간관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시설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학대를 한 부모에 대해 아보전이 하는 프로그램, 지자체의 개입,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노력 등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가 떨어짐.”

“지자체에서 조사 따로 하고 이후에 사례관리는 아보전에서 따로 하는 분리된 체계로 효과적인 사례 관리와 원가정 복귀 지원을 하기 어려움.”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피학대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가 행정적 분리조치인지 사법적 분리조치인지에 따라 관장하는 부처와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관련 부처의 서비스 분절과 파편화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질과 정책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개선방안**

- 아동보호서비스 담당부처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분리보호 과정, 분리보호 이후, 가정복귀 이후 등 아동 인권에 기반한 보호서비스 정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제공하고 위기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된 부처간, 그리고 관련 기관간 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함.
- 아동이 다니던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기관 등과의 접촉을 통해 아동의 친구관계, 학업, 생활상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함.
-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기관이나 담당자의 역량에 따른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 관련기관의 협조체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하에 관련기관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4) 취약가정의 발달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와 건강한 발달 전략 수립

매년 3만건을 상회하는 아동학대가 신고되고, 2021년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조치는 12,209건에 달하며,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이 43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보호를 요하는 요보호 아동은 2021년 기준 3,657명이었다(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22). 피학대 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내에서 다양한 보호절차에 의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은 보호 유형에 따라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근거로 보호받는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거로 아동보호 서비스와 사법절차가 작동하며,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이 감소하지 않고, 가정복귀 후 재학대 발생도 계속되고 있다. 취약위기 아동이 어떤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며, 요보호 아동의 경우 상당부분 학대 피해아동일 가능성이 높은 데도 통계의 중복여부 및 요보호 유형에 따른 아동발달 실태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기는 전 생애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특별한 시기로 아동기 개입서비스는 성인기 잠재적 소득 수준이 향상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니세프 등의 세계기구와 세계 각국은 저출생과 맞물려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보강하면서 필요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정책의 안정성과 최일선 서비스의 건강한 실행력을 높이고, 아동발달과 보호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세밀한 지침을 내놓고 있다.

이제 전국적인 취약위기 가정 아동의 생활실태와 발달 과정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이들 아동에게 표적화된 보호와 발달지원 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취약 위기 가정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와 발달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이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서비스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서비스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아동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추가적인 도움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 무엇을 - 어떤 유형의 서비스, 어떤 품질, 어떤 내용과 교수 및 학습 접근 방식을 제공해야 하는가?
- 누구를 위해 - 누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 누구에 의해 - 누가 이러한 서비스(정부, 민간 부문, 부모) 이용 비용을 지불

해야 하며 어떤 지불 방식은 어떠한가 하는가?

- 얼마나 - 자원의 제공 및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 어떻게 -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 및 제공해야 하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보호 서비스와 사법절차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이 감소하지 않고 가정복귀 후 재학대 발생도 계속되고 있음.
- 취약위기 아동의 생활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며 요보호 아동과 학대 피해아동 통계의 중복여부 및 요보호 유형에 따른 아동발달 실태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분리조치된 아동을 위한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이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함.

□ **개선방안**

- 전국적인 취약위기 가정 아동의 생활실태와 발달 과정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 이들에 대한 표적화된 보호와 발달지원 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함.
- 그렇게 되면 취약위기 가정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서비스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할 것임.

5) 위기가족에 대한 다학제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아동학대의 상당부분은 가정내 불안정 요소와 양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때문에 가정내 학대 위험을 줄이고, 분리보호과정과 특히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최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다학제적인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족서비스는 여러 실증적인 연구에서 자녀가 보호체계 아동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체계는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능할 수 있으며, 피학대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있는 가족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가족분야에서 ‘아동돌봄’ 취지 하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관련서비스가 분산되어 서비스 중복이 심하거나, 투입되는 비용효과가 낮다. 어느 기관이 주체가 되어 가족이 처

한 위기 요소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개별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에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통합 가족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학대 피해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면접조사와 양적조사 결과의 면면에 나타났다. 피학대 아동의 분리보호 이전과 분리보호 과정, 그리고 가정복귀 후 조사 결과에서는 상당수에 이른 피학대 아동이 여전히 불안정한 부모와 약화된 가족기능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해 부모 역시 시설에서 아무 문제없이 생활하였던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온 후 부모자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양육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 분석에서 일관적으로 피학대 분리보호조치이후 가해 부모에 대한 부모 역량 강화서비스가 제공되고, 가정내 문제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재학대 발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가정 복귀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가해 부모들은 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 이수 이후에도 자녀를 양육할 정도의 양육역량을 가지지 못하며, 가정내 양육불안정 요소 등이 재등장하거나,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역량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원가정 복귀된 경우 이전과 같은 갈등 상황이거나 아동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위험가족이 양육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아동분리 가정의 경우 양육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이 다학제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학대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한 가족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여준다.

“아동이 원가정을 방문했을 때 친부의 자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걱정함.”

“가정에 돌아가면 사실은 처음이야 (중략) 좀 변화하고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지만, 돌아가면 아이가 원래 집에서 있었던 문제 행동들이 다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가정 환경은 그대로이기 때문...”

“아동이 그룹홈에서 지내다 원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친모는 기물을 부수고 아동은 구석에서 아무 반응 없이 앉아 있고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는 친부는 술만 먹었다고 함.”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피학대 아동의 경우 오랜 방임으로 인해 씻기, 물

건 정리하기 등 기본생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양육 유능감을 가지고 있거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에 대해 충분한 정도의 양육을 할 수 없는 부모 등의 양육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강화 확대 되어야 할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방임을 통해 온 친구들 중에서는 목욕하는 방법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중략) 자기 사물함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 물건을 관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개입을 하고.”

다학제적인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은 비록 학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간의 애정과 관심이 지속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이 드러나기도 한다. 원가정 복귀 훈련과정에서 아동과 부모 모두 변하지 않는 서로의 모습, 즉 부모는 아동이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자녀는 부모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등으로 인해 아동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예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아동이 가족과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점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친부가 술을 마시고 병을 깨뜨려 피가 나는 모습을 기억하며 아빠가 다쳐가지고 엄청 많이 걱정함.”

“아빠는. 이제 한쪽은 술 먹고 있었었는데 한 병은 머리에 박고 한 병은... 한 병은 거기에서 바닥에 깨트리고 (중략) 아빠가 다쳐가지고 엄청 많이 걱정을 좀 했거든요.”

“아동 모하고 분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또 아동 모가 또 정신이 차려지면 아이를 그렇게 또 애 타게 찾았나 봐요.”

“조현병으로 집을 나간 엄마를 못 보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엄마를 걱정하고 보고 싶어함.”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분석과정에서 가해 부모의 정신건강이 불안정한데도 아동이 이런 부모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양육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 부모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진전되지 않은 경우, 가정복귀를 위한 사전 적응훈련 과정과 복귀 이후에 부모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해 피학대 아동의 불안과 두려움이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기가족으로 분류되는 빈곤, 알콜 등 중독, 우울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내 안전과 양육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고, 표적화된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조현병을 심하게 앓던 아동의 친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잔소리를 심하게 하였으며…”

“폭력적이고 알콜을 중독인 친부가 가정폭력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

“교도소 가고. 엄마랑 누나랑 ○○이랑 세 명 살다가 엄마의 방임. (중략) 아버지는 이제 집에서 알콜을 거의 중독일 거예요. (중략) 엄마가 밤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친모는 심각한 질환(조현병, 뇌암, 유방암)을 앓았으며, 아이를 팬티도 입히지 않은 채 찜질방을 가는 등 증상이 심각했고…”

본 연구의 조사에서 원가정의 복귀를 위한 훈련과정에서 담당자의 가정동행과 부모 면담 등은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시설 분리보호 이후 상담 등 다학제적인 서비스와 멘토링 교사 등이 아동이 원가정 부모와 적응하는 역량을 키워주고, 원가정 적응훈련시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자도 되었다. 무엇보다 원가정 복귀 훈련과정에서 그리고 복귀이후 부모와 자녀관계를 세밀하게 살피는 등 가족의 양육안정성을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엄마랑 선생님 한 분이랑 같이 여행을 보내줘요. 가셔도 재밌게 놀고 저녁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갖죠.”

“쌤들이 중간 역할 되게 많이 해줬죠.”

“쌤들 같이 밥 먹고 쌤이랑 같이 엄마 집을 갔었죠. 그러니까 쌤들이 진짜 많이 왔다갔다 하셨어요.”

학대 가해 부모의 경제적 역량, 양육, 자녀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 양육역량에 대한 다학제적인 포괄적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가정이 아동을 보호하며,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족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가족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위기 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가족역량 강화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황옥경 외, 2021). 강화서비스의 산발적인 분절로 인한 위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

고, 서비스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질의 일정 수준과 기준도 확보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불리한 상황에 처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특히 가족의 3대 독성 스트레스로 알려진 실직상태의 가족,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알코올 등 중독가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산아, 장애가 있거나 중증질환의 아동은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 부모는 양육에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이들 취약 아동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더한 추가적인 위기 대응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소득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상담 및 발달지원, 주거 지원, 양육 지원 인력 파견과 일대일 서비스 지원 등 위기 정도와 요인에 따른 다양한 추가지원 방법이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가족분야에서 '아동돌봄' 취지 하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가 분산·중복되거나 투입되는 비용효과가 낮은 상황임.
- 조사 결과를 보면, 가해 부모들은 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 이수 이후에도 자녀 양육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가정내 양육불안정 요소 등이 재등장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음.

□ 개선방안

- 아동분리 이후 다학제적인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학대 가해 부모의 경제적 역량, 양육, 자녀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 양육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다학제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가해부모와 관련하여 가정내 안전과 양육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마련되고 표적화된 서비스가 추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위기 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가족역량 강화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가정 아동보호 그리고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가족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가족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가족지원 체계 구축: 가족 허브 네트워크(가칭)
 - 3대(우울 등 정신질환, 실직상태의 가족, 알콜 등 중독) 가족 위기유형을 가진 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 수립

- 다학제적 원가정 복귀 평가 기준 마련: 가정의 안정성에 대한 다면 평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원가정 복귀 훈련 과정의 정교화 및 전문가 지원, 평가
- 출산전후 우울감 등 예방, 지지 서비스 및 양육유능감
- 조산아, 중증질환의 아동, 장애나 발달지연 아동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
- 원가정 복귀이후 가족기능지지 서비스 및 정기적인 안전 확인 고도화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지지/지원 서비스 매뉴얼 마련
- 가정에 대한 다학제적 양육역량 평가: 부모의 편리와 욕구로 인해 아동을 분리보호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 필요

6) 데이터에 근거한 아동보호 체계 작동 및 정보 공유

데이터는 질 담보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정부가 정책 설계 및 실행상황을 보고하고, 서비스의 핵심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은 중요하다.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간의 파트너십은 지역사회 아동 서비스의 여러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영국정부는 관련기관간 강력한 공조체계 하에 각 관련기관의 정보가 공유되면 지역 동향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목표가 될 때 서비스가 가장 잘 작동한다고 전제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학교 출석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는 영국 47%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과 가족을 위한 790만 파운드(Local Data Accelerator Fund for children and families)가 10개의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연결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되었다 (HM Government, 2022).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동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가학행위를 하였음.”

“(보호자) 학교 안 보내고, 아이를 때리고, 아이를 학교 끌고 온 천지를 다 데리고 다니고, 데리고 교회에도 가니까 4월 달에 왔는데 학교를 간 날짜가 며칠 안 되는거예요.”

어떤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아동의 보호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한 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하게 되어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해 통합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신수경, 2021). 분

리보호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관련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아동분리보호조치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분산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분리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관련자는 피학대 아동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피학대 아동의 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아동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 그리고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인력 등과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가 공유되면,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재조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가정법원에서 아동의 보호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이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의 파트너십은 지역사회 아동 서비스의 여러 현안 및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음.
- 행정적·사법적 분리보호 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자간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7)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분리보호로 인한 위험최소화, 그리고 인력 개발

시설 배치의 지역적 편차, 실무자의 전문성 편차 등은 아동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불공정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서도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아동의 인권침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학교를 전학하는 것은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분리아동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보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2022년 현재 106개소로 늘었

지만, 지역간 분배가 적절한 것인지는 모호하다.

어떤 아동의 경우는 시설 분리이후에 다른 시설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가정에서 분리되고, 시설에 배치되고, 다시 다른 시설로 옮겨가고 하는 등의 주거 불안정성은 아동의 인권을 상당수준 침해할 수 있다. 시설을 옮기는 기준과 판단기준도 모호하다. 양육위기 가정 아동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센터’ 등의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한다.

“(보호자) (그룹홈) 정원에 ○○이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동 장애인인데, 그런데 지금 어른 장애인 시설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중략) 그래.”

아동이 다니던 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 아동의 사례관리기관 등과의 접촉을 통해 아동의 친구관계, 학업, 생활상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 등 발달지원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유기적이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가 기관이나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서비스 관련기관의 협조체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저희는 최대한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아이가 자라온 과정, 학교에서의 모습, 친구 관계 등)을 정보를 취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략) 원격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도 많이 … 통화하면서 아이가 또 지역사회 내에서 공부방을 다녔거나 지역아동센터를 다녔거나, 그러면 그쪽하고도 연락해서…”

또한, 아동의 발달상과 성별,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양육시설의 기존 구조가 아동의 특성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아동이 불필요하게 분리 되는 등 아동과 시설담당자 모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분리보호시 피학대의 결과로 인해 아동간 발달성취의 차이가 크고, 어떤 피학대 아동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불안정을 호소하거나 행동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 아동을 특별 보호, 양육할 수 있는 충분히 안정적인 시설 양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상황과 성별, 개인적 관심사 등 아동특성이 고려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욕구조사와 해당 아동에 대한 시설의 양육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분리보호조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가 있고 지적장애의 정신장애를 동반한 아이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원가정은 물론이

고 시설에서도 거부를 하고 그룹홈도 거부하고 양육시설도 거부를 해서 이 아이를 보낼 데가 없어가 지고요.”

아동이 자신의 사적 생활을 보호받는 시설의 필요성도 관찰되었는데, 주관식조사 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개인’, ‘개인방’, ‘공간’, ‘자유’, ‘다양한’ 등 자신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크게 드러났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청결과 안전에 대한 욕구도 크게 나타났다.

“... 이전에는 이제 남자 친구들도 사실은 다 같이 있었는데, 남자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에 비해서 워낙 활동성이 높고 또 문제가 워낙 많이 있어 보니까, 저희가 조금 부작용 때문에 지금 분리를 해놓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한편, 담당인력의 전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정보에 편차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질이 다르거나 서비스 개입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아동이 받게 될 보호의 질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담당하는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양이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히스토리 아주 세세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누구이며 연락처며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 어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인지 그것도 안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담당자가 어떻게 아동 카드를 기술했는가에 따라서도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또 변수가 또 되더라고요.”

“저희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정말 비슷한 시기에 와서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아이는 주무관님이 노력을 해 주시니까 빨리 가요. (중략) 어떤 구청은 연락도 없으시고, (중략) 담당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업무가 조금 좌지우지된다는 느낌...”

서비스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적절하고 유능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관계 부처가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비전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데에 주무 부처와 최일선 서비스 담당인력의 전문성과 능력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질을 높이려면 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서비스 종사 인력에 대한 우수한 교육훈련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 및 조기 학습 인력을 전문화하여 질적

우수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이며 존경받는 안전한 직업 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현행 자격요건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처우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가족과의 분리만이 아닌 살던 지역과 학교로 부터도 분리되거나, 시설 분리 이후에 다른 시설로 옮겨가는 주거불안정 등의 문제로 아동의 인권이 상당수준 침해받고 있음.
-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2022년 현재 106개소로 늘었지만 지역간 분배가 적절한지 모호하며 시설의 옮기는 기준과 판단기준도 모호함.
- 피학대 아동의 발달특성 및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반영한 시설 배치 및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시설 분리 이후 다른 시설로 재배치되는 경우의 문제점 지적됨.
- 본 연구의 조사연구에서 아동 자신의 사적 생활을 보호받는 시설의 필요성을 관찰할 수 있었음. 아동의 주관식조사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개인', '개인방', '공간', '자유', '다양한' 등 자신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크게 드러남.

□ **개선방안**

- 분리보호시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아동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피학대 아동의 행동과 정서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시설 분리보호 제공이 필요함.
- 시설 분리보호 조치이후 아동최선의 이익에 기초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다른 시설로 재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동의 발달상황과 성별, 개인적 관심사 등 아동특성이 고려된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에 대한 욕구조사와 시설의 양육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분리보호조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 보호서비스에 참여하는 행정 등 서비스 담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 규정 체계화 필요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담원 등 관련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및 처우 등에 대한 검토 필요함.

2. 아동인권 관점의 아동분리조치 과정과 분리보호

1) 아동의견 표현과 청취 등의 참여권의 보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이 과정에 대해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의견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아동보호서비스의 초기 욕구조사과정과 분리과정에서 아동의견청취 과정이 포함되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 12조 제1항), 위 법 시행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증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령 제5조).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를 할 경우와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일시보호를 함으로써 아동분리조치를 할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5항). 그러나 아동분리에 있어 아동의사 존중에 대한 위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위와 같이 선언적, 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실무상으로도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고, 존중되는 지에 대해서는 담당자마다 차이가 크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와 피해아동보호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등의 이유로 대체적으로 아동분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아동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김정화, 2022).

욕구조사 과정에서의 아동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문항은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가’, ‘시설에 남기를 원하는 가’와 같은 보호형태와,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와 같이 단순하고 추상적인 수준이었다. 또한 시설 분리보호 할 때 아동에게 설명하는 문항은 ‘분리 전원의 설명을 이해하였다’, ‘분리보호되는 시설의 종류, 생활형태, 규칙, 분리 이후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 ‘분리보호에 동의하였다’의 3문항이 있는데, 분리보호시 전원되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분리 기간과 이후 가족과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도 없다. 분리보호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안내 등 없이 결정 후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아동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분리보호 이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자체에서)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결과만 알려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은 좀 못 받아들이는 거고, ‘충분히 설명을 못 받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략) ‘거기 선생님들은 나를 도와주는 걸로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에 선생님들은 나를 어쨌든 물건 취급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이 ...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아동보호 절차의 전반에서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권리 행사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도 ‘부모와 헤어지는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 ‘이곳에 오기 전에 자신이 지내게 될 곳을 ‘선택’ 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0% 저조하였다. 아동의 의사표현 등이 보장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는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참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 이를 결정할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의 참여권·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

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 제15조 제6항 단서에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친족가정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2항), 해당 보호대상아동은 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함.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나 퇴소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3항) 과정에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참여권·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함. 아동학대 재발 의심으로 인한 가정복귀 결정 취소를 위한 사례 결정위원회의 심의에 보호대상아동의 참여권·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분리보호과정의 피학대 아동은 이미 자신의 잘못 없이 가해 부모에 의해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또 다른 학대 상황에 처한 것이다. 분리보호과정에서 아동은 분리보호되는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 분리 이후 하루의 일과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를 만날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한다. 아울러, 분리 이후 원가정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학교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것인지, 원가정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 지 등 분리로 인해 빚어진 아동 생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부모님과 헤어지게 된 이유를 충분히 듣지 못한 경우’의 아동이 20%에 이르렀으며, ‘시설 분리시 무엇이 최선의 도움이 될지에 대해 사안별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도 25.4%에 이른다. ‘시설 분리 이전에 각 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경우’는 77.6%이었다. 특히, 부모님과 헤어지고 시설에 분리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 아동은 41.8%에 불과하다. ‘시설 분리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다’

고 생각하는 아동은 36.6%에 이른다. 실무자 역시 ‘아동이 분리될 시설 선택 기회가 제공되었는가?’의 항목에서 59.4%의 실무자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을 분리보호 결정 회의에서 아동, 부모님을 참여시켰다’ 항목에는 39.8%의 실무자만이 ‘그렇다’에 응답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아동과 부모의 낮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 참여권에 기반하여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아동참여 내용이다.

- 아동에게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없이 자랄 권리’에 대해 설명한다.
- 아동에게 부모님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 분리보호 이전에 무엇이 최선의 도움이 될지 각 사안별로 아동에게 설명을 한다.
-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은 분리될 시설에 대한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이 분리될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아동이 분리보호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한다.
- 부모님과 헤어지고 분리보호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아동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분리 관련 아동의사 존중에 대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선언적이고 주의적인 규정일 뿐이고, 실무상 담당자에 따라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고 존중되는지가 결정됨. 아동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욕구조사 과정에서 아동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문항은 단순하고 추상적인 수준임. 분리 보호시 전원되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분리 기간과 이후 가족과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도 없음.
- 분리보호시설 결정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안내 등 없이 결정 후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아동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분리보호 이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아동보호 절차 전반에서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등 권리 행사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음.
- 본 연구의 조사연구에서 분리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이며, 시설에 오기 전에 자신이 지낼 곳을 '선택' 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0%로 저조하였음.
- 또한, '부모님과 헤어지게 된 이유를 충분히 듣지 못한 경우'의 아동이 20%였으며, '시설 분리시 무엇이 최선의 도움이 될지에 대해 사안별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도 25.4%로 나타남.
- 시설 분리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은 36.6%에 이룸.
- 실무자 역시 '아동이 분리될 시설 선택기회가 제공되었는가' 항목에 59.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실무자 중에 '아동을 분리보호 결정 회의에서 아동, 부모님을 참여시켰다' 항목에 39.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아동과 부모의 낮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개선방안

- 보호조치계획 수립시 아동의 의견청취,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함.
- 보호조치를 결정할 사례 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의견청취, 진술권을 보장해야 함.
- 아동에게 가정복귀 신청을 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 퇴소결정 사례결정위원회에 아동의 의견청취, 진술권 등을 보장해야 함.
- 퇴소 취소 결정시 아동의 의견청취, 진술권 등을 보장해야 함.

- 분리보호과정에서 분리보호 상황과 이후 생활에 대해 아동과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에서 아동에게 부여되어야 할 참여권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폭력없이 자랄 권리’에 대해 설명.
 - 부모님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
 - 분리보호 이전에 무엇이 최선의 도움이 될지 각 사안별로 설명.
 - 아동보호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생각을 자유롭게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동은 분리될 시설에 대한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
 - 아동이 분리될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아동이 분리보호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
 - 부모님과 헤어지고 분리보호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아동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기관의 명료한 역할과 책임 규정

양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아동의 입·퇴소, 사례관리 등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드러났다. 보호종료 및 퇴소시 양육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견과 갈등이 있을 시 이를 조정하고, 평가하는 과정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부모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아동을 분리보호 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따로 진행되어 그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다. 현장 실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이후에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는 체계가 비효과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관련기관 간 역할과 책임의 연관성을 높이고, 통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퇴소를 하고 싶은데 퇴소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답답함이 ... (중략) 지금 구청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중략)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은 아보전이 개입하고 있으니까 아보전 의견에 따를 거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무자는 원가정 복귀과정, 퇴소과정에서 담당공무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이 75.9%~78.5%로 입소과정에 비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업무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 주기적인 연락, 공유, 소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본 연구의 조사연구에서 아동의 입·퇴소, 사례관리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드러남.
- 가해부모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분리보호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분산으로 그 효과 측정이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짐.
- 실무자 의견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이후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는 체계가 비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실무자는 원가정 복귀과정, 퇴소과정에서 담당공무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이 입소과정에 비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9%~78.5%로 나타남.

□ 개선방안

- 보호종료 및 퇴소시 양육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견과 갈등 조정과 평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 관련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의 연관성을 높이고 서비스에 대한 통합 제공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 주기적인 연락, 공유, 소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임.

3) 분리 이후 아동의 부모 면접권 보장 명시

아동복지법은 분리조치된 피해아동과 가족간의 면접교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분리된 아동의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을 아동권리로 명시하고 있어, 분리조치된 학대 피해아동은 자신의 가족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부모 등 역시 자녀가 시설에 분리된 이후에도 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가족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기능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아동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거나, 부모에게 면접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분리조치된 시설이 의무적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복지법은 분리 이후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 '면접교섭권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더 나아가 피해아동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거나, 부모에게 면접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분리조치된 시설의 의무적인 면접교섭 지원 규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4) 분리 이후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 수립과 관련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피학대 아동에 대한 시설 분리보호 이후, 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분리보호가 결정되기 까지 관련된 정보가 보호서비스 담당기관과 보호시설 관련자간 공유가 어려우며, 원가정 복귀를 위한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업 등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설에 분리보호된 아동은 자신의 발달상태나 행동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정된 시설에서 새로운 양육과 생활방식에 그대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자기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학대 아동을 시설보호하는 담당자의 경우, 아동이 분리보호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며, 분리보호 이후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관해 누구와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 등이 모호하여 피학대 아동이 보호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소통하더라도, 피학대 아동의 개별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는 보호계획을 수립하거나, 원가정 복귀 등을 위한 서비스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피학대 분리보호아동이나 시설의 생활지도 교사 등 시설 담당자 모두에게 적응과 이해, 그리고 복귀 등의 일련의 보호과정에 어려움을 더해 준다.

피학대 아동의 분리보호 조치 이후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원가정 복귀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분리보호 이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서비스제공자'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학대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이후, 이 아동에 대한 정보가 분리보호시설관련자와 분리과정의 사례 담당자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어야 하고, 아동의 발달 상태와 행동 특성에 따라서 분리보호 계획과 원가정 복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개입하는 기관과 관련자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피학대 아동의 시설 분리보호 이후 아동의 발달과 행동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호시설에서 양육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보호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움.
- 피학대 아동의 분리보호 이후 분리보호결정과과정에서 개입한 기관과 인력이 시설 담당자와의 협업 규정 및 '주서비스 제공자' 지정 등의 제도가 없어 피학대 아동의 시설 분리보호 이후 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계획의 결정이 보호시설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개선방안

- 시설 분리보호 이후, 관련자가 참여하여 피학대 아동의 보호와 원가정 복귀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분리보호 이후, '주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여 이 워커가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분리보호 이후 아동의 발달과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 과정에 관련된 기관과 관련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5) 분리 이후 학교 등 아동의 생활환경 유지 관련 규정 마련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아동은 분리조치 이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던 경우가 조사 대상아동의 51.5%에 달했다. 분리보호 이전 친구들과 분리보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응답은 49.3%에 불과하다. 학대로 인한 피해 당사자 아동이 '보호'라는 미명하에 어느 날 갑자기 분리 이전의 생활환경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을 분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과정에서 가능한 아동의 분리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아동을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때도 아동이 생활하던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최소한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을 분리보호 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과 더불어 피학대 아동이 학대 후유증으로 인한 기본생활습관 어려움, 정서적 불안정성, 일부 피학대 아동의 발달 지연 등이 시설의 자가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되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양육시설은 더욱 아동의 분리보호 이후 아동이 낮은 지역과 환경에서 생활하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피학대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인프라 부족으로 분리 이후 아동의 생활이 전격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호 배치 관련 규정에 아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이 자신이 살던 거주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지역 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분리시설 선택 이후 해당 아동에 대한 최선이 결정이었음을 관련자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본 연구의 조사연구에서 아동은 분리조치 이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던 경우가 51.5%에 달했음. 분리보호 이전 친구들과 분리보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응답은 49.3%에 불과했음.

□ 개선방안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 자신이 살던 거주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배치 관련 규정 및 지역 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분리시설 결정 이후 아동최선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관련자와 아동이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6) 가해 부모 분리 방안 강화

가해자 분리조치에서 가해자와 피해아동 중 누구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준거에 따라 분리 대상을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동안 깊이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았다. 어쩌면 가해자인 어른을 분리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예견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한 순간이라도 위협받아서 안 된다는 보호중심의 아동복지적 관점에 대한 과몰입이 아동분리보호로 이어졌을 수가 있다. 재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면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즉각분리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동보호 대응체계에서 가해자가 아닌 아동분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평생 아동을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행위자 분리에 대한 아동학대 대응인력 및 사법체계 구성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 당사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 인식개선을 통해서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조치에 앞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자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피해아동분리가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관찰된다. 우선 가정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법 제도적으로도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을 유도하는 현실에서 2020년 통계에서 가해자 분리는 365건인 반면, 피해아동을 보호 시설에 인도한 건수는 1,285건으로 4배 더 많다. 가해자 체포와 아동안전장치 마련, 가해자 심시조치 중 유치 처분 적용, 가해자 접근 금지 조항 및 사건과의 회의 조항 개정, 감호외탁시설 및 가해자 격리를 위한 일시거주 시설 확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강화와 감호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황옥경 외, 2022).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즉각분리제도는 아동보호 대응체계에서 가해자가 아닌 아동분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2020년 통계에서 가해자 분리는 365건인 반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 인도한 건수는 1,285건으로 4배가 더 많음.

□ **개선방안**

- 행위자 분리에 대한 아동학대 대응인력 및 사법체계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필요함.

- 당사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조치에 앞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가해자 체포와 아동안전장치 마련, 가해자 심시조치 중 유치 처분 적용, 가해자 접근 금지 조항 및 사건과의 회의 조항 개정, 감호위탁 시설 및 가해자 격리를 위한 일시거주 시설 확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강화와 감호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임.

7) 분리보호시설의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지원과 평가

분리보호조치된 아동들은 ‘돌봐주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의 주관식 기술 문항에 대해 ‘친밀’과 ‘화목’을 꼽았다. ‘가족 같은 관계’에 대한 열망도 드러났으며, ‘평등’, ‘사생활 보호’ 욕구도 관찰되었다. 이는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환경 평가에서 아동이 시설의 보호자와 맺는 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보호자와 갈등적인 관계일 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안내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 ‘거주지 안전’, ‘현재 돌봐주는 보호자와의 관계’, ‘부모님과 관계’, ‘규칙적인 생활’, ‘나에 대한 관심’,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 전 문항에서 대체로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분리보호 아동은 ‘자신의 양육사와 미래 예측’에 대한 항목 점수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과 관계’가 가장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분리보호 아동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강한 부정적 평가와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치료 외에도 이들 아동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불안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분리보호 되면서 아동의 과거 생활이 유지 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는 불과 49.3%의 아동만이 ‘예’라고 응답했으며, ‘이곳에 생활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옮겨야 했다’는 아동도 51.1%에 이르렀다. 시설 분리보호 이후에도 아동의 기존 생활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가 계획되어야 한다. 분리조치 이후 이웃과의 관계에

서 바꾸고 싶은 것으로 ‘인사’, ‘친절하게 대하기’, ‘서로에게 관심’ 등 사회로부터 다시 분리 되지 않도록 이들이 지역사회 전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분리보호조치된 아동들은 ‘돌봐주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에 대한 주관식 기술 문항에 대해 ‘친밀’과 ‘화목’을 꼽았음. ‘가족 같은 관계’, ‘평등’, ‘사생활 보호’, ‘육구’도 관찰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아동 양육환경 평가에서 아동과 시설 보호자의 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자신의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관해서는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 ‘거주지 안전’, ‘현재 돌봐주는 보호자와의 관계’, ‘부모님과 관계’, ‘규칙적인 생활’, ‘나에 대한 관심’,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 전 문항에서 대체로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남.
- 그 중에서 ‘부모님과 관계’가 가장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분리보호 아동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강한 부정적 평가와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
-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질문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49.3%만 해당했음.
- ‘이곳에 생활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옮겨야 했다’는 아동도 51.1%로 나타났음.
- 분리조치 이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꾸고 싶은 것은 ‘인사’, ‘친절하게 대하기’, ‘서로에게 관심’ 등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 보호자와의 갈등적인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임.
- 상담치료 외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불안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시설 분리보호 이후에도 아동의 기존 생활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가 계획되어야 함.
- 사회로부터 다시 분리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전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8) 가해 부모의 보호

비록 아동학대 가해 부모이더라도 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존중과 참여는 아동과의 관계 유지와 가족보존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부모 및 보호자는 분리보호 조사과정이나 회의 등 참여가 저조하였고, '담당자가 존중했다'는 응답도 평균 3.02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전반적으로 가해 부모들은 조사 등의 일련의 아동보호과정에서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의 의견만 수용되었다'는 의견도 관찰되었다.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더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녀와 2년 이상 분리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아 분리보호의 장기화 우려를 낳았다. '분리보호 이후 자녀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연락했다'는 응답은 67.8%에 불과하였다. '월 1~2회' 연락이 가장 많았고, '연 1~2회'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자녀가 집에 돌아와 살기를 원하지만 77.8% 그렇지 않은 부모도 22.2%에 이른다. '자녀가 집에 돌아와 살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78.9%로 80%에 육박한다.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8.9%이었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경제적 여건', '양육태도', '책임감', '가정환경', '질병치료', '양육태도'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원가정 복귀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다학제적인 접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부모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이며 계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주변으로부터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지원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58.9%에 불과하다. 아동분리보호 서비스 과정에서 만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가족의 상황과 필요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자녀의 바른 성장관점에서 조언해 주기를 원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본 연구의 조사연구에서 부모/보호자는 분리보호 조사과정이나 회의 등에서 참여가 저조하였음. '담당자가 존중했다'는 응답도 평균 3.02점으로 비교적 낮았음.
- 가해 부모들은 조사 등의 일련의 아동보호과정에서 '자존감이 낮아졌다', '아동의 의견만 수용되었다',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더 충분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자녀와 2년 이상 분리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아 분리보호 장기화가 우려됨.
- 분리보호 이후 '자녀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연락했다'는 응답은 67.8%에 불과하였음.
- 분리보호 이후 연락 빈도에 있어서는 '월 1~2회' 연락이 가장 많았고 '연 1~2회'가 그 다음으로 높았음.
- 아동의 77.8%는 집에 돌아가 살기를 원하지만 부모의 22.2%는 원치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가 집에 돌아와 살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모/보호자의 인식은 79.8%로 80%에 육박함.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8.9%이었음.
- 변화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경제적 여건', '양육태도', '책임감', '가정환경', '질병치료', '양육태도' 등이 언급되었음.
- 원가정 복귀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가 큰 비율을 차지하였음.

□ **개선방안**

- 원가정 복귀를 위한 다학제적인 접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가해 부모를 위한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지원이 계획되어야 함.

3. 아동인권 기반 가정복귀 지원 절차 및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아동보호서비스에서 가정복귀 원칙이 중시되고 있지만, 가정복귀를 위한 절차와 아동이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한번 분리되면 가정복귀 절차가 진행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가족과의 단절이 길어져 관계회복이 어렵게 되고, 가정복귀는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도 '부모님 중 한분과 연락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가 32.8%에 이른다.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자신을 잘 이

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63.4%에 불과하다. 부모님과 연간 1~2회 만나는 아동은 39.6%로 40%에 육박한다. '부모님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시는 경우'는 64.9%에 불과하다.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경우'는 70%, '아동에게 소중했던 사람들과 분리 이후에도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는 62.7%에 불과하다. 실무자는 '아동이 부모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경우에 31.9%만이 응답하였고, '아동이 소중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에는 56.2%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대부분 시설 분리보호 이후 아동이 부모 혹은 다른 가족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원가정 복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54.6%에 불과하다.

그동안 가정복귀 원칙에 대한 이견 없는 동의에도 불구하고 가해부모의 저항과 낮은 행동변화가능성 예측, 가족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가정복귀를 위한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는 데 대해 소극적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시설 분리 이후 가정복귀 프로그램의 운영과 가정복귀 이후 가정지원 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정복귀를 위한 준비 혹은 적응과정 프로그램과 개입 인력 등도 아동이 분리된 시설장에 의해 계획되어 시설 마다 천차만별이며, 적응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나 개입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정복귀 기준도 모호하다. 가정복귀 절차는 시설장의 의뢰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확인과 평가를 통해 관련사항에 대해 사례 결정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각 단계에서의 전문적 평가나 확인을 확신하기가 어렵다. 이 평가 과정에서 시설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족허브를 통한 가정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가정복귀 지원을 포함하였고, 가족지원프로그램이 다른 아동보호서비스와 분절되지 않고, 가족지원의 맥락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가정복귀는 시설 분리보호 직후부터 체계적이며 세밀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정복귀의 구체적인 절차는 여기서 정리하고자 한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학대를 조사하는 학대전담공무원, 가정 분리 이후 관여하게 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등 관여된 모든 기관과 관계자가 연계하고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 등 관계자의 역

할과 협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매뉴얼)과 실천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수퍼비전 등의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은 아동분리보호 직후, 아동의 시설 분리보호 기간, 원가정 복귀 직전, 원가정 복귀이후 아동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한번 아동분리가 되면 가정복귀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가족과의 단절이 장기화되어 관계회복과 가정복귀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음.
- 본 연구의 조사연구에서도 '부모님 중 한 분과 연락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가 32.8%이었음.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63.4%에 불과하였음.
- 부모님과 연간 1~2회로 만나는 아동은 39.6%로 나타났고,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과 분리 이후에도 연락하고 지내는 아동은 62.7%에 불과하였음.
- 실무자는 '아동이 부모,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문항에 31.9%만이 응답하였고, '아동이 소중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56.2%만이 해당됨.
-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54.6%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가정복귀를 위한 절차와 마련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시설 분리 이후 가정복귀 프로그램의 운영과 가정복귀 이후 가정지원 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가정복귀 기준도 모호하며 가정복귀 절차와 평가 과정에서 시설이 배제된 경우도 있음.

□ 개선방안

- 가족지원프로그램이 다른 아동보호서비스와 분절되지 않고 가족지원의 맥락에서 제공되어야 함.
- 아동의 가정복귀는 시설 분리보호 직후부터 체계적이며 세밀하게 제공되어야 함. 가정복귀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① 관련 모든 기관과 관계자가 연계,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과정이 되어야 함. ② 관계자의 역할과 협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매뉴얼)과 실천가들의 역량 강화 교육과 수퍼비전 등의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함. ③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4단계(아동분리보호 직후, 시설 분리보호 기간, 원가정 복귀 직전, 원가정 복귀 이후)로 구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1) 아동분리보호 직후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시작’ 프로그램

원가정 복귀는 아동이 시설 분리보호 이후 가족과 관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동이 분리 이후에도 가족을 정기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게 하면 가정 복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분리초기부터 아동과 가족의 관계 유지가 가정복귀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연락두절’ 상황을 가장 크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여겼는데, 이런 결과는 아동의 시설 분리보호 이후, 부모에게 자녀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한다.

“... (부모가) 죄책감과 수치심에 아이를 보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언제든지 만남을 한다면 (부모가) 아이들이 점점 더 보고 싶을 수 있죠. 아이들도 부모를 만나지 않다 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점점 많아져서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할 얘기도 많아지고 더 보고 싶어서 부모님들이 이사 오시기도 합니다.”

시설 분리보호 이후 가정복귀를 위한 절차와 과정은 ‘시설 분리 이후 부모와의 관계 유지’와 ‘원가정 복귀직전 심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원가정 복귀 판정이 내려진 경우와 원가정 복귀 불가 판정의 분리보호 아동 모두에 대한 ‘아동발달 상황 점검 평가회의’ 절차도 필요하다.

먼저, 분리보호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 ‘부모와의 관계 유지’가 가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분리기간이 길어지면, 분리상황이 고착되어 가정복귀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때문에 시설 분리 이후 아동이 자신의 부모 및 가족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보장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아동이 시설에 분리될 때 부모에게 자녀를 만나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해야 할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원하는 아동과 달리, 부모들은 분리를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가족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부모에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부담을 덜 갖도록 하기 위해 선택 가능성을 주면, 아동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 분리초기부터 부모와 아동의 면접교섭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기(시설)가 편하고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부모가 처음에 아이를 보육 시설을 두고 갈 때 만남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던 안 (지키더라도...)”

“ 일반적으로 ‘몇 회를 만나야 된다, 대면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나 아동의 상황에 맞춰서 전화나 문자 혹은 시설 방문이나 가정 방문, 경우에 따라서 외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죠.”

본 연구의 주관식 조사 문항인 ‘부모와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의 문항에 대해 ‘싸움’을 들었고, ‘더 자주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동들의 이러한 응답내용은 분리 이후 초기 부모면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은 조사에서 ‘사랑 받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자주 만나고 싶다’, ‘칭찬받기 원한다’는 긍정적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를 절실하게 드러냈다.

□ 현황 및 문제점

- 본 연구의 조사연구에서 전문가는 ‘연락두절’ 상황을 가장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음. 이런 결과는 아동의 시설 분리보호 이후 부모에게 자녀와의 관계유지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을 보여줌.
- 시간이 흐르면서 아동은 원가정 복귀를 원하는 반면 부모는 분리를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음.
-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라는 문항에 대해 ‘싸움’을 언급하였고 더 자주만나고 싶은 욕구도 표현하였음.
- 또한, ‘사랑받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자주 만나고 싶다’, ‘칭찬받기 원한다’는 긍정적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여실히 나타났음.

□ 개선방안

- 아동의 시설 분리 이후 부모의 면접 책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시설 분리 이후 아동의 부모 면접 권리를 규정해야 함.

2) 시설 분리보호 중 부모 등 가족과의 관계유지 프로그램 및 보호 시설 평가

아동의 분리보호가 안정화되고, 그 기간도 길어지면, 부모 모임 등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와의 접촉이 유지되고, 자녀의 변화를 관찰하고, 생활을

들여다보며, 동시에 부모 자신의 생활과 변화양상을 자녀에게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베이비 박스 등을 통해 입소한 아동이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원가정과의 관계가 단절된 무연고 아동의 경우 대안가족을 발굴하여 아동이 가족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안가족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가족경험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시설종사자는 아동이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관련 규정과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학제적인 전문가의 조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분리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이 맺는 관계의 질 변화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가정복귀의 가능성과 시점 등이 전문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를 위해 분리조치된 아동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활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아동의 발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발달 상황 점검 평가회의가 지금보다 더 자주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정기점검 주기를 지나치게 장기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생활에 대한 점검은 (업무 매뉴얼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로 접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아동복지법 제15조의3)) 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발달 상태에 대한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양육상황 점검 주기를 1년에서 6개월 등으로 단축할 수 있어야 함, 양육상황 점검 주기는 아동발달 상태 보고절차 주기와 연동되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고와 점검 주기가 최종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정기점검 주기를 지나치게 장기로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15조의 3에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부모 모임 등을 통해 자녀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자녀의 변화를 관찰하는 등의 기회 마련이 필요함

- 대안가족을 발굴하여 아동에게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가족 경험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음.
- 분리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의 관계의 질, 행동변화 등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과 평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동생활 상태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아동발달 상태에 대한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양육상황 점검 주기를 1년에서 6개월 등으로 단축할 수 있어야 함. 양육상황 점검 주기는 아동발달 상태 보고절차 주기와 연동되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고와 점검 주기가 최종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원가정 복귀 직전 원가정 복귀 평가 프로그램

현행 ‘아동학대가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는 평가 기준을 아동의 원가정 복귀 요건 평가로 보는 것은 충분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시설 분리 아동을 만날 기회가 없는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원가정 복귀는 시설의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서비스 참여 인력, 전문가 등의 공조와 협력 하에 확인과 평가과정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완전 복귀이전, 몇 단계의 사전 연습과 적응을 거친 후에 부모와 아동 모두 가정복귀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다학제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복귀과정에서 정교하게 설계 적용될 때, 수급비 수혜 때문에 자녀를 억지로 원가정 복귀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판별되어 가정복귀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다.

피해아동복귀 심사 시에 피해아동의 분리와 복귀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주체들이 상호의사소통하여 피해아동복귀 평가를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상에서 아동보호조치를 통해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데, 피해아동보호 명령은 가정법원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사례별로 피해아동의 분리와 복귀주체가 달라 아동복귀 심사 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분리보호의 경로를 확인하고, 분리보호 과정에 개입된 기관들이 상호 소통하여 원가정 복귀절차가 행정적, 사법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원가정 복귀심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가정 복귀 수준을 판단하는 준거가 있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1) 학대 유발요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소되었는지, (2) 재학대 유발요인이 없는지, (3) 아동과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은 원가정 복귀 후 갈등상황에 대처할 만한 것인지, (4) 아동과 부모의 재애탁이 얼마나 발달하였는지, (5) 소득의 안정성은 있는지, (6) 부모의 불안정성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7) 자녀의 불안정성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8) 기타 학대를 유발한 요인들이 사라졌는지 등 공통적으로, 그리고 개별가족에 따라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이들 각 항목에 대한 확인과 면밀한 검토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가정 복귀를 위한 모든 과정은 아동인권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아동과 가족 모두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재학대로 이어지는 등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보호자의 행동과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을 수 있고, 부모의 학대를 유발하는 아동의 행동상의 어려움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리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전 재결합 적응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아동학대가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는 평가 기준에 의거한 아동의 원가정 복귀 요건은 타당하지 않음.
- 사례별로 피해아동의 분리와 복귀 주체가 다른 점은 아동복귀 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원가정 복귀는 관련 기관을 망라한 심사 절차와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함.
- 원가정 복귀를 위한 모든 절차와 심의 과정은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심사항목도 개발되어야 함.
- 심의 사항: 학대 유발 요인 해소정도, 재학대 유발수준 평가, 아동과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수준(원가정 복귀 후 갈등상황 대처 역량), 재애탁 발달 수준, 소득 안정성, 부모문제 해결 수준, 자녀문제 해결 수준, 기타 학대 유발 요인 상존 수준, 위기시 대응방안 등.
- 분리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전 재결합 적응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함.

4) 원가정 복귀이후 아동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

먼저 원가정 복귀후 서비스 제공 절차와 과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단순 매뉴얼 수준에서의 지침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제공될 것

도록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의 하나로 규정되어야 한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원가정 복귀후 가족지원 서비스 담당자는 원가정 복귀 요건을 충족한 아동과 가족 요인이 원가정 복귀후에도 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아동과 부모의 변화를 관찰하고 새로운 위협의 등장 여부를 확인·평가해야 한다. 원가정 복귀 이후, 면밀한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아동이 재학대 되는 등의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확인과 평가 과정은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이후 가족지원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지원과 사회 복귀 지원 촉진
- 가족의 실직여부
- 경제적/주거상/건강상의 안전성
- 아동학대 유발 요인의 재등장 여부와 재등장 시 그 정도와 상황 등 파악
- 아동과 부모의 일상생활 패턴
- 부모와 자녀의 일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유형과 양
- 다른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 새롭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무 여부 등
- 예상을 벗어난 가족에 대한 문제가 인지되었는지 여부

□ 현황 및 문제점

- 원가정 복귀 이후 아동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임.

□ 개선방안

- 원가정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절차와 과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이후 가족지원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①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지원과 사회 복귀 지원 촉진, ② 가족 실직여부, ③ 경제적/주거상/건강상의 안전성, ④ 아동학대 유발요인 재등장 여부와 그 정도와 상황 등 파악, ⑤ 아동과 부모의 일상생활 패턴, ⑥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의 유형과 양, ⑦ 다른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⑧ 새롭게 필요한 서비스 유무 여부, ⑨ 예상을 벗어난 가족의 문제 인지 여부 등.

참고문헌

- 강은영, 김희균(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 피해아동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현주, 김형태, 이상무, 정선옥, 임세와, 이미라, 양해만(2021). 아동보호체계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관계부처 합동(2021). 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 김미숙(2020). 학대 피해아동분리보호 개선방안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35, 169-192.
- 김세원, 김지혜, 김경희(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 피해아동분리보호 결정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3).
- 김세원, 박지명, 김경희(2020). 학대 피해아동분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과 권리, 24(4), 665-690.
- 김연수, 신창식(2017).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양가성 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2), 63-85.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전선영, & 김평화.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668.
- 김유경, 변미희, 임성은(2010). 국내 입양실태와 정책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충래, 김미영, 박은미, 강현아, 신혜령(2008). 발달단계 및 위탁형태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4), 238-264.
- 노충래, 정익중, 강현아, 오승환, 박은혜, 신지현, 한혜정, 정한나. (2015).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노혜련, 김경희, 김성규, 소라미, 신수경, 원혜연, 황준협(20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서울: 대한민국정부
- 류정희(2018).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59호, 7-24.
- 박성호(2013). 유럽연합 친권법 원칙과 한국 친권법 비교연구. 법학논고 42, 219-246.
- 박세경, 서문희, 강주희, 서영숙, 진미정, 노성향. (201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주영(2015).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권제한조치: 아동학대특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6(1), 349-377.

- 법무부(20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3.29.). 즉각분리 시행 1년(3.30), 학대 피해아동들의 보다 안전한 보호 위해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3.31.) 즉각분리 시행 1년(3.30), 학대 피해아동들의 보다 안전한 보호 위해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5.31.). 2021년도 국가보호대상 아동 3,567명 발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5.31.). 2021년도 국가보호대상 아동 3,567명 발생.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2.9.).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1). 2021 보건복지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2022).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2022).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1.
- 보건복지부(2022).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2.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권.
- 서영민, 김승영. (2019).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및 개편 현황.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여름), 125-130.
- 신수경. (2021).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21, 285-328.
- 윤수경, 이상균, 유조안, 이봉주, 김세원, 김현수, 장화정, 김경희. (2019). 가정외 보호를 경험한 학대 피해아동의 권리에 관한 질적연구. 아동과 권리, 23, 593-625.
- 이경은(2016). UN 아동구너리협약상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법리와 한국의 아동보호 법제. 입법과 정책, 8(2), 193-219.
- 이경은, 김미정 (201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분리보호 수행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207-234.
- 이경은, 염동문, 김미정 (2014).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8, 89-118.
- 이은정. (2019). 피해아동의 분리보호와 친권의 제한. 가족법연구, 33(2), 291-324.
- 이주영(2021). 아동기 외상유형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철회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경직성의 매

- 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3(1), 75-96.
- 장영인(2018).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9(1), 143-175.
- 장윤영, 박태영(2006),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425-456
- 정응석, 문영희. (2012).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법무부.
- 최은희, 윤여정, & 류경희. (2005). 학대받은 아동의 쉼터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9), 37-73.
- 한미현. (2005). 가정해체의 실태 및 해체가정아동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3(1), 87-102.
- 헬스조선. "아동학대, '부모 분리' 가장 중요... 전문가 개입 필수". 2021.1.11.자.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1/20210111102462.html
- 황옥경, 김형모, 이영애, 정선영, 노은선(2021). 코로나 19 등 재난 대응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황옥경, 홍관표, 송미령(2022). 아동학대 행위자 분리방안 연구, 법무부.
- AIHW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1)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indicators. Catalogue number CWS 62, AIHW, Australian Government, accessed 23 November 2021.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2)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20-21, AIHW, Australian Government, accessed 15 June 2022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7-18. Retrieved from: <https://www.aihw.gov.au/reports/child-protection/child-protection-australia-2017-18/contents/table-of-contents>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1).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9-20. Child welfare series no. 74. Cat. no. CWS 78. Canberra: AIHW.
- Benedic, M. I., Zuravin, S., and Stalling, R. Y.(1996). Adult Functioning of children who lived in kin versus nonrelative family foster homes, Child Welfare 75, 529-549.
- Brammer, A.(2015). Social Work Law(14th), Pearson.
- Bromfield L & Holzer P (2008) A national approach for child protection: project report- external site opens in new window : after. Australian Institute of

- Family Studies, Australian Government, accessed 28 October 2022.
- Burns, B., Phillip, S. and Wagner, R.(2004). Mental Health Need and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by Youth Involved with Child Welfare: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3, 960-970.
- 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CFCA). (2018). What is child abuse and neglect? (CFCA Resource Sheet). Melbourn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Retrieved from aifs.gov.au/cfca/publications/what-child-abuse-and-neglect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3).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Choi, S. & Ryan, J. P. 2007. Co-occurring problems for substance abusing mothers in child welfare: Matching services to improve family reunific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11): 1395-1410.
- Clausen, J. , Laudsverk, J., Ganger, W., Chadwick, D. and Litronwnik, A.(1998). Mental Health problems of children in Foster car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7, 283-296.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July. 20, 2009, General Comment No. 12 Retrieved from <https://www.refworld.org/docid/4ae562c52.html>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18) National protocol on reducing criminalisation of looked-after children. London: DfE.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21) 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s volume 2: care planning, placement and case review (PDF). London: DfE.
- Department of Health (2021) A life deserved: “caring”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Northern Ireland..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2018). Australian Government response to the Royal Commission into the Protection and Detention of Children in the Northern Territory. Retrieved from: 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news/2018/australian-government-response-to-the-royal-commission-into-the-protection-and-detention-of-children-in-the-northern-territory
- Dorothy E. Roberts, (1999). Is There Justice in Children’s Rights?: The Critique of Federal Family Preservation Policy.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2(1),

125-140.

- Freeman, M.(2007). Article 3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Leiden: Martinus Nijhoff.
- Hort, K. A. (2000). Is Twenty-Two Months beyond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ASFA's Guidelines for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Fordham Urban Law Journal*, 28(6), 1879-1921.
- Krugman, R. (1999). The politics. *Child abuse & neglect*, 23(10), 963-967.
- Lau, A. S., Litrownik, A. J., Newton, R. R. and Landsverk, J. (2003). Going home: The complex effects of reunification on internalizing problems among children in foster car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4), 345-358.
- Laudsverk, J., Garland, A. F., and Leslie, L. K.(2002).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reported to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2n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Lynch, G. (2020). Pathways to the 1946 Curtis Report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children's out-of-home care. *Contemporary British History*, 34(1), 22-43.
- Parenting Research Centre (PRC). (2017). Engagement of birth parents involved i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A scoping review of frameworks, policies, and practice guides. Retrieved from: https://www.parentingrc.org.au/wp-content/uploads/Engagement-of-birth-parents-involved-in-the-child-protection-system_2018-text-edit.pdf
- Pine, B. A., Spath, R., Werrbach, G. B., Jenson, C. E. and Kerman, B. (2009). A better path to permanency for children in out-of-home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10), 1135-1143.
- Price-Robertson, R., Bromfield, L., & Lamont, A. (2014). International approaches to child protection: What can Australia learn? (CFCA Paper No. 23). Retrieved from: <https://aifs.gov.au/cfca/publications/international-approaches-child-protection>
- Salveron, M., and Arney, F. (2012). Understanding the journey of parents whose children are in out-of-home care. In D. Scott & F. Arney (Eds.), *Working with vulnerable families: A partnership approach* (pp. 213-2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veron, M., Lewig, K., & Arney, F. (2009). Parenting groups for parents whose children are in care. *Child Abuse Review*, 18(4), 267-288. doi:10.1002/car.1070
- Scottish Government (2016)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national guidance on part 12: services in relation to children at risk of becoming looked after, etc.
- Scottish Government (2021) Staying together and connected: getting it right for sisters and brothers: national practice guidance.
- Taussig, H. N., Clyman, R. B. and Landsverk, J. (2001). Children who return home from foster care: A 6-year prospective study of behavioral health outcomes in adolescence. *Pediatrics*, 108(1), 1-7.
- Ten Brummelaar, M. D. C., Post, W. J., Arkesteijn, P. A., Kalverboer, M. E., Harder, A. T., & Knorth, E. J.(2018). Perceived living conditions of young people staying in secure residential car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 Self-report questionnaire (BIC-S). *Child indicators research*, 11(4), 1175-1192. [5]. <https://doi.org/10.1007/s12187-017-9460-0>
- Ten Brummelaar, M.D.C., Kalverboer, M.E., Harder, A.T. et al.(2014).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Self-Report Questionnaire (BIC-S): Results of a Participatory Development Process. *Child Ind Res* 7, 569-588 <https://doi.org/10.1007/s12187-013-9225-3>
- The United Nations.(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Titterton, A. (2017). Indigenous access to family law in Australia and caring for Indigenous childre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40(1), 146.
-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 CAT. (2005). Guidelines on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under Article 19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Retrieved from <https://www.refworld.org/docid/43f2fe4611.html>.
- Unite Nations. (2010).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Retrieved from https://www.unicef.org/protection/alternative_care_Guidelines-English.pdf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3). General comment No.14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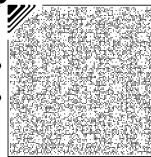
primary consideration (art.3, para.1). CRC/C/GC/14.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08). UNICEF child protection strategy. F/ICEF/2008/5/Rev.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3). The children's bureau legacy: Ensuring the rights to childhood.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Vuckovic Sahovic, N., Doek, J., & Zermatten, J.(2012). The rights of the child in international law: Rights of the child in a nutshell and in context: All about children's rights. Bern: Stampfli.

Wulczyn, F. (2004). Family reunification. The future of children, 14(1), 95-113.



부 록

부록 1. 연구 안내문 (아동용)

연구 안내문

• 연구개요: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연구의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아동이 지내오던 환경을 떠나 형제·자매, 학교와 친구, 선생님 등 익숙한 생활환경에서도 분리되어 아동 생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여,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분리조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리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분리 조치 경험이 있는 관련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Zoom)의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연구참여와 동의 : 본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은 귀하의 선택이며,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하심으로써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 비밀보장과 자료의 폐기 :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될 것이며,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FGI에서 다루지는 인터뷰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가 끝나면 그 내용이 즉시 폐기될 것입니다.

• 인터뷰 내용의 녹화와 FGI 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를 위한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다룰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녹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보다 바람직한 아동분리조치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FGI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연구책임 :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연구관련 문의 : 배다솜 연구원

핸드폰 : 010-000-000

E-mail : 0000@gmail.com

부록 2. 연구 안내문 (보호자용)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인터뷰 안내

아동의 부모님(양육자) 또는 아동을 보호하고 계신 시설의 담당자 분께.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연구의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아동이 지내오던 환경을 떠나 형제·자매, 학교와 친구, 선생님 등 익숙한 생활환경에서도 분리되어 아동 생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여,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조치’ 또는 ‘즉각분리’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아동기는 생애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아동분리조치는 단순히 보호자와의 분리에 그치지 않고,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학교, 친구·선생님 등 익숙한 생활환경에서도 분리되기 때문에 아동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분리조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리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 있는 질문을 인터뷰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연구책임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인터뷰 진행	김형태 교수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문의	배다솜 연구원	010-000-000

부록 3. 연구 안내문 (실무자/전문가용)

연구 안내문

• 연구개요: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연구의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아동이 지내오던 환경을 떠나 형제·자매, 학교와 친구, 선생님 등 익숙한 생활환경에서도 분리되어 아동 생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여,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분리조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리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분리 조치 관련 전문가·실무자를 모시고 온라인 방식(Zoom)의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연구참여와 동의 : 본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은 귀하의 선택이며,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하심으로써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 비밀보장과 자료의 폐기 :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될 것이며,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FGI에서 다루지는 인터뷰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가 끝나면 그 내용이 즉시 폐기될 것입니다.

• 인터뷰 내용의 녹화와 FGI 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를 위한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다룰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녹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보다 바람직한 아동분리조치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FGI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연구책임 :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연구관련 문의 : 배다솜 연구원

핸드폰 : 010-000-000

E-mail : 0000@gmail.com

부록 4. 연구 참여 동의서 (아동용)

연구 참여 동의서 (아동용)

“본인은「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연구를 위한 FGI에 참여함에 있어 연구에 대한 안내와 연구참여 및 동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개인정보 및 인터뷰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종료 후 자료의 폐기,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FGI 내용의 녹화와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합니다.”

2022년 월 일

연구참여자	성 명	(서명)
주소		
연락처		

보호자	성 명	(서명)
연구참여자와의 관계		

연구책임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공동연구(FGI 진행) 김형태(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관련문의 : 배다솜 연구원
(010-0000-0000, 0000@gmail.com)

부록 5. 연구 참여 동의서 (부모/보호자용)

연구 참여 동의서 (부모/보호자용)

“본인은「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연구를 위한 FGI에 참여함에 있어 연구에 대한 안내와 연구참여 및 동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개인정보 및 인터뷰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종료 후 자료의 폐기,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FGI 내용의 녹화와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합니다.”

2022년 월 일

연구참여자	성 명	(서명)
주소		
연락처		

연구책임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공동연구(FGI 진행) 김형태(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관련문의 : 배다솜 연구원
(010-0000-0000, 0000@gmail.com)

부록 6. 연구 참여 동의서 (실무자/전문가용)

연구 참여 동의서 (실무자/전문가용)

“본인은「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연구를 위한 FGI에 참여함에 있어 연구에 대한 안내와 연구참여 및 동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개인정보 및 인터뷰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종료 후 자료의 폐기,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FGI 내용의 녹화와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합니다.”

2022년 월 일

연구참여자	성 명	(서명)
소속		

연구책임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공동연구(FGI 진행) 김형태(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관련문의 : 배다솜 연구원
(010-0000-0000, 0000@gmail.com)

부록 7. FGI 질문 문항 (아동 및 보호자용)

1. 아동 분리가 이루어진 배경(왜 분리되었는지?)
2. 분리보호 결정과정에 당사자(아동, 부모)가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어떻게 참여했는지?
3. 아동의 분리 결정에 대한 안내나 설명 등을 들었는지?
4. 분리보호조치 과정에 대해 / 분리 이후의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5. 아동 분리 이후 아동을 어디에서 보호할지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6. 분리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7.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족 중 누구와 만났고, 누구를 만나지 못했는지?
8. 분리 이후 아동은 가족 중 어떤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었고, 어떤 가족과의 관계는 유지되지 않았는지?
9.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족을 만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10.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11. 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 느낌을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12. 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걱정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13. 분리보호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14. 분리보호로 인해 도움이 된 점 /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15. 분리 이후의 과정은 어땠는지?
16. 현재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곳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아동, 가족)의 참여가 있었는지?
17. 현재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곳의 환경 등은 어떤 곳이며 지내기에 어떤지?
18. 현재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곳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19. 현재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곳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20.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점, 가정 걱정이 되는 점?
21. 아동이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2.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언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23.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어떤 도움(지원)을 받고 있는지?
24. 현재 보호받고 있는 곳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지원)은 무엇인지?
25.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어떤 도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26. (부모에게)분리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아동의 부모가 갖는 의무, 권리, 역할에 관해 들어보았는지, 들어보았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27. (부모에게)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본인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2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부록 8. FGI 질문 문항 (실무자/전문가용)

1. 아동의 분리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파악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동분리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과 한계(법률적, 실천적)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외 보호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법률적, 실천적)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복귀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한계(법률적, 실천적)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학대받은 아동의 분리에 있어 주요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분리조치 과정에서 (실무자가)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요?
7.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외 보호체계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주로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지요?
8.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외 보호체계를 결정할 때 아동최선의 이익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가정외 보호체계가 아동이 살아온 지역과 가까운지, 아동이 가족과 접촉하기 좋은 조건인지, 형제자매가 함께 분리되었을 경우 가까운 지역에서 함께 보호되는지 등을 고려하는지 등.
9.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제공(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10. 분리조치 이후 아동이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는지요?
11. 분리조치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분리조치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외 보호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외 보호에 있어서의 실천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법률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실천적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 아동의 분리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 아동의 분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다뤄주길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요?
19.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뤄진 내용 이외에 현장에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및 격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9. 시설장 대상 시설환경 파악 질문 (시설방문 시)

1. 귀 시설은 개인 시설인지, 법인 시설인지? 법인이라면 어떤 법인이며 법인 산하에 어떤 시설이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2. 귀 시설(법인시설이라면 법인에 대해서도)의 연혁(최초 설립일, 설립과정, 그동안의 간략한 역사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3. 귀 시설의 운영자(시설장)는 어떤 분이시고, 종교적 배경, 운영철학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귀 시설이 학대 피해아동보호시설로 운영되어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처음부터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되었는지?)
5. 귀 시설은 학대 피해아동만 보호하고 있는지요? 학대 피해아동 이외의 아동도 보호하고 있다면 어떤 아동들인지요?
6. 현재 보호하고 계신 아이들은 몇 명이며 어떤 아이들인가요? ※ 성별, 나이, 학년(재학 중인 경우)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합니다.
7.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학대를 당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합니다.
8.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지원과 서비스를 받는지요? ※ 학대받은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어떤 지원과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파악합니다.
9.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외 보호체계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주로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지요?
10.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가정외 보호체계를 결정할 때 아동최선의 이익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11. 학대 피해아동이 시설에 처음 오게 되면 아동은 보통 어떤 상태인지요?
12. 학대 피해아동이 처음 시설에 오면 시설에서는 아동에게 어떤 조치(제공되는 물리적 환경, 제공되는 서비스 등)를 하나요?
13. 학대 피해아동이 처음 입소한 이후 시설에서 지내면서 보통 어떤 변화를 보이나요?
14.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입장에서 학대 피해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15. 아이들은 시설장과 종사자를 부를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르나요?
16. 귀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자기가 살던 집이나 지역이 가까운 편인가요? 먼 편인가요?
17. 귀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형제나 자매가 있을 경우 얼마나 자주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나요?
18. 귀 시설에서 지내는 학대 피해아동은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누구와 얼마나 접촉(전화통화 또는 가정방문이나 만남 등) 하나요?
19. 귀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20. 귀 시설은 학대 피해아동이 원가정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21.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 분리, 가정외 보호, 가정으로의 복귀 등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시설을 라운딩 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시설 내외부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녹음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0. 설문지 (아동용)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p>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p> <p>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p> <p>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p>

※ 학년과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학교급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학년	__학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1. 양육환경

<p>여러분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양육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세요.</p>	
<p>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p>	
<p>1. 여러분의 식사와 간식은 영양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나요?</p>	<p>① 예 ② 아니오</p>
<p>2. 여러분은 자기 방이나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나요?</p>	<p>① 예 ② 아니오</p>
<p>3. 여러분이 받고 있는 보살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예를 들어, 식사와 간식이 충분한지, 옷이 충분히 있는지, 자기 방이 있는지, 병원에 갈 수 있는지 등)</p>	<p>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p>
<p>만일 여러분이 '받고 있는 보살핌'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p>	

거주지 안전: 주거공간 및 주거지 주변	
4.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5.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마주 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6.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살고 있는 동네가 폭력적인지, 안전하지 않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지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만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보호자(현재 돌봐주시는 분)와의 관계	
7. 보호자가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① 예 ② 아니오
8. 보호자와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서로 좋은 관계인지 등)	① 예 ② 아니오
9. 보호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요? (예를 들어, 보호자가 여러분을 잘 이해한다고 느끼는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지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만일 여러분이 '돌봐주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부모님과과의 관계	
10.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여러분과 연락하고(만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1. 부모님(어느 한분이라도)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만났고) 있나요?	① 연1~2회 ② 월 1~2회 ③ 주1~2회 ④ 주 3회 이상
12.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3. 부모님중 한 분이라도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서로 좋은 관계인지 등)	① 예 ② 아니오
14. 여러분은 부모님과 관계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이해한다고 느끼는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지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만일 여러분이 '부모님과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규칙적인 생활	
15. 여러분은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보내나요?(예를 들어,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가는지 등)	① 예 ② 아니오
16. 하루 일과를 보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7. 그 규칙을 정할 때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8. 여러분이 지켜야 할 하루 일과의 규칙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만일 여러분이 '하루일과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나에 대한 관심	
19.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0. 여러분의 '돌봐주는 보호자'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계신가요?	① 예 ② 아니오
21.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④ 매우 관심이 많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	
22. 여러분은 부모님 외 다른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3. 여러분은 가족들과 지금도 만나는 등 관계를 맺고 있나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웃, 다른 가족 등)	① 예 ② 아니오
24. 여러분은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만족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있나요?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할 때, 조부모님 등 가족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만일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살핌'에 대해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2. 사회환경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사회 주변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세요.

이웃과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지원	
1. 여러분은 이웃사람이 친절하고 믿을만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 여러분은 이웃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거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 여러분은 이웃사람 중 의지할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가족, 친구, 이웃 또는 종교 공동체의 사람들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4. 여러분은 이웃사람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믿을만한 이웃이 있는지, 주변에 다투는 이웃은 없는지, 위험한 이웃은 없는지 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만일 여러분이 '이웃사람들의 도움'에 대해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5.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 단체, 동아리 등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

6.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 단체, 동아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7. 이웃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① 예 ② 아니오
8. 여러분은 이웃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 기관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만일 여러분이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대해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차별과 존중

9. 여러분의 사생활은 보장받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0. 여러분은 차별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1.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얼마나 존중받는다고 느끼나요?	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②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③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 ④ 정말 많이 존중받는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중'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교생활

12. 여러분은 이곳에 생활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옮겨야 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3. 여러분은 현재 학교생활이 즐거운가요?	① 예 ② 아니오
14.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운동, 미술, 음악 등)을 할 수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5.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6. 여러분은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지, 공평한 대우를 받는지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	--------------------------------------

만일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친구 관계

17. 여러분은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연락을 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8. 여러분은 현재 친한 친구가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9. 여러분은 친구 관계가 만족스러운가요? (예를 들어, 같이 놀 때 즐거운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지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만일 여러분이 '친구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지난 생활 경험

20. 어릴 때, 이사를 자주 다녔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1. 여러분의 삶에서 위험한 일들이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3. 여러분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만일 여러분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3. 참여 및 의사표현 기회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에서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세요.

참여과정	
1. 여러분은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 없이 자랄 권리'에 대해 들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 여러분은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에 대해 들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 여러분은 부모님과 헤어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5. 여러분은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선의 도움이 될지에 대해 각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을 들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6. 여러분은 이곳에 오기 전에 거쳤던 여러 과정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7. 여러분은 이곳에 오기 전에 각 서비스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8. 여러분은 이곳에 오기 전에 이곳의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9.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각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로 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0.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지내게 될 곳(시설, 기관 등)을 '선택'할 수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1. 여러분은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2. 여러분은 부모님과 헤어진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3.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생님(경찰, 상담자 등)이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p>14. 부모님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생님(경찰, 상담자 등)은 믿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지 않도록 둘만의 안전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나요?</p>	<p>① 예 ② 아니오</p>
<p>15. 여러분은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곳에 오게 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p>	<p>① 예 ② 아니오</p>
<p>16. 여러분이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곳에 오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반영되었나요?</p>	<p>① 예 ② 아니오</p>

부록 11. 설문지 (보호자용)

1. 귀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귀하는 귀하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귀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1. 아동보호 조사과정 및 아동분리보호조치 경험

다음은 아동보호조사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세요.

1. 귀하(부모)는 자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조사 결과 과정에 참여했습니까?	① 항상 ② 자주 ③ 드물게 ④ 전혀 ⑤ 해당없음
2. 아동보호 조사과정에서 주요 회의 전과 회의 중에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까?	① 항상 ② 자주 ③ 드물게 ④ 전혀 ⑤ 해당없음
3. 아동보호 조사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다른 전문가들은 귀하(부모)를 존중하였습니까?	① 항상 ② 자주 ③ 드물게 ④ 전혀 ⑤ 해당없음
4. 아동보호 조사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5. 아동보호 조사가 귀하(부모)의 취업이나 향후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6. 귀하(부모)는 아동보호 조사과정에서 만난 담당자(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전혀 신뢰 안함 ~ ⑩ 전적으로 신뢰함) ① ~ ⑩
<p>귀하(부모)의 경험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예를 들어, 아동보호 조사과정은 귀하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었는지, 건강에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기간 귀하에게 지원이 충분했는지 등)</p>	

다음은 아동분리보호조치 관련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세요.	
7. 귀하(부모)의 자녀는(아동은) 분리조치 되어 보호시설에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부모)의 자녀는(아동은) 얼마 동안 분리조치 되어 보호받았습니까?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1년 ③ 1년~2년 ④ 2년 이상
9. 귀하(부모)의 자녀는(아동은) 가족과 함께 보호시설로 분리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부모)의 자녀들(아동들)은 각각 떨어져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부모)의 자녀가(아동이) 분리조치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귀하(부모)의 자녀가(아동이) 분리조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대 및 방임 ② 가정폭력 ③ 장애/특수교육 필요 ④ 빈곤 ⑤ 기타
13. 귀하(부모)의 자녀는(아동은) 다시 귀하(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귀하(부모)는 자녀가(아동이) 분리조치된 이후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15. 귀하(부모)의 자녀가(아동이) 가정복귀 후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16. 귀하(부모)의 자녀는(아동은) 위탁 혹은 입양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귀하(부모)의 자녀가(아동이) 위탁 혹은 입양된 경우, 자녀와(아동과) 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1. 연락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2. 아동분리보호 기간 경험

다음은 아동분리보호 기간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세요.	
18. 귀하(부모)는 분리조치 기간, 자녀와(아동과)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귀하(부모)는 자녀와(아동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였습니까?	① 연 1~2회 ② 월 1~2회 ③ 주 1~2회 ④ 주 3회 이상
20. 귀하(부모)는 자녀가(아동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만나거나 연락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 귀하(부모)의 자녀가(아동이) 있는 곳에서는 자녀와(아동과) 연락할 수 있는 시설(도구)이 충분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귀하(부모)가 자녀와(아동과) 연락하는 것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3. 시간이 지나면서 귀하(부모)의 자녀와(아동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횟수가 달라졌습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는지?	① 예 ② 아니오
2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혹은 담당 실무자 때문에, 귀하(부모)의 자녀와(아동과) 정기적인 만남이나 연락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 귀하(부모)는 자녀를(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적(문자, 화상, 전화 등)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6. 귀하(부모)의 자녀가(아동이)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와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7. 귀하(부모)는 자녀와(아동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 자녀는 귀하를 신뢰하고 있는지, 서로 좋은 관계인지 등)	① 예 ② 아니오
분리된 자녀와(아동과) 연락(만남)한 경험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개선이 필요하거나 좋았던 점을 적어주세요.	

3.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및 지원

<p>다음은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및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세요.</p>	
28. 귀하(부모)는 자녀가(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9. 귀하(부모)의 자녀가(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귀하(부모)에게 필요한 변화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9-1.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30. 귀하(부모)의 자녀가(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면 가정환경에 달라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0-1.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31. 귀하(부모)의 자녀가(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1. 그렇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32. 귀하(부모)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3. 귀하(부모)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고,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33-1.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 혹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3-2.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p>분리된 자녀와 연락(만남)한 경험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개선이 필요하거나 좋았던 점을 적어주세요.</p>	

4. 부모/보호자 지원 및 옹호

다음은 아동분리보호조치 과정에서 부모/보호자 지원 및 옹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세요.

34. 귀하(부모)는 법률 자문과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35. 귀하(부모)는 분리조치 전 과정(경찰 등의 수사과정)에 대한 법적 조언과 변호를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36. 귀하(부모)는 분리조치가 시작된 후(법원) 법적 조언과 변호를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37. 귀하(부모)는 법적 지원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38. 귀하(부모)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귀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39. 귀하(부모)의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변호사 등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40. 이러한 도움이나 지원을 더 일찍 받았더라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해당없음

분리보호조치 중 받았던 지원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5. 아동분리보호조치 담당자에 관한 인식

다음은 아동분리보호조치 담당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세요.

41. 담당자(사회복지사, 경찰 등)는 귀하(부모)의 가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귀하의 말을 경청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2. 담당자(사회복지사, 경찰 등)는 귀하(부모)와 상의한 대로 진행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3. 담당자(사회복지사, 경찰 등)는 귀하(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살핌, 안전 및 복지와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4. 담당자(사회복지사, 경찰 등)는 귀하(부모)의 가족 상황에 대한 우려사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5. 귀하(부모)는 담당자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6. 귀하(부모)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7. 담당자(사회복지사, 경찰 등)는 귀하(부모)의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귀하(부모)의 자녀가 사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8. 담당자(사회복지사, 경찰 등)는 귀하(부모)의 자녀를 돕기 위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9. 담당자(사회복지사, 경찰 등)는 귀하(부모)의 가정의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담당자(사회복지사, 경찰 등)가 귀하(부모)의 가족과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다음은 귀하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이상
3. 자녀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부록 12. 설문지 (실무자/전문가용)

1. 귀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귀하는 귀하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귀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1. 양육환경

다음은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현재 아동이 살고 있는 '양육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세요.

돌봄: 영양, 주거, 의생활

- | | |
|---|---------------------------|
| 1. 귀하는 아동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사와 간식, 입을 충분한 옷, 필요한 개인소지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
| 2. 귀하는 아동이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

거주지 안전: 주거공간 및 주거지 주변

- | | |
|--|---------------------------|
| 3. 귀하는 아동이 살고 있는 주변 동네는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
|--|---------------------------|

보호자 및 부모와의 관계

- | | |
|--|---------------------------|
| 4. 귀하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
| 5. 귀하는 아동과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

부모/보호자의 행동

- | | |
|--|---------------------------|
| 6. 귀하는 아동이 부모와 친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
|--|---------------------------|

규칙적인 생활과 생활 규범

- | | |
|--|---------------------------|
| 7. 귀하는 아동에게 현재와 미래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
|--|---------------------------|

8. 귀하는 아동의 연령과 아동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루의 일과를 보내게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9. 귀하는 아동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아동에 대한 관심	
10. 귀하는 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1. 귀하는 아동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양육사와 미래 양육예측	
12. 귀하는 아동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3. 귀하는 아동이 부모, 가족으로부터 항상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4. 귀하는 아동이 소중했던 사람들(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 등)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2. 사회환경

다음은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현재 아동이 살고 있는 '사회 주변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웃과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지원	
1. 전반적으로 아동의 주변환경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2. 귀하는 아동과 이웃사람들이 인사 나누거나 함께 어울리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3. 귀하는 아동이 의지할만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예를 들어, 가족, 친구, 이웃 또는 종교 공동체의 사람들 등)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4. 귀하는 아동이 현재, 미래 행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5. 귀하는 아동 주변 사람들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차별과 존중	
5. 귀하는 모든 아동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6. 귀하는 아동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7. 귀하는 아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학교생활	
8. 귀하는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9. 귀하는 아동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친구 관계	
10. 귀하는 아동이 여기 오기 전의 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1. 귀하는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또래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1-1.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삶의 경로	
12. 귀하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 사회적 지원 등 아동의 생활환경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3. 귀하는 아동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4. 귀하는 아동의 삶(인생)은 안정적 유지되며, 앞으로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	------------------------

3. 아동분리보호 과정의 참여

다음은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참여과정	
1.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학대 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2.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아동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3.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아동의 잘못으로 인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4. 귀하는 아동에게 부모와 떨어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5.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의 도움이 될 지에 대해 각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6.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7.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생긴 일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8. 귀하는 아동이 분리되어 보호 될 곳의 생활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9.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아동과 부모를 존중하 셧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0. 귀하는 아동이 분리되어 보호받아야할 시설(기관 등)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1.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결정을 하기 전에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2.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아동에게 알려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3.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과정 중에 아동과 아동보호전문요원 (아동학대상담원 등)이 만나게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4.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과정 중에 아동과 아동보호전문요원 (아동학대상담원 등)이 둘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5. 귀하는 아동분리보호 결정 회의에서 아동, 부모님/ 보호자를 참여시켰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16. 귀하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전 과정에서 아동의 생각이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4.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다음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1.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서비스 규정이 마련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2.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귀하는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2-1.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하 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연락합니까?	① 연 1~2회 ② 월 1~2회 ③ 주 1~2회 ④ 주 3회 이상
2-2.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하 고 있다면, 연락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 어, 정기적인 전화, 만남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	
2-3.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상호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 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	

3.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귀하는 특별히 중점 두는 서비스(활동)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3-1. 특별히 중점 두는 서비스(활동)가 있다면, 그 서비스(활동)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	
4.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귀하는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4-1.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	
5. 귀하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	
6. 귀하는 (공통의)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보호자에게 안내를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5. 유관기관 및 실무자 간의 협력

다음은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의 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당 공무원 간의 협력	
1. 아동이 분리보호시설(쉼터 등) 입소에 있어, 담당 공무원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2.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있어, 담당 공무원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3. 아동이 분리보호시설(쉼터 등) 퇴소에 있어, 담당 공무원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
4.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구체적으로 작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	

<p>5.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구체적으로 작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p>	
<p>유관기관(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쉼터 등) 간의 협력</p>	
<p>1. 아동이 분리보호시설(쉼터 등) 입소에 있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쉼터 등)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p>
<p>2.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있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쉼터 등)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p>
<p>3. 아동이 분리보호시설(쉼터 등) 퇴소에 있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쉼터 등)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사항 없음</p>
<p>4.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쉼터 등)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구체적으로 작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p>	
<p>5. 아동의 분리보호 관련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쉼터 등)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구체적으로 작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p>	

다음은 귀하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이상
3. 직군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② 아동보호전담요원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④ 경찰 ⑤ 아동보호(양육) 시설 실무자 ⑥ 기타(아동권리보장원)
4. 소속 기관	① 공공기관 ② 민간기관
5. 귀하의 직무에서 아동,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고 보호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장애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인쇄일| 2022년 12월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2
|F A X| 02)2125-0929
|제 작| (주)두루행복한세상 (사회적·장애인기업)
|전 화| (070) 4659-0803

ISBN 978-89-6114-935-8 93330

비매품